

세계 최고의 공공부문 물적자원 조달·관리 전문기관

Public Procurement Service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

2009. 12



세계 최고의 공공부문 물적자원 조달·관리 전문기관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

2009. 12



나라살림 가치창조 —

조달청

차 례

제 I 편 • 일반현황

1.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요	3
2. 총사업비 관리절차	5
3. 조달청 총사업비 적정성 검토연혁	7
4. 조달청 총사업비 검토 내용	8
5. 검토요청서 작성 · 송신(수요기관)	9
① 검토 요청서 찾아가기	10
② 총사업비(실시설계, 민자사업) 검토요청서 작성	11
③ 물가변동(공사 및 감리) 검토요청서 작성	12
④ 물가변동 검토요청서 작성시 요청구분 명시	13
6. 총사업비 검토수수료 안내	15
7. 총사업비 검토 진행사항 공개	16

제 II 편 • 물가변동 검토실무

제1장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검토실무	21
1. 물가변동제도 개요	21
2. 물가변동 산출기준	25
3. 물가변동 조정방법	30

제2장	물가변동 검토절차 흐름도 및 확인사항	40
1.	검토 절차 흐름도	40
2.	주요 확인사항	42
제3장	물가변동관련 제도 변천연혁	51

제Ⅲ편 • FAQ

1.	공통	61
가.	일반사항	61
1)	물가변동 조정 업무처리 절차	61
2)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계약서상에 명기하지 않은 경우	62
3)	물가변동 조정방법 변경 가능 여부	63
4)	조정기준일 임의 조정 가능 여부	64
5)	물가변동 기간요건 성립일 산정	65
6)	물가변동 기본요건 충족조건	66
7)	물가변동 조정신청서를 동시(1회, 2회) 요청시	67
8)	물가변동 조정신청일 적용기준	68
9)	물가변동 조정신청일(재신청한 경우)	69
10)	물가변동 조정신청서 반려와 보완	71
11)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의 물가변동 조정	72
12)	물가하락(De-Escalation)의 경우	73
나.	물가변동 적용대가	74
1)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	74
2)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시 조정기준일 포함 여부	76
3)	전회 물가변동 조정금액의 변경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77

4) 공사공정예정표와 실행공정이 상이한 경우	78
5) 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관련	79
6)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공정예정표가 변경된 경우	80
7)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지연된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	81
8) 발주처의 책임으로 지연된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	82
9)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기준이 되는 공사공정예정표	83
10) 장기계속공사와 계속비공사의 예정공정율 적용	84
11) 기성(준공)대가 공제기준	85
12) PS항목의 제외기준	86
13) 설계비 항목의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 여부	87
다. 선급	88
1) 계약금액 변경에 따른 선급 조정	88
2) 선급 전액이 정산된 경우	89
3) 선급 공제기준	90
4) 선급 적용대가 산출시 PS금액 처리방법	91
5) 선급 적용대가 산출시 선시공부분에 대한 처리방법	92
6) 계속비공사의 선급 공제	93
7) 개산급에 의한 기성대가 공제	94
2. 지수조정율	96
가. 지수조정율(k)	96
1) 소수점 처리기준	96
2) 물가변동 적용대가 비목계수 적용 기준	97
3) 신규비목이 있는 경우 금액 가중치 산정	98
4) 신규비목이 있는 경우 지수조정율 산출	99
5) 비목별 지수 및 제경비 요율	102

나. 비목군 분류	103
1) 재료비 비목군 분류	103
2) 실적공사비 비목군 분류	105
3) 기타비목으로 분류하던 비목군의 재분류 기준	108
4) 비목군 분류가 곤란한 비목	110
5) 환경보전비 등 제 경비성 비목	111
6)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연금)보험료	112
7) 기계경비 비목군 분류	113
8) 비목군 분류 기초자료	114
9) 조달청 검토시 비목수정에 관한 문의	115
다. 비목별 지수	116
1) 노무비(A) 지수 산정	116
2) 기계손료로 기계경비(B) 지수 산정	117
3) 전신환매도율과 매매기준율	119
4) 환율 적용	121
5) 공휴일의 환율 적용	122
6) 생산자 물가지수의 적용기준	123
7) 실적공사비(G) 지수 산정	124
8) 타워크레인	125
9) 2회 물가변동 기준시점의 지수 적용기준	126
10) 요율 지수 산정	127
11) 산재보험료(H) 지수 산정	128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I) 지수 산정	129
13) 고용보험료(J) 지수 산정	131
14) 퇴직공제부금비(K) 지수 산정	132
15) 국민건강(L)보험료 적용 기준	133

16) 국민연금(M)보험료 적용 기준	134
17) 공사손해보험료 적용	135
18) 기타비목군수 산정	136
3. 품목조정율	137
1) 품목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 조정	137
2) 계약체결당시 가격을 견적가격으로 산정한 경우	139
3) 견적가격으로 산정한 경우 단가조사 적용방법	140
4) 시중노임단가 적용기준	141
5) 등락폭 산정	142
4. 감리용역	144
1) 2005년 용역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144
2) 2006년 감리원 노임단가 산정기준	146
5. 단품슬라이딩제도	147
1) 특정규격 자재 범위	147
2) 단품슬라이딩 제도의 취지	148
3) 단품슬라이딩 조정기준일 기준	149
4) 단품슬라이딩후 총액슬라이딩시 90일 조건의 충족여부	150
5) 감액슬라이딩 처리방법	151
6) 단품슬라이딩 방법	152
7) 단품 ES시 90일이내 조정가능 여부	153
8) 단품슬라이딩시 선급공제 여부	155
9) 단품ES와 총액ES 발생시 처리방법	156
6. 물가변동 감액(D/S) 조정	157
1) D/S시 조정기준일 이후 기성대가 공제여부	157
2) D/S조정시 선급공제 여부	158

3) 특정자재 증·감액 조정방법	159
4) D/S시 담당계약공무원의 관련보고서 직접작성 여부	160
5) 총액감액조정과 단품감액조정 동시발생	161
6) 물가변동 증액(ES)와 감액(D/S) 비교	162

제Ⅳ편 · 인터넷 질의회신

1. 일반사항	165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에 대하여	165
2)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방법이 서로 다르게 명기되어 있는 경우의 해석	166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167
4)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질의	168
5) 경유세율인상과 물가변동조정의 우선순위	169
6) 물가변동시 계약 기준일에 관한 질의	170
7) 미설계부분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여부	171
8)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일부 비목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173
9) 준공후 물가변동제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175
10) 준공후 물가변동 적용에 대하여	177
1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	179
12)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재조정할 수 있는지	180
13) 물가변동 기,미성내역 산정시 설계비 누락	181
2. 물가변동 적용대가	182
1) 퇴직공제부금을 예정공정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182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이 되는 공사 공정예정표	183
3) 경유세 조정후 물가변동시 기성공제 관련	184
4)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기준	185
5) 연부액 배정에 따른 물가변동 적용기준	187
6) 물가변동 적용대가 질의	188
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190
8)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192
9) 동절기 공사중지시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194
10) 일괄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에서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	196
11) 조정신청일 지급받은 기성대가의 적용제외 질의	198
1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변경시 차수 준공대가 공제에 대한 질의	199
13) PS단가 금액의 ESC 적용 여부	201
14) 물가변동계약금액 조정시 퇴직공제부금비 관련	203
15)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기준에 대한 질의	204
3. 개산급	205
1) 개산급에 관한 질의	205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개산급 인정범위 및 비목군 분류)	207
3) “개산급” 문의	209
4. 지수조정율	211
1) 실적공사비 발표 이원화에 따른 물가변동 적용 관련	211
2)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시 제경비 요율 적용방법	213
3) 물가변동 산출 시 환율 적용	214
4) 물가변동(기계경비 적용시점 등)관련 질의회신	215

5. 품목조정율	217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질의	217
2)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시 단가적용방법	218
6. 감리용역	220
1) 전면책임감리용역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질의	220
2) 책임감리용역비의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조정시 지수조정율 적용 유·무	221
3) 감리용역 물가변동 조정을 산출방법 관련	222
4) 감리용역 물가변동 조정 문의	223
5) 감리용역비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225
6) 감리용역 e/s(환산비) 적용	226
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신청 이후 지급된 감리기성대가의 공제여부	227
8)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사항	228
9)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질의	229
7. 단품슬라이딩	230
1)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질의	230
2) 특정규격 자재의 범위 관련 질의	231
3) 단품 D/S와 총액ES 동시 발생시 조정관련 질의	232
4) 단품ES시 특정자재의 단가결정방법 질의	233
5) 단품 D/S관련 질의사항	234
6) 단품감액조정 질의	235
7) 단품 D/S 성립요건 질의	236
8) 고재 품목의 단가조정 변경계약가능 여부	237

제V편 • 물가변동 관련 유권해석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개요	241
2.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248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관련 선급 공제기준	251
4. 비목군 분류 및 지수적용	252
5. 감액(D/S) 조정	261

부 록

1. 물가변동 관련 규정	265
가. 국가계약법	265
나. 지방계약법	303
2. 비목별 지수 및 제경비 요율	321
3. 물가변동 조정신청서 첨부양식	357

세계 최고의 공공부문 물적자원 조달·관리 전문기관

제 I 편 일반현황



Public Procurement Service



I. 일반현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이하, 물가변동 검토)는 총사업비관리의 한부분이므로 총사업비관리제도의 개요 소개 후 물가변동검토에 대하여 기술

1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요

가. 목적

-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함

나. 관련법령

- 국가재정법 제50조,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2조, 총사업비관리지침

다. 총사업비의 정의

-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로 구성되며,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민간 부담분을 포함함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부담분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음
- ※ 국고지원대상이 아닌 일부 시설에 대해 지자체 등이 수요의 창출, 수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지자체 자체재원 또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포함하지 않음

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정부대행사업, 국고보조사업 및 국고지원을 받은 민간기관(투자·출연·보조기관 등)의 사업 중
 -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총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
 - 토목사업 : 총사업비 300억 이상인 사업
 - 건축사업(전기·기계·설비 등 부대공사비 포함) : 총사업비 100억 이상인 사업
 - ※ 단, 조달청장에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국가기관 직접시행사업 등)은 조달청장의 검토를 거치지 않아도 됨
- 기타 수요기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에 의하여 요청하는 사업

가. 사업구상(타당성 조사) 단계

-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규모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
- 중앙관서의 장은 추정 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지방자치단체가 시행주체인 사업은 국고지원이 300억원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의 시행을 요청

나. 기본설계 단계

-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완료 전에 관계전문가에 의한 설계내용 검토(설계VE)를 1회 이상 시행
-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협의

다. 실시설계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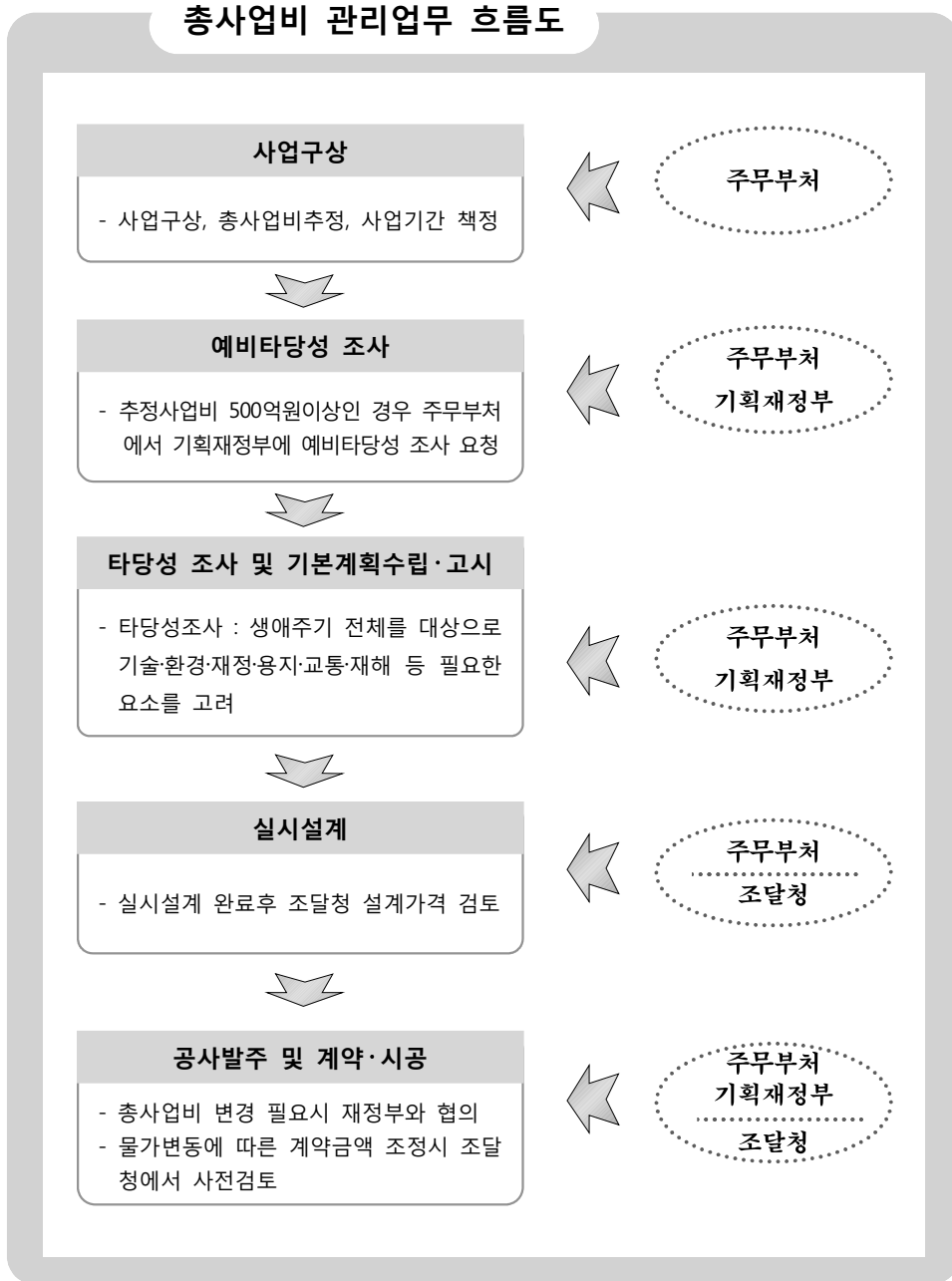
- 중앙관서의 장은 완료된 실시설계에 대하여 총사업비 변경협의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설계결과에 대한 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
-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경우 공사계약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협의

라. 공사발주 및 계약 단계

-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예산상 총사업비를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에게 통보
-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상 총사업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

마. 착공이후 시공 단계

- 중앙관서의 장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의 사전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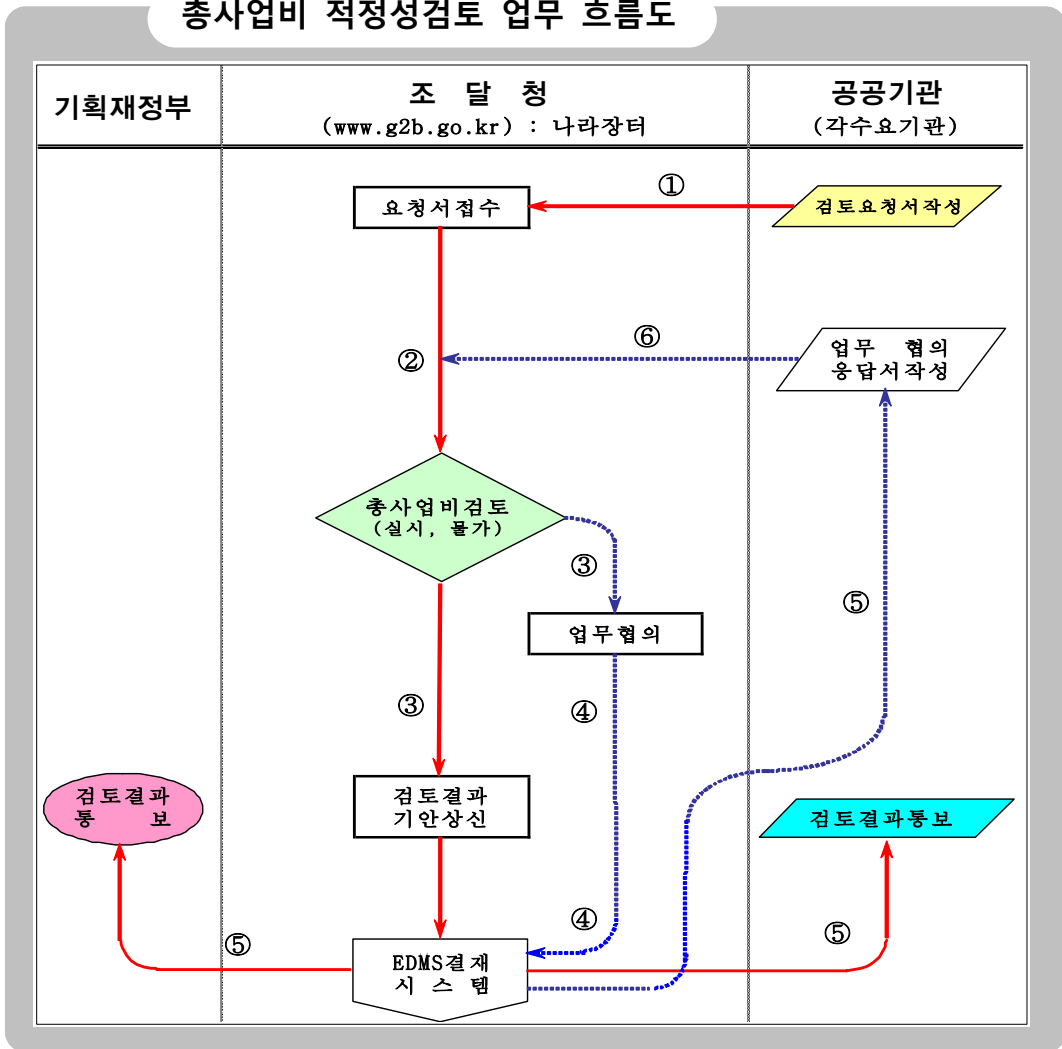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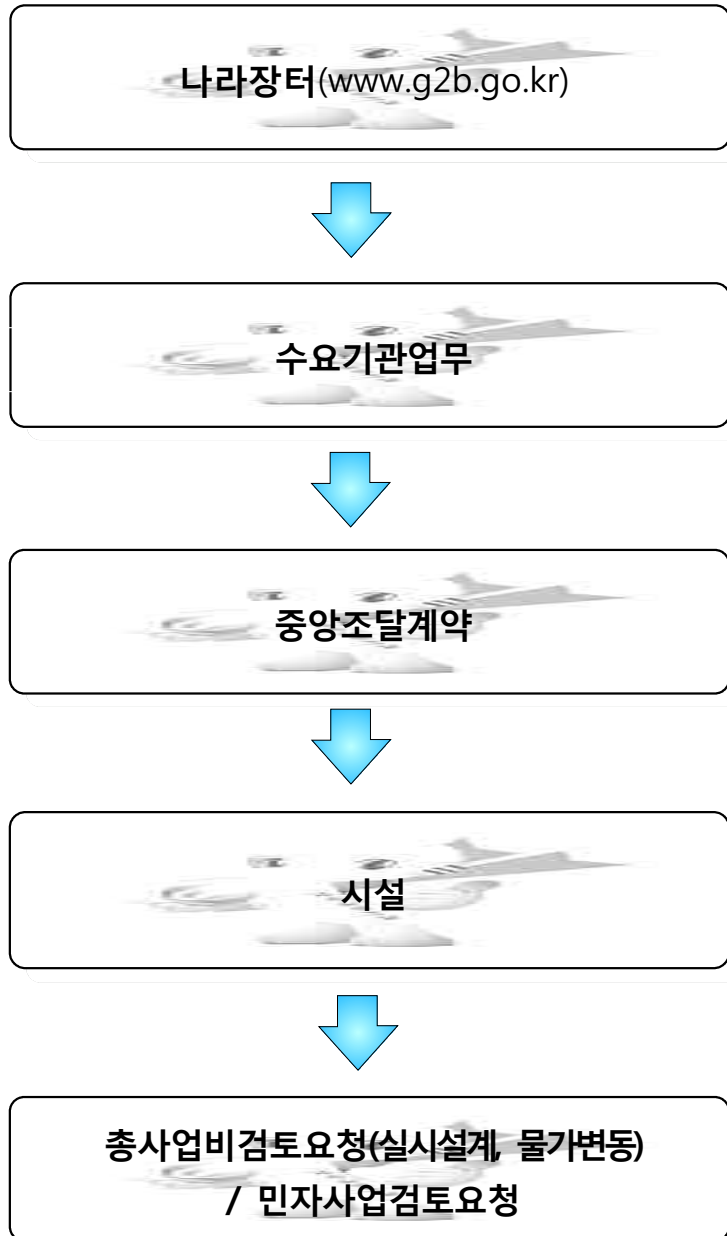
- 가. 1999년 4월부터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 조달청에서 총사업비 실시체계 적정성 검토
- 나. 2003년 4월 “2003년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 물가변동 검토 업무 추가
- 다. “2003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민간투자사업 공사비 책정 적정성 사전검토 추가
- 라. 2004년 4월 “2004년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 설계변경 금액 50억원 이상공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시 조달청 검토 추가
- 마. 2004년 4월 6일 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
 - 조달청 총사업비 사전검토 법제화
- 바. 2005년 4월 “2005년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 조달청을 통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조달청 실시체계 검토 폐지
 - 설계변경 금액 50억 이상공사 조달청 검토 폐지
 - 감리비 변경에 대한 물가변동 검토 신설
- 사. 2006년 4월 물가변동 검토서비스 확대
 -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닌 사업 중 조달청에서 계약한 시설공사에 대한 물가변동 검토 신설
- 아. 2006년 5월 “2006년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 조달청 발주 사업 중 대안입찰 방식 실시체계 검토 신설
- 자. 2006년 12월 19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정
 - 총사업비 검토업무 법제화
- 차. 2008년 7월 23일 “2008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확대(토목사업 300억이상, 건축사업 100억이상)
 - 조달청 발주사업 중 대안입찰방식 실시체계검토 폐지
 - 총사업비 관리대상 중 건축공사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 추가

4 조달청 총사업비 검토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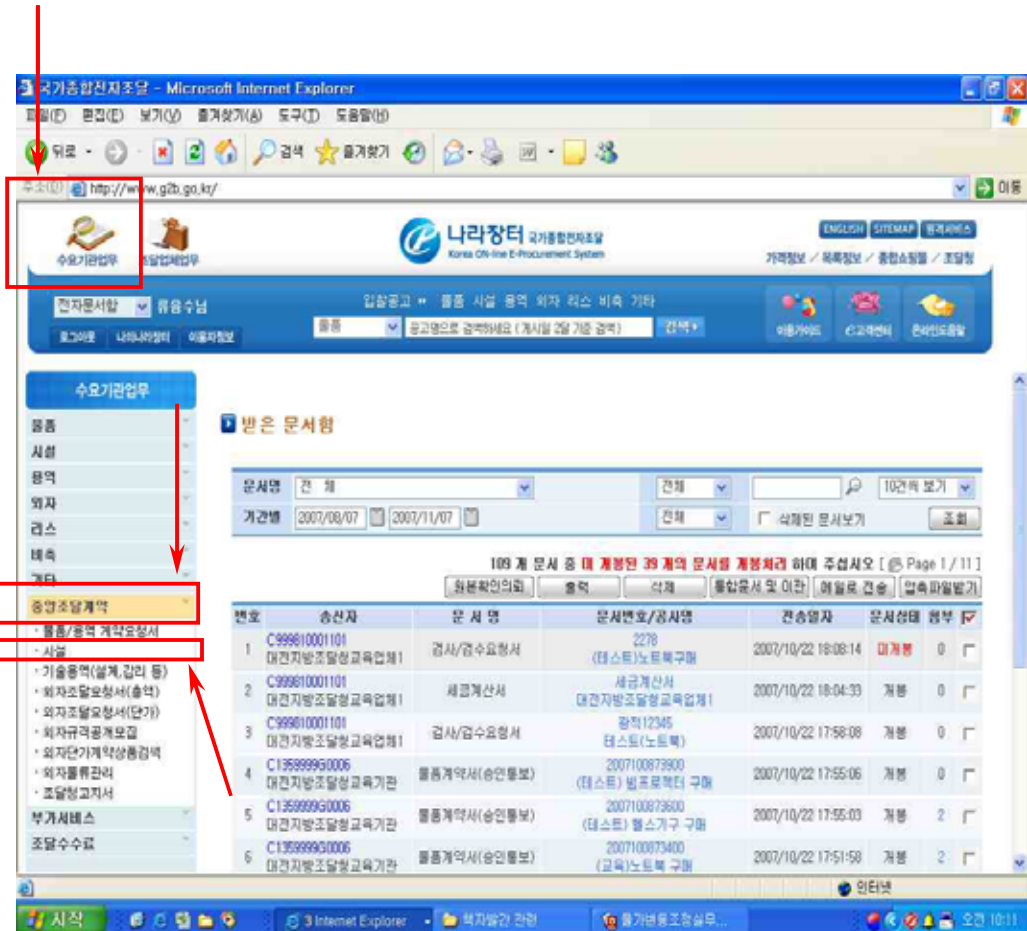
- 가. 총사업비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단가 적정성 검토(지침 제22조)
- 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적정성 검토(공사, 감리용역)(지침제22조)
- 다. 설계 적정성 검토 및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지침 제57조 및 제58조)

총사업비 적정성검토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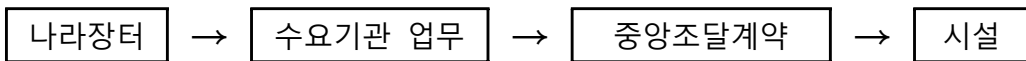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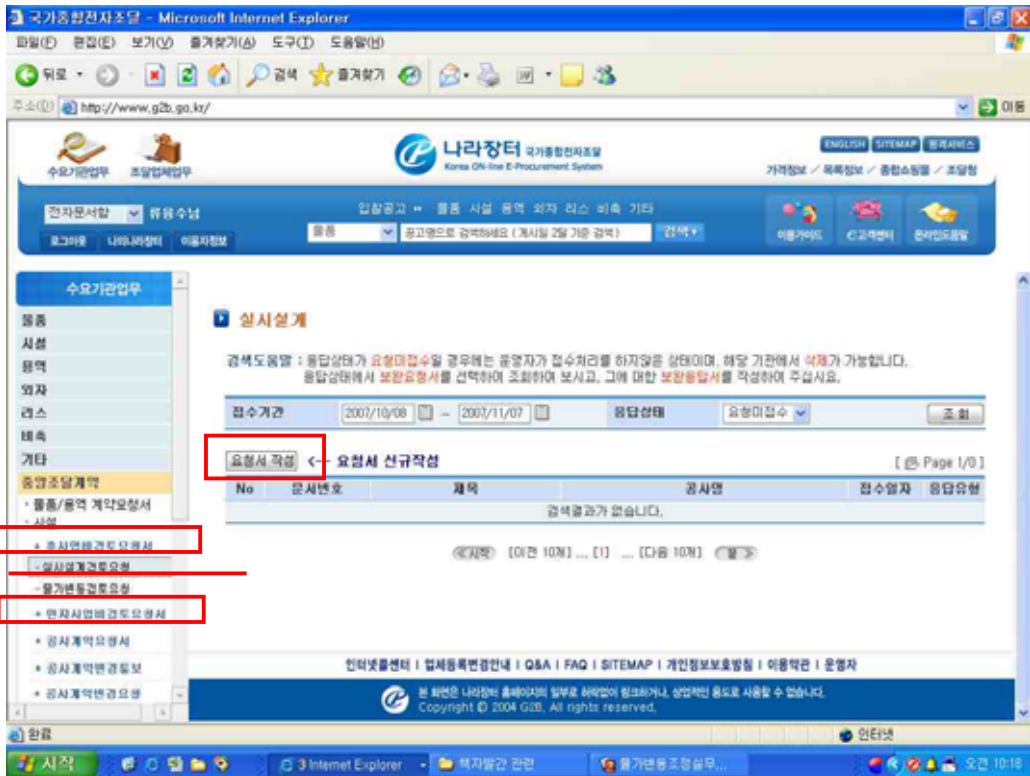
① 검토 요청서 찾아가기



✚ 이동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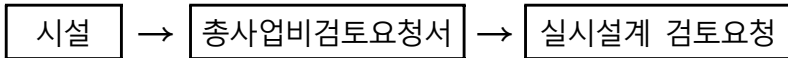


② 총사업비(실시설계, 민자사업) 검토요청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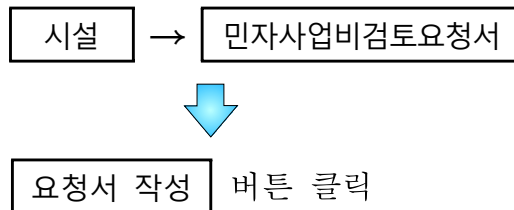


❖ 이동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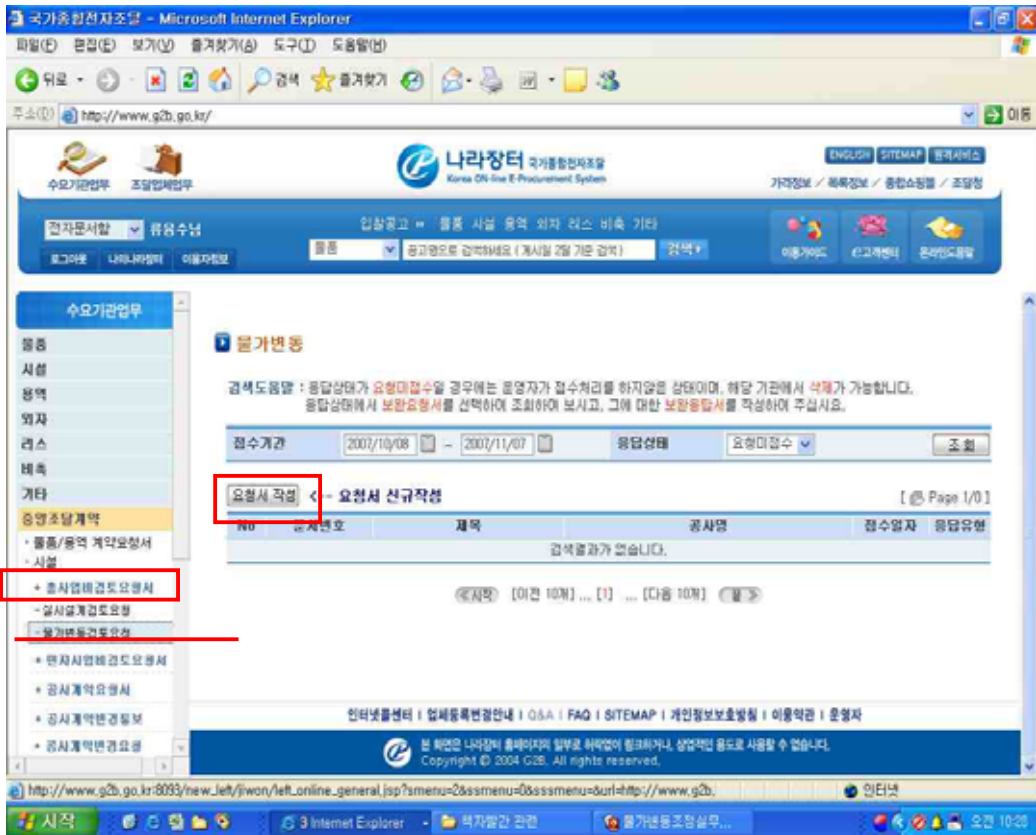
1) 실시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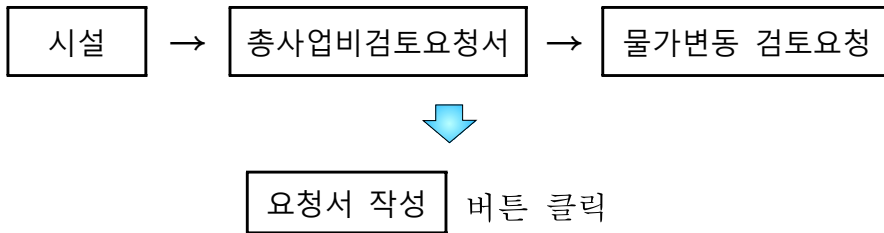
2) 민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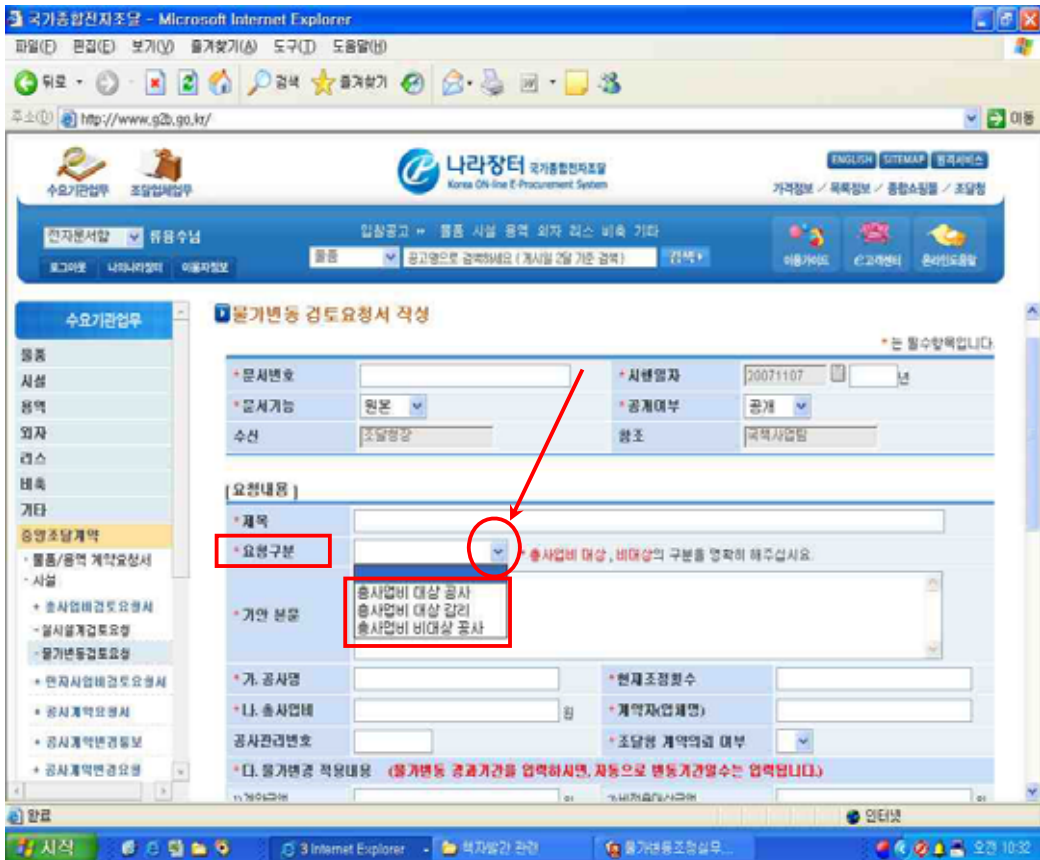
③ 물가변동(공사 및 감리) 검토요청서 작성



❖ 이동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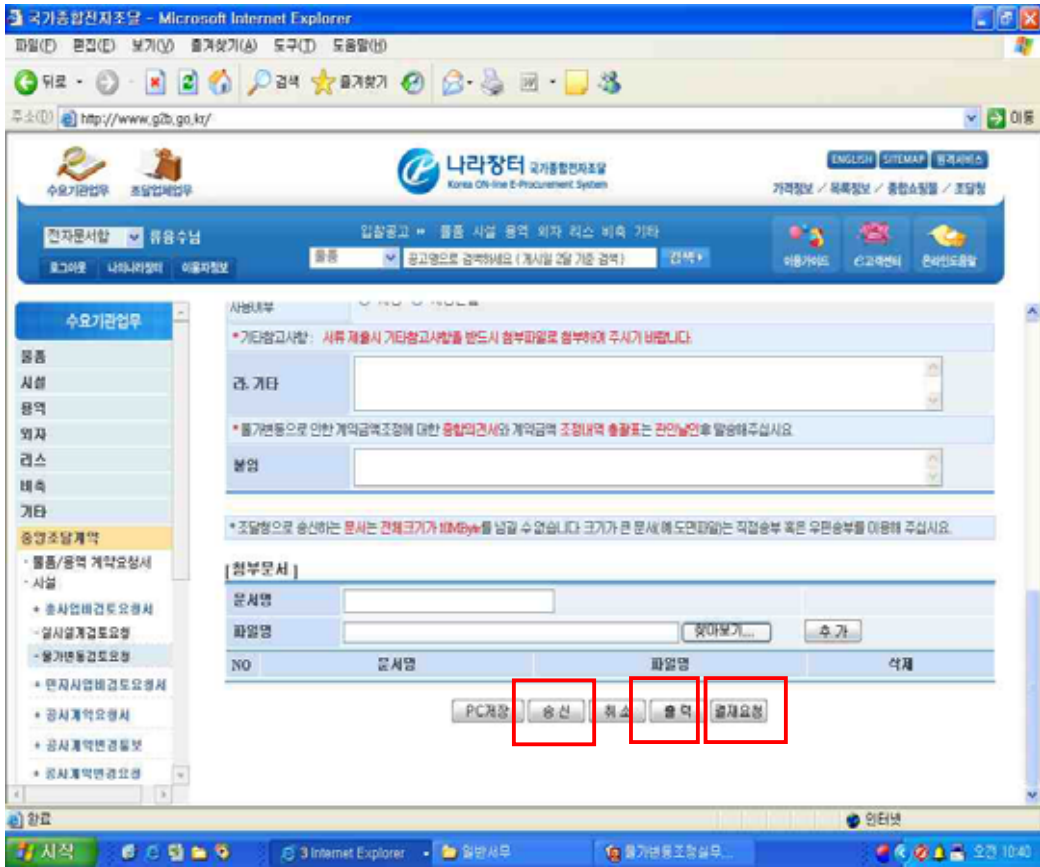


④ 물가변동 검토요청서 작성 시 요청구분 명시



✚ 물가변동검토는 시설공사 및 감리용역 모두 같은 경로로 들어가며, 요청서 작성시 “요청구분”에서 아래의 세 가지중 해당사항을 선택

- 1) 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 :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대상의 공사 (토목사업 300억원이상, 건축사업 100억원이상)
- 2) 총사업비 관리대상 감리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감리
- 3) 총사업비 관리비대상 공사 : 총사업비 관리대상은 아니나, 조달청 계약한 시설공사



▼ 버튼 설명

- 1) 송신 : 요청서를 작성한 후 조달청에 송부하는 버튼
(※ 요청서를 확인 한 후 최종적으로 이 버튼을 클릭한다)
- 2) 출력 : 입력한 요청서를 출력하여 확인 가능
(※ 최종 송신 이전에 반드시 출력한다)
- 3) 결재요청 : 내부결재용
(※ 결재요청은 내부 결재를 득하기 위한 기능이므로, 이미 내부결재를 득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6 총사업비 검토수수료 안내



□ 총사업비 검토 조달수수료율(%)

The screenshot shows the '나라장터'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website. The left sidebar menu has '수요기관업무' (Requirement Agency Business) highlighted.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the '총사업비 검토대가 요율표' (Total Project Cost Review Fee Rate Table).

구분	수수료율(%)	수수료 산출방법
총사업비 (국가·기타기관)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요청금액 × 적용요율
총사업비 설계적정성 검토	0.04	
총사업비 평가면동 검토	0.1	
전자사업 검토	0.05	
총사업비 (지방자치단체)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총사업비 설계적정성 검토	0.04	
총사업비 평가면동 검토	0.02	
전자사업 검토	0.1	
전자사업 검토	0.05	

Below the table, there is a section for calculating the fee based on the request amount and agency type. It includes a table with columns for '검토 요청금액' (Review Request Amount), '구분' (Category), '요율(%)' (Rate), and '검토대가' (Review Fee). The '구분' dropdown is set to '국가·기타기관' (National/Other Agency).

☞ 총사업비 수수료를 미리 계산하고 싶으면 ☞

검토요청금액 입력 → 국가기관, 지자체 선택 → 계산

7 총사업비 검토 진행사항 공개

- 요청서 접수 즉시 나라장터에 담당자 실명을 공개
 - 공개내용 : 접수현황, 우리청 담당자소개, 검토 진행상황 등

나라장터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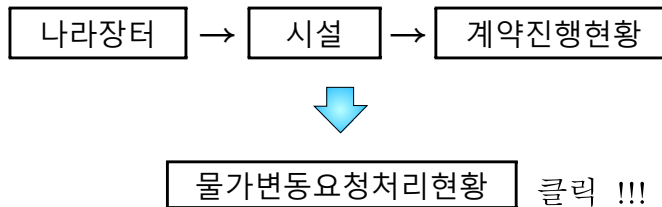
나라장터 > 입찰정보 > 물가변동요청 처리상황 조회

내부관리번호를 클릭하면 견형상태를 조회할수 있습니다. (반려건 제외)

[<5 Page 1/8]

요청기관	공사 관리번호	공사명	내부 관리번호	요청일자	처리상태	담당자	비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 광지역본부	대준재	공촌선 복선전철 궤도공사 견형역 입찰관리역	K20090395	2009/07/17	처리완료	이경재	없음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대준재	시화지구 6-1공구 간척농지개발사업 토목공사	E20090698	2009/07/17	처리완료	윤태호	없음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H20090210	교통안전체합교육센터 건립공사	H20090264	2009/07/17	처리완료	구희정	없음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청	0721252	북부교육청 청사 신축공사	H20090265	2009/07/20	처리완료	구희정	없음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청	0821136	북부교육청 청사 신축공사	H20090266	2009/07/20	처리완료	구희정	없음
법무부	0832989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신축 통신공사	H20090267	2009/07/20	처리완료	조종희	없음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	072130900	국가기록원 부산지원 리모델링 건축공사	E20090699	2009/07/21	검토중	구희정	없음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0810861-0	국립재활원 병동중축공사(건축)	E20090690	2009/07/21	처리완료	김대영	없음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	072130900	국가기록원 부산지원 리모델링 건축공사	E20090691	2009/07/21	검토중	구희정	없음

▼ 이동경로



☞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고 담당자와 연락처, 검토 진행현황 등을 볼 수 있음



세계 최고의 공공부문 물적자원 조달·관리 전문기관

제 II 편 물가변동 검토실무



Public Procurement Service



II. 물가변동 검토실무

제1장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검토실무

1 물가변동제도 개요

가. 계약금액 조정의 의의

대부분의 공사계약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관계로 입찰 후 경제적 사정이나 여건이 쌍방간 예측 불가한 가격의 등락이 있는 경우 당초 계약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한다면 계약당사자는 경영손실을 입게되고 계약목적물의 부실의 우려가 있어 일방 당사자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즉,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란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 관련규정

국 가 계 약 법	지 방 계 약 법
- 국가계약법 제19조	- 지방계약법 제 22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3조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칙 및 지침	

다. 물가변동제도 구분 및 적용요건

- 공사금액 총액의 변동분을 반영하는 총액조정제도와 특정자재 가격의 변동분을 반영하는 단품조정제도로 구분

구 분	기 간 요 건	등 락 요 건
· 총액조정	계약체결일 이후 90일 경과	① 품목조정률 3%이상 ② 지수조정율 3%이상 * 조정률은 입찰일을 기준으로 계산
· 단품조정	계약체결일 이후 90일 경과	특정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5%이상

* (예외) 천재지변, 원자재가격 급등 등으로 조정제한기간(90일)내에 계약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정 가능

※ 기간요건(계약 체결후 90일 경과)

< 기간 요건 >

계약체결(장기계속공사는 제1차 계약체결)을 한 날로부터 이행기간이 90일 이상 경과
(1회 이상 조정한 경우에는 직전 조정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① 취지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시에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의 물가변동은 어느 정도 예측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기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물가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임

② 초일 불산입

90일 기간의 계산은 계약체결일 익일부터 계산하여 91일째 되는 날을 의미함

③ 장기 계속공사의 기산일

장기계속공사의 기산일은 1차공사 계약체결일이 기준임

④ 발주자측의 사정으로 중지된 기간 포함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도 90일기간 산정시에 포함하여야 함

⑤ 2차 조정기준일 이후 기산일

1차 계약금액을 조정 한 후 다시 2차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면 직전의 조정기준일로부터 기산하여 다시 90일 이상 경과 및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3%이상의 증감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라. 계약금액 조정방법 및 적용방식

① 조정기준일(기간 및 물가변동률 요건이 동시에 충족한 최초의 날) 이후 이행될 부분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 물가변동분을 반영

② 동일 계약에 대하여는 품목조정법 또는 지수조정법 중 하나의 방식만 적용

- 품목조정법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지수조정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

마. 조정신청 주체

① 계약금액 조정신청이란 계약금액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을 말함

② 계약금액의 증액조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시공사)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발주기관에 접수하여야 함

※ 계약금액 감액조정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작성하여 발의

바. 단품조정제도 적용방법

- ①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규격이 있는 모든 자재를 대상
- ② 총액조정과 단품조정이 동시에 충족한 경우에는 총액조정을 우선 적용
- ③ 단품조정과 총액조정간의 관계
 - (품목조정률 적용시) 단품조정품목은 단품조정기준일에서 총액조정기준일까지의 가격변동을, 기타품목은 입찰일부터 총액조정기준일까지의 가격변동을 산정하여 품목조정을 산출
 - (지수조정률 적용시) ‘공산품’ 비목군을 특정자재(d1)와 나머지 공산품(d2)으로 구분하여 특정자재의 가격상승률을 당해 비목군의 지수상승률에서 공제하여 지수조정률을 산출

사. 원자재가격 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 ① 다음의 경우에는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 조정 가능
 - 공사, 용역, 물품제조계약에서 조정률이 5%이상 상승한 경우
 - 물품구매계약에서 조정률이 10%이상 상승
 - 공사, 용역, 물품제조계약에서 조정률이 3%이상(물품구매계약은 6%) 상승하고, 기타 객관적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조정방법의 종류

(1) 품목조정율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방법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금액 및 등락율을 산출함

(2) 지수조정율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방법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비목군으로 분류한 후, 각 비목군의 순공사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 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정함(순공사비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

※ 참고

- ① 계약금액 조정시 품목조정방법과 지수조정방법 동시적용 불가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 ②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조정하여야 함. 단,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 시에는 직전 조정방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하며 변경은 불가능 함

지수조정율 및 품목조정율에 의한 방법 비교

구 분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	품목조정율에 의한 방법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의 지수변동이 당초 계약금액에 비하여 3% 이상 증감시 계약금액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변동이 당초 계약금액에 비하여 3%이상 증감시 계약금액을 조정
조 정 율 산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비목군”을 편성 ○ 당해 비목군에 계약금액에 대한 가중치 부여(계수) ○ 비목군별로 생산자물가 기본 분류지수 등을 대비하여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율을 산정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체결한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실례가격 또는 원가계산등에 의한 예정 가격을 기준으로 체결한 계약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목군별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수입물가지수 등을 이용하므로 조정을 산출이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 품목 또는 비목별로 등락율을 산출하므로 물가변동내역이 실제대로 반영 가능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가격 개념인 지수를 이용하므로 물가변동내역이 실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 조정시마다 수많은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율을 산출해야 하므로 계산이 복잡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액의 구성비목이 많고 조정 회수가 많은 경우에 적합 (장기, 대규모, 복합공종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액의 구성품목 또는 비목이 적고 조정 회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 적합 (단기, 소규모, 단순공종공사)

나. 계약금액 조정방법 주요사항

(1) 조정 기준일

- ① 조정 기준일이란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 2차이후 계약금액 조정은 직전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 또는 지수 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되어 2가지 요건(기간 및 등락요건) 이 동시에 최초로 충족된 날을 말함

※ 계약자가 조정 신청한 일자, 발주관서의 조정승인일, 실제 계약금액 조정지급일 등은 조정기준일이 될 수 없음

(2) 물가변동 적용대가

- ①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총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며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함

※ 이행의 지체사유가 정부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함

- ②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산정은 당초 계약상대자가 공사착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며,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이행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게 되며, 수정이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출함

- ③ PS항목과 같이 시공 당시에 설계내용 및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설계내용 및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시공 중에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확정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할 수 있다
- ④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에는 1차 계약시 부기한 총공사 금액을 대상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한다

(3) 조정 신청일

- ① 조정 신청일이란 계약체결 후 기간요건(90일) 및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등락요건(3%)이 동시에 충족된 날을 기준으로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신청한 날을 말함
- ② 조정신청일은 기성대가 공제시 중요한 요건이 됨

(4) 선급의 공제

- ① 선급 공제대상은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부분
- ② 선급률 및 공제금액
 - 선급률 =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급 ÷ 당해 계약금액
 -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또는 지수)조정률 × 선급률
- ③ 장기계속공사계약, 계속비 예산에 의한 계약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당해년도 계약 체결분 또는 당해년도 이행 금액을 기준으로 함
- ④ 조정기준일 이후 지급된 선급은 공제하지 않음

(5) 기성대가 지급 및 준공급 지급의 경우

- ①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기성대는 원칙적으로 공제하나, 기성대가 지급 신청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 ②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의 기성금을 개산급으로 받은 경우에는 기성대가 공제대상이 되지 않음(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 ③ 준공급 지급신청 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준공급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음

< 개산급의 정의 >

- ①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 제2호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따른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기성대가 또는 기납대가
- ② 개산급의 정의 :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개략금액으로 채무이행기 도래이전에 지급하고 사업실적에 의하여 확정정산함을 의미(수입·지출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3조, 선급 및 개산급의 제외)

1)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

가. 의의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비목군’을 편성, 각 비목군의 순공사금액에 대한 계수(가중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로 한국은행이 매월 발행하고 있는 통계월보상의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등을 대비하여 지수조정율(K)을 산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K가 100분의 3이상인 때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서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그 산출방법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음

* 순공사금액 : 계약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을 말함

나. 조정 순서

계약금액산출내역서의 내용을 비목군으로 분류하고 소정의 지수를 산출 비교하여 지수변동율에 의하여 다음 순서로 조정함

- ①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순공사금액을 구성하는 제 비목을 11종의 “비목군”으로 분류
- ② 비목군별 적용되는 지수에 의하여 “지수변동율”을 산출
- ③ 순공사금액에 대한 비목군 금액의 비율로 가중치 “계수”를 산출
- ④ 비목군별 지수변동율에 계수를 곱하여 집계한 “지수조정율”을 산출
- ⑤ 지수조정율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곱하여 “계약금액 증감액”을 산출

- ⑥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는 계약당시 적용율을 반영, 집계
- ⑦ 집계한 지수조정율이 3% 이상인 경우에 그 등락폭을 “계약금액 증감액”으로 산정
- ⑧ 선급이 있을 경우 선급 지급율로 차감 지급

다. 용어의 정의

- (1) 비목군 :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물가지수 대분류 방식에 의한 11종의 비목으로 분류하여 집계한 금액을 말함
- (2) 계 수 :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원가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동 내역서상의 순원가로 나눈 수치

라. 적용지수

-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 물가 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 (2)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 허가 또는 인가 하는 노임, 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 (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거래실례가격 또는 공인 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 (4) 기타 위 1호 내지 3호와 유사한 지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 (5) 노무비 지수는 공인기관이 조사, 공표한 노임단가에 대하여 해당부문 직종의 평균단가에 의한 지수

마. 지수조정을 산출방법

(1) 비목군 편성

(가)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다음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군을 편성함

(나) 비목군 분류표

가. A : 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나. B : 기계경비

(공사에 한하며, B':국산기계경비, B'':외국산 기계경비로 구분)

다. C : 광산품

라. D : 공산품

마. E :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바. F : 농림·수산물

사. G : 실적공사비(공사에 한하며, G¹ : 토목부문, G² : 건축부문, G³ : 기계설비부문으로 구분하고,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중 2개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분(G¹, G², G³)의 실적공사비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아. H : 산재보험료

자.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차. J : 고용보험료

카. K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타. L : 국민건강보험료

파. M : 국민연금보험료

하. Z : 기타 비목군

- * '98. 2. 20 및 '98. 3. 31 회계예규 지수조정을 개정으로 '98. 2. 20이후 입찰공고되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기계경비를 국산과 외산으로 구분

(다) 비목군은 계약이행기간중 설계변경이나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함

- * '96. 4. 10이전에는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96. 4. 10자 동 회계예규 개정으로 그 변경이 가능토록 되었음

(2) 계수의 산정

(가) “A, B, C, D, E, F, G, H, I, J, K, L, M, …… Z”의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동내역서상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하 “가중치”라 한다)로서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 z”로 표시한다.

- * 비목군 B(기계경비지수)는 B'와 B''를 포함하며, 계수 b에는 b'와 b''를 포함함

(나) 이때의 산출내역서상의 금액 및 순공사금액은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금액이다

- * 지수변동율(입찰일시점의 지수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및 K를 산출함에 있어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한다.

(3) 지수의 산정

(가) 지수란 각 비목군의 가격변동 수준을 수치화한 것으로서 기준 시점 및 비교시점의 지수표시와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지수적용 원칙

- 비교시점은 매월말 기준 지수로 함
- 비목군분류 및 계수는 계약이행기간중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함
- 제2차 이후조정은 직전조정시 지수를 기준지수로 함

① 기준시점(입찰당시)의 지수표시

: A0, B0, C0, D0, E0, F0.....Z0로 표시

② 비교시점(조정기준일당시)의 지수표시

: A1, B1, C1, D1, E1, F1....Z1로 표시

③ 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일 및 조정기준일 현재 발표되어 있는 지수적용

- * 각 비목군의 지수는 '98. 2. 20 지수조정을 산출요령을 개정(현,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하여 입찰일 또는 조정기준일이 월중일 경우 당해 월의 통계월보가 발행되는 월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에 발표되어 있는 지수를 각각 적용토록 명문화 함

[예를 들면 조정기준일이 9월 10일인 경우]

- 재료비지수 : 8월말에 발행되어 9월 10일 현재 통용되고 있는 지수
- 노무비지수 : 9월 10일 현재 발표되어 있는 평균 시중 노임지수

④ 그러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개정된 회계예규 지수조정율산출요령(2200.04-137-4,2003.12.26)은 2003.12.26 이후 조정기준일이 도래되는 계약의 지수조정율 산정시 적용하는 것으로 생산자물가지수 등 월간지수는 해당 지수의 발표일과 관계없이 입찰(또는 직전조정기준일)시점 및 조정기준일 시점에서 적용가능하고 유효한 지수를 각각 적용하되 조정기준일이 월중인 경우에는 전월지수를, 월말일 경우에는 해당월 지수를 각각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음.

(4) 지수조정율(K)의 산정

지수조정율 K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

$$K = (a \frac{A1}{A0} + b \frac{B1}{B0} + c \frac{C1}{C0} + d \frac{D1}{D0} + e \frac{E1}{E0} + f \frac{F1}{F0} + g \frac{G1}{G0} + h \frac{H1}{H0} + i \frac{I1}{I0} + j \frac{J1}{J0} \cdots + z \frac{Z1}{Z0})^{-1}$$

단, $z = 1 - (a+b+c+d+e+f+g+h \cdots)$ 에 순공사금액에 대한 금액비율의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수(1~5)로 나누어 산출

- * 지수조정율은 결국 각 비목별로 입찰당시(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당시)의 계수(가중치)에 지수변동율을 곱한 값 즉 당해 조정기준일 당시의 계수를 모두 합한 값을 구한 후 1을 뺀 것이 지수변동율이 됨
- * 지수조정율(K)도 지수변동율과 같이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를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함

마. 조정금액의 산정

지수조정율이 산정되면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에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선급지급분을 공제한 후 이를 계약금액에 가감하면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완료됨

2)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

가. 의의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품목 조정율을 산정한 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동 품목조정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

나. 조정계산 방법

- (1) 물가변동적용대가를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별 가격의 “등락율”을 산출
- (2) 등락율을 계약단가에 곱하여 “등락폭”을 산출
- (3) 등락폭에 수량을 곱한 총액을 물가변동 적용대가로 나누어 “품목조정율”을 산출
- (4)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약시 적용율로 반영, 집계
- (5) 집계한 품목조정율이 3%이상이면 그 등락폭을 “계약금액 증감액”으로 산정
- (6) 예정가격에 대한 계약금액내용의 낙찰율을 반영
- (7) 선급이 있으면 선급지급율로 차감 지급

다. 조정산식

- ▶ 등락율 = $\frac{\text{물가변동당시가격} - \text{입찰당시가격}}{\text{입찰당시가격}}$
- ▶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율)
- ▶ 품목조정율 = $\frac{(\text{각품목 또는 비목별수량} \times \text{등락폭})\text{의 합계액}}{\text{총계약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
- ▶ 계약금액 증감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 × (품목조정율)

※ 계산편의를 위한 산식

- ▶ 변동율 = $\frac{\text{물가변동시산정가격}}{\text{입찰시산정가격}}$
- ▶ 조정단가 = 계약단가×변동율

라. 용어의 정의

- (1) 계약단가 :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상의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
- (2) 물가변동당시 가격 : 물가변동시에 조사하여 산정한 가격(조사가격)
- (3) 입찰당시 가격 : 입찰시에 조사하여 산정한 가격(조사가격)

마. 단가조사 적용방법

- (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의 규정과 동 제7조(원가계산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결정기준)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일 당시 산정가격과 물가변동시 산정가격은 같은 기준과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입찰일 당시에는 가격이 게재된 물가지가 있거나 견적 제출업체가 있었으나 물가변동시 물가지에서 삭제되었거나 견적업체가 폐업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 노임단가 적용요령

- ▶ 통계법 제3조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시중 노임단가 적용(국가계약규칙 제7조)
 - 건설공사 노임 : 대한건설협회
 - 제조부문 노임 :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 기술용역 노임 : 해당 주무관서에서 고시 또는 지정단체에서 발표

- ▶ 시중노임 적용 기준(재경부 통첩, 회계45101-45 : '95. 1. 13)
 -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유사직종의 시중노임단가 준용.
 - 조사공표한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년도(시기)에는 전후년도(시기)의 당해직종 시중노임단가에 그간의 전체 평균 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
 - 노임적용시점 : 조사기관이 조사, 공표(발표)한 날
 - '94년 이전에 적용한 정부노임단가에 대한 등락율
 적용산식 : $\frac{\text{물가변동후시중노임}}{\text{정부노임적용시시중노임}} \times \text{정부노임 적용시 계약단가}$
 특례 : (변동후 시중노임) < (계약시 시중노임 또는 직전조정시 시중노임)인 경우 등락율은 “1”로 함.

바. 등락폭 산정

(1) 국가계약규칙 제74조 ③항 1호, 2호

- ▶ 물가변동 당시 조사가격 > 계약단가 > 입찰 당시 조사가격
 - 등락폭 = (물가변동 당시 조사가격) - (계약단가)
- ▶ 계약단가 > 물가변동 당시 조사가격 > 입찰 당시 조사가격
 - 등락폭 = 0으로 한다.
- ▶ 계약단가 ≤ 입찰 당시 조사가격 < 물가변동 당시 조사가격
 -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율
- * (계약단가 + 등락폭) ≤ 물가변동당시 조사가격

사. 승율비용의 등락폭

- (1)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등 이른바 승율비용의 등락폭은 당해 비목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회제 125-1823. '91.7.24)
- (2) 다만,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는 적용 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등락폭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회제 45107-518. '96.3.19)

아. 조정금액의 산정

(1) 계약단가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각 품목 또는 비목별로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계약단가라 한다(령 제65조3항)

(2) 계약금액

품목조정율을 산출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계약금액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하되,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금액은 제외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의 계약금액이 증감되었다면 그 증감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조정금액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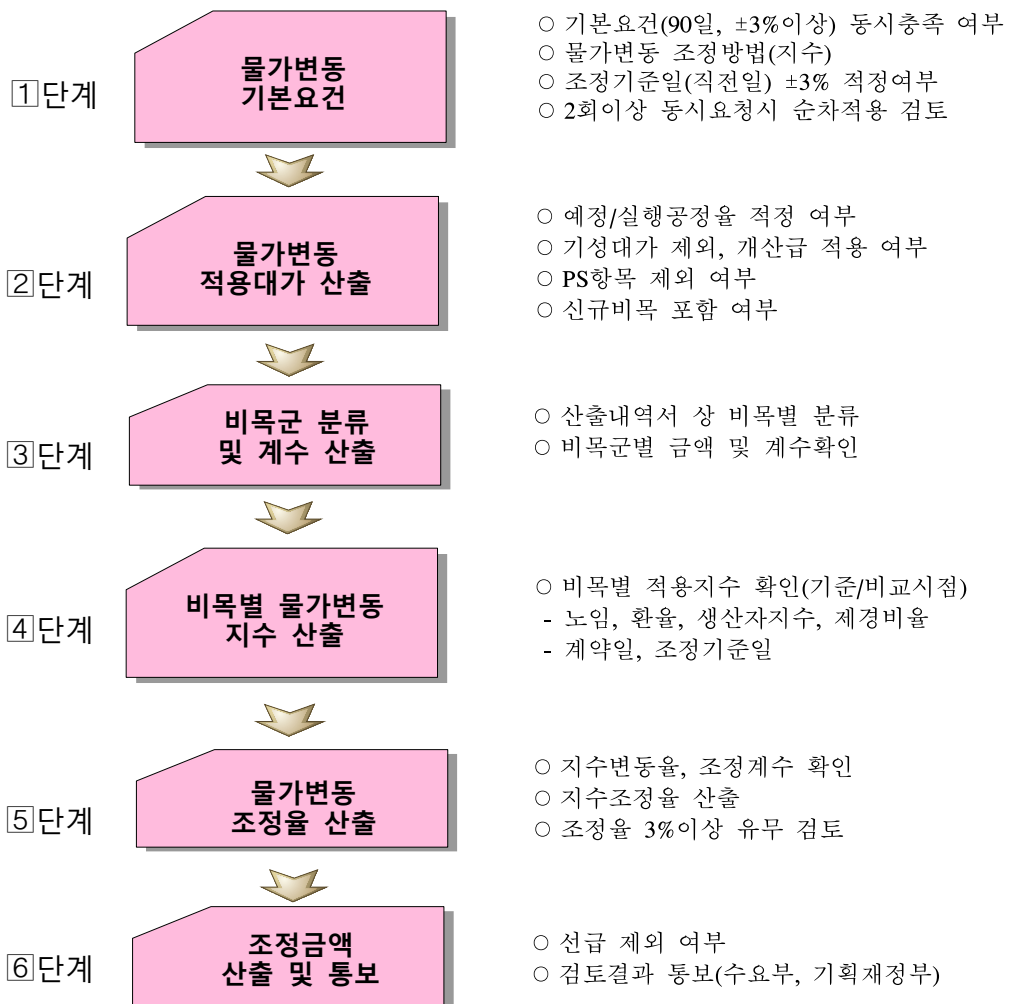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 즉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율을 곱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선급지급 해당분을 공제한 후 당초 계약금액에 산정된 조정금액을 가감하면 품목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완료된다

제2장 물가변동 검토절차 흐름도 및 확인사항

1 검토 절차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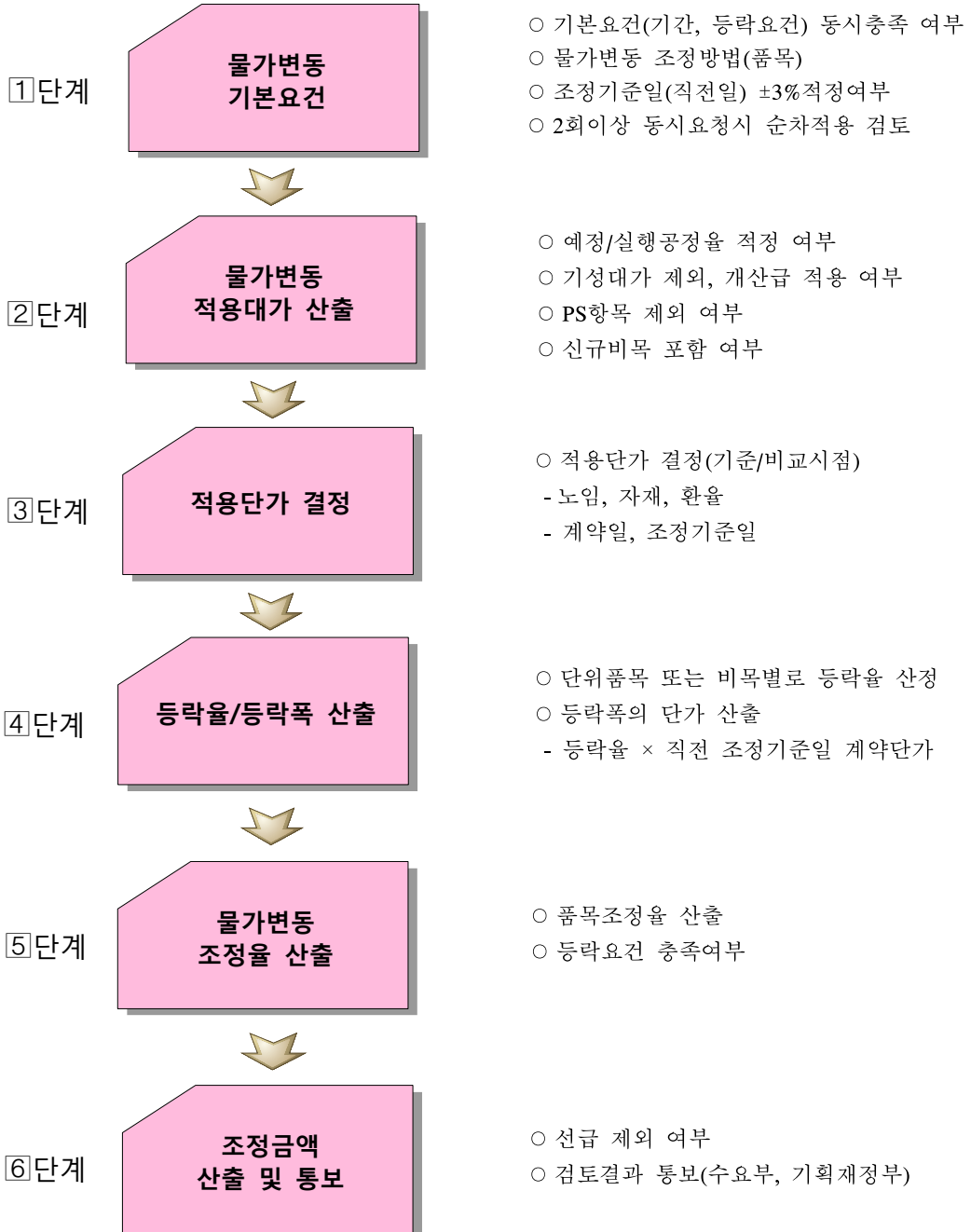
가.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

<검토 내용>



나.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

<검토 내용>



2

주요 확인사항

업무단계	확인 사항	조치사항	확보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체결일(직전조정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변동금액(적용대가)이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3% 이상 증감하는 사유가 동시에 충족하는가?(입찰일 기준) - 불입양식에서 90일 이상 경과, 물가변동을 3% 이상 증감 신청을 확인한다 - 계약서, 전화 물가조정기준일이 명시된 자료로 기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요건을 동시에 충족 하면 다음 단계 업무수행 ○ 법적요건 불충족시 수요기관 및 기획재정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업무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계약서 - 물가변동현황 - 물가조정기준일이 명시된 자료 등
<p><1단계> 물가변동 요건 충족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변동 조정 경과기간 90일 이상과 변동율이 3% 이상이 동시에 충족되는 날이 물가변동조정기준일이 되며, 물가변동조정일을 계약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정할 수 없다 - 즉, 물가변동 조정 경과기간이 90일 이상에 해당하면서 변동율이 3% 이상에 가장 근접하는 날을 물가변동조정기준일로 정하여야 하나 시공자가 물가변동을 과다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90일 경과기간과 변동율 3% 이상 충족요건을 임의로 조정하여 물가변동율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4% 이상의 변동율을 신청한 경우 물가변동조정일의 적정성 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을 임의로 선택하여 과다 조정이 산출된 것이 확인되면 조정기준일 재조정 및 자료 재작성토록 수요기관에 반송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변동율이 4% 이상에 해당하면 조정기준일 적정성 판단 자료
<p><2단계> 물가변동 조정요건 검토요청 횟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변동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조건을 2회 이상 동시에 검토토록 요청하였는지 확인하고 2회 이상 물가변동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물가변동을 요청토록 조치한다 * 물가변동 조정 결과에 따라 다음번에 해당하는 조정자료가 변동이 되므로 동시에 2건을 조정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변동 조정을 동시에 2회 요청한 경우 1회만 검토하고 나머지 회수는 추후 요청토록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변동 조정 요건 충족현황

업무단계	확인 사항	조치사항	확보자료
<3단계> 자료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산출내역서로 물가변동 자료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 불분명한 경우 문서, 유선으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작성에 흠결이 있으면 문서로 보완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4단계> 물가변동 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한다 - 물가변동 조정방법이 바뀐 경우에는 물가변동자료 작성방법에 영향을 끼치므로 재작성토록 한다 *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한번 정하면 바꿀 수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변동 조정방법이 바뀐 경우에는 문서로 보완 요청 - 물가변동자료 재작성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방법이 명시된 계약서
<5단계> 노무비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수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인 경우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의 단위당 단가가 합계단가로 작성된 것인지 확인한다 - 합계단가로 작성한 것이면 업무안내문의 붙임자료에 명시된 대로 계약당시의 노무비를 산정한 것인지 확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문과 상이한 노무비를 산출하여 적용한 경우 문서로 보완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6단계> 신규비목 포함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수조정율에 물가변동인 경우 계약체결일(직전조정일)과 조정기준일 사이에 설계변경으로 신규비목이 발생되었는지 파악한다 - 신규비목이 있으면 신규비목에 대한 물가변동 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 불분명한 경우 설계변경 현황을 확보(문서, 유선으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비목이 있으나 별도 작성한 물가변동 자료가 없으면 문서로 보완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조정일부터 물가조정기준일 까지의 기간내에 이루어진 설계변경 현황
<7단계> 물가변동 적용, 제외대가 구분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조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물가변동 적용대가 및 제외대가 적정한 지를 확인한다 - 물가변동조정기준일 현재의 계약금액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 비적용대가를 산출하였는지 확인한다 · 공사공정예정표에 의한 공정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변동 적용 및 제외대가 산출이 부적정한 경우 문서로 보완 요청하거나 수정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기준일 현재계약금액 산출내역서 ○ 조정기준일 이후기성대가지급현황

업무단계	확인 사항	조치사항	확보자료
<p><7단계> 물가변동 적용, 제외 대가구분 적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대하여 물가변동 신청전에 기성(준공)대가를 신청한 대가를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였는지 확인한다 · 계약서의 계약금액과 적용 및 제외 금액의 합산금액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 신규품목에 대하여 별도로 물가변동 적용, 제외대가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p>- 불분명한 경우 문서, 유선으로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기준일 현재예정 및 실행 공정표
<p><8단계> 지수 조정율의 비목군 분류, 계수(가중치)산정의 적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수조정율에 의한 물가조정 검토 업무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순공사금액(계약금액중 재료비,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에 대한 분류 비목 및 계수산출이 적정한 지를 확인한다 - 순공사금액 제외 항목 : 이윤, 일반관리비, 손해보험료, VAT - 제외 항목 이외의 금액은 모두 비목분류 및 계수를 산출하였는지 확인한다 * 퇴직공제부금비, 고용보험료는 별도의 비목분류 및 계수산출이 가능하다 <p>1) 노무비 비목(A) : 순공사금액의 노무비(직노+간노) 전체를 A 비목으로 분류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무비계수 : 노무비비목의 해당금액이 순공사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출한 것인지 확인한다 - 업무 5단계에 대한 노무비 산정이 적정한지 재확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윤, 일반관리비, 손해보험료, VAT를 제외한 항목을 비목분류 및 계수를 산출하지 않았으면 보완 또는 수정조치 ○ 노무비 산출금액이 부적정하면 보완 또는 수정조치 ○ 비목분류, 계수산출이 부적정하면 보완 또는 수정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 비목분류, 계수산출 자료 ○ 노무비 산출 근거 ○ 비목분류 · 계수 산출근거

업무단계	확인 사항	조치사항	확보자료
<p><8단계> 지수 조정율의 비목군 분류, 계수 (가중치)산정의 적정성</p>	<p>2) 기계경비 비목(B) : 순공사금액의 경비 중에서 기계경비를 B 비목으로 분류하되, '98.2.20일이후 입찰공고한 공사는 B'(국산기계 경비)와 B''(외국산 기계경비)로 분류한다</p> <p>○ 기계경비계수 : 각각의 기계경비 비목이 차지하는 금액이 순공사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출한 것인지 확인한다</p> <p>* 비목군 구분내역서 등의 자료로 국산기계와 외국산 기계로 분류한 것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되 품셈의 장비 종류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외국산장비라고 확증이 가는 장비는 외국산장비로 분류한다</p> <p>* 발주자의 설계시 장비구성 내용도 참고하여 분류한다</p>	<p>○ 비목분류, 계수산출이 부적정하면 보완 또는 수정조치</p>	<p>○ '98.02.20 이후에 입찰공고한 공사의 입찰공고문</p> <p>○ 비목분류 · 계수 산출 자료</p> <p>○ 비목군 분류 참고자료</p>
	<p>3) 재료비 비목 : 4개 비목으로 분류</p> <p>가) 광산품 비목(C) : 순공사금액의 재료비 중에서 불입자료에서 구분한 광산품에 해당하는 재료비를 C 비목으로 분류한다</p> <p>○ 광산품계수 : 순공사금액에서 광산품 비목(C)이 차지하는 비율을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출한 것인지를 확인한다</p> <p>* 불입자료 :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 기본분류 및 수입물가분류의 품류에서 구분한 재료비의 종류</p> <p>* 재료비의 비목 분류는 발주자의 설계내용(설계도면, 지방서, 내역서, 일위대가표, 산출근거 등)도 참고하여 분류한다 ⇒ 설계내용과 상이한 재질,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p>	<p>○ 비목분류, 계수산출이 부적정하면 보완 또는 수정조치</p>	<p>○ 비목분류 · 계수 산출 자료</p>

업무단계	확인 사항	조치사항	확보자료
<p><8단계></p> <p>지수 조정율의 비목군 분류, 계수(가중치) 산정의 적정성</p>	<p>나) 공산품 비목(D) : 순공사금액의 재료비중에서 불입자료에서 구분한 공산품에 해당하는 재료비를 D 비목으로 분류한다</p> <p>○ 공산품계수 : 순공사금액에서 공산품비목(D)이 차지하는 비율을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출한 것인지를 확인한다</p> <p>* 불입자료 및 재료비 비목분류는 광산품 비목구분 내용참조</p>	<p>○ 비목분류, 계수 산출이 부적정하면 보완 또는 수정 조치</p>	<p>○ 비목분류 · 계수 산출 자료</p>
	<p>다) 전력·수도·도시가스 비목(E): 순공사금액의 재료비중에서 불입자료에서 구분한 전력·수도·도시가스에 해당하는 재료비를 E 비목으로 분류한다</p> <p>○ 전력·수도·도시가스 계수 : 순공사금액에서 전력·수도·도시가스 비목(E)이 차지하는 비율을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출한 것인지를 확인한다</p> <p>* 불입자료 및 재료비 비목분류는 광산품 비목구분 내용참조</p>	<p>○ 비목분류, 계수 산출이 부적정하면 보완 또는 수정조치</p>	<p>○ 비목분류 · 계수 산출 자료</p>
	<p>라) 농림·수산물 비목(F) : 순공사금액의 재료비중에서 불입자료에서 구분한 농림, 수산품의 종류에 해당하는 재료비를 F 비목으로 분류한다</p> <p>○ 농림·수산물 계수 : 순공사금액에서 농림·수산물 비목(F)이 차지하는 비율을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출한 것인지를 확인한다</p> <p>* 불입자료 및 재료비 비목분류는 광산품 비목구분 내용참조</p>	<p>○ 비목분류, 계수 산출이 부적정하면 보완 또는 수정조치</p>	<p>○ 비목분류 · 계수 산출 자료</p>

업무단계	확인 사항	조치사항	확보자료
<p><8단계></p> <p>지수 조정율의 비목군 분류, 계수(가중치)산정의 적정성</p>	<p>4) 실적공사비 비목(G) : 순공사금액중에서 실적공사비에 해당하는 비목을 G 비목으로 분류한다</p> <p>○ 실적공사비 계수 : 순공사금액에서 실적공사비 비목(G)이 차지하는 비율을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출한 것지를 확인한다</p>	<p>○ 비목분류, 계수 산출이 부적정하면 보완 또는 수정조치</p>	<p>○ 비목분류 · 계수 산출 자료</p>
	<p>5) 산재보험료 비목(H) : 순공사금액의 산재보험료를 H 비목으로 분류한다</p> <p>○ 산재보험료 계수 : 순공사금액에서 산재보험료 비목(H)이 차지하는 비율을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출한 것지를 확인한다</p>	<p>○ 비목분류, 계수 산출이 부적정하면 보완 또는 수정조치</p>	<p>○ 비목분류 · 계수 산출 자료</p>
	<p>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목(I) : 순공사금액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I 비목으로 분류한다</p> <p>○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수 : 순공사금액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목(I)이 차지하는 비율을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출한 것지를 확인한다</p>	<p>○ 비목분류, 계수 산출이 부적정하면 보완 또는 수정조치</p>	<p>○ 비목분류 · 계수 산출 자료</p>
	<p>7) 고용보험료(J) · 퇴직공제부금비(K) 비목, 국민건강보험료(L), 국민연금보험료(M) : 순공사금액의 고용보험료를 J 비목, 퇴직공제부금비를 K 비목, 국민건강보험료를 L비목, 국민연금보험료를 M비목으로 분류한다</p> <p>○ 고용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계수 : 순공사금액에서 고용보험료 비목(J)과 퇴직공제부금비 비목(K), 국민건강보험료(L), 국민연금보험료(M) 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을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출한 것지를 확인한다</p>	<p>○ 비목분류, 계수 산출이 부적정하면 보완 또는 수정조치</p>	<p>○ 비목분류 · 계수 산출 자료</p>

업무단계	확인 사항	조치사항	확보자료
<p><8단계></p> <p>지수 조정율의비목군 분류, 계수 (가중치)산정의 적정성</p>	<p>8) 기타비목(Z) : 순공사금액에서 노무비(A), 기계경비(B), 광산품(C), 공산품(D), 전력·수도·도시가스(E), 농림·수산물(F), 산재보험료(G), 안전관리비(H), 고용보험료(I), 퇴직공제부금비(J)의 비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비를 기타비목(Z)으로 분류한다</p> <p>○ 기타비목 계수 : 순공사금액에서 기타비목(Z)이 차지하는 비율을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출한 것인지를 확인한다</p>	<p>○ 신규품목에 대한 비목분류, 계수산출이 부적정하면 보완 또는 수정 조치</p>	<p>○ 비목분류, 계수 산출 자료</p>
<p><9단계></p> <p>신규품목의 비목군 분류, 계수 (가중치), 산정의 적정성</p>	<p>○ 신규품목에 대하여 비목분류 및 계수 산출을 8단계의 작업과 같은 방법으로 별도로 하였던 지를 확인한다</p> <p>- 6단계의 신규품목 유무 체크내용에 따라 비목분류 및 계수산출의 작업 유무를 확인한다</p>	<p>○ 신규품목에 대한 비목분류, 계수산출이 부적정하면 보완 또는 수정 조치</p>	<p>○ 비목분류, 계수 산출 자료</p>
<p><10단계></p> <p>지수 조정율의비목군에 대한 물가 및 산출 지수의 적정성</p>	<p>○ 8단계 및 9단계에서 분류한 각 비목군에 대하여 입찰일(직전조정기준일)의 물가지수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현재의 물가지수 및 산출한 지수가 적정한 지 확인한다</p> <p>- 자료에 명시된 지수와 조달청 예산 사업관리과에서 관리중인 각종지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p> <p>- 입찰일(직전조정기준일)의 물가지수와 물가조정기준일 현재 발표된 지수를 각각 적용하였는지 확인한다</p> <p>*신규품목의 비목별의 물가지수는 신규품목이 변경계약된 날의 물가지수와 조정기준일 현재의 물가지수를 산출, 적용한다</p> <p>*조사금액 작성 및 발표일과 입찰일이 다른 경우 입찰일 현재의 물가지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에 주의</p>	<p>○ 비목군 별로 입찰일(직전조정기준일) 물가지수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현재의 물가지수 및 산출한 지수가 부적정한 경우에는 보완 또는 수정 조치</p>	<p>○ 직전 조정 기준일 현재 물가지수</p> <p>○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현재 물가지수</p> <p>○ 직전 조정 기준일 산출 물가지수</p> <p>○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현재 산출 물가지수</p>

업무단계	확인 사항	조치사항	확보자료
<p data-bbox="197 576 308 603"><10단계></p> <p data-bbox="201 642 304 780">품목조정 율의 물가지료 적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경비지수의 적용은 발주시기를 감안하여 다음의 회계통칙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적용한 것인지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41301-643('99.03.09) : '99년이전에 계약체결하여 '99년에 조정기준일이 도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 회계41301-573(2002.04.30) : '02.01.01이후에 조정기준일이 도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 기계경비 지수 적용방법 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회계제도과-298, '03.03.05) ○ 품목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시 물가지료는 입찰당시의 물가조사방법 및 대상과 같은 방법 및 대상으로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한다 ○ 조사한 가격에 따라 적용할 가격을 적정하게 산출하였는지를 확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금액 작성 및 발표일과 공사계약 체결일이 다른 경우 입찰일 현재의 물가지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에 주의 - 물가조사 비교표로 내용을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조사방법 및 대상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보완 또는 수정조치 ○ 적용가격을 잘못 정한 경우 수정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조사 비교표
<p data-bbox="197 1315 308 1342"><11단계></p> <p data-bbox="201 1381 304 1479">물가변동 조정을 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을 산출이 적정한지와 검토 및 수정한 물가변동 조정율이 3%이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지수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 물가변동적용대가의 비목군 분류 및 계수에 조사된 물가지수를 대입하여 물가변동 조정을 산출하여 조정율이 3%이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변동율은 신규품목을 포함한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율이 3%이상에 해당하여야 한다 - 신규품목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을 산출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 신규품목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일괄하여 계산하면 과다 물가변동조정을 산정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한 물가변동 조정율이 3%미만인 경우 그 사실을 수요기관 및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업무를 종결한다 	

업무단계	확인 사항	조치사항	확보자료
<p><11단계>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p>	<p>○ 품목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 :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대하여 입찰당시 조사단가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현재의 조사가격 및 계약단가를 비교하여 적용단가를 정하고 물가변동조정율을 산출하여 조정율이 3%이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p>		
<p><12단계> 물가변동 조정적용금 액 산출</p>	<p>○ 물가변동 조정율이 3%이상이고 물가변동 경과기간이 90일이상인 것이 확인되면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을 산출한 것이 맞는지 확인한다 - 선급 공제등을 하여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의 산출이 적정한지를 확인한다</p>	<p>○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산출이 부적정하면 수정 조치</p>	
<p><13단계> 물가변동 조정결재· 통보</p>	<p>○ 물가변동 요건(물가변동 경과기간 90일 이상, 물가변동 조정율이 3%이상)에 별첨양식의 총사업비 조정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소정의 결재를 득하고 수요기관,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업무종료 - 물가변동에 사용한 최종데이터는 추후 물가변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저장 관리한다</p>	<p>○ 물가변동 검토결과에 대하여 소정의 결재를 득하고 수요기관,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업무종료</p>	<p>○ 검토 보고서</p>

제3장 물가변동관련 제도 변천연혁

- (1) '69. 5. 20 :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정(제33조)
 - 계약내역서에 포함된 정부고시가격, 관허요금, 관영요금이 변경된 경우와 시멘트, 철근, 목재, 노임등이 15%이상 변경시 조정
 - 품목조정만을 인정한 부분조정, 책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만 조정
 - 85%미만 낙찰공사는 조정대상에서 제외

- (2) '74. 3. 25 :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개정
 - 당초 계약금액의 5%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 계약특수조건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변경비율대로 조정
 - 부분조정방법을 전체조정방법으로 개선

- (3) '77. 4. 1 : 예산회계법시행령에 근거조항 신설
 - 예산이 없는 경우 공사량을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 정부 귀책사유로 공정이 지연되는 경우도 조정대상에 포함
 - 당초 예정가격의 10%이상 증감된 경우 적용

- (4) '78. 12. 30 :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
 - 당초 예정가격의 5%이상 증감된 경우 적용
 - 전체조정과 함께 개별품목에 대한 부분조정제 부활
 - * 정부노임이나 자재가격이 전체 계약금액의 5%미만 인상되었더라도 당해품목 가격이 5%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적용

- (5) '83. 3. 28 :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
 - 강행규정화(업계 건의를 반영하여 조정기피사례 방지)
 - 개별품목에 대한 부분조정제 폐지(총액계약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
 - 선급 상당액을 조정금액에서 공제

- (6) '86. 4. 1 :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1차계약시에 부기한 총공사 금액으로 계약 체결한 것으로 보아 물가 연동제를 적용
 -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를 삭제함으로써 계약체결 후부터 곧바로 기간을 기산
- (7) '89. 12. 29 :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
- 조정요건 강화 : 계약체결 후 90일이상 경과 → 120일이상 경과
- (8) '93. 2. 22 :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
- 조정일 이후 이행하여야 할 공사금액에 대하여 동 부분에 대한 등락폭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조정율의 산정함
- (9) '93. 5. 20 : 계약사무처리규칙 개정
-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조정율을 산정
- (10) '93. 9. 23 :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
- 예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를 계약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수조정율” 방법으로 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함
- (11) '93. 10. 20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함
- (12) '95. 1. 1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공포
- 예산회계법에서 분리(법률 제4868호)
- (13) '95. 7. 6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공포
- 예산회계법시행령에서 분리(대통령령 제14710호)

- (14) '95. 7. 10 : 회계예규, 고시, 통칙등 제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지수조정율산출요령 등을 제정
- (15) '96. 4. 10 : 지수조정율산정요령 개정(회계예규 2200.04-137-1)
- 지수조정율 산정방법에 관한 제반 요령 고시
 - 기타 비목군에서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를 별도의 비목군으로 분리
 -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산정공식 명시
- (16) '98. 2. 20 : 지수조정율 산정요령 개정(회계예규 2200.04-137-2)
-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수조정율 산출 → 계약상대자가 산출
 - 지수는 계약체결일 및 조정기준일 현재 발표되어 있는 지수를 각각사용
 - 기계경비를 국산기계경비와 외국산기계 경비로 구분
- (17) '98. 2. 24 :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제64조)(대통령령 제15661호)
- 조정요건 완화 : 계약체결후 120일이상 경과 → 60일이상 경과
 - * 단, 조정기준일이 1998. 2. 24 이후에 도래된 계약공사에 대해서 계약 체결 후 60일이상 경과되면 조정가능
- (18) '98. 2. 25 :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재경원고시 제1998-15호)
- 계약체결 후 120일이상 경과를 60일이상 경과로 개정
- (19) '98. 3. 31 :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개정(부칙)(회계예규 2200.04-137-3)
- 기계경비를 국산과 외산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는 적용기준을 '98. 2. 20이후에 입찰 공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토록 명시
 - 계약체결 후 120일이상 경과를 60일이상 경과로 개정

(20) '99. 9. 9 :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예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도 계약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방법 결정
- T/K 공사도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지수·품목조정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물가변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함
- 입찰실시 후 계약 체결시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계약체결 전에 환율, 노임, 자재가격등의 변동이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일을 기준으로 특약을 정할 수 있게 함
-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 변경등의 계약금액 조정은 청구 후 30일 이내에 완료
- 물가변동에 관한 특례(부칙 제4조)신설 : 부칙에 정한 계약에 대해서는 특례에 정한 방법으로 가격의 등락율과 지수변동율을 산정하여 적용
-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금융결제원 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환산

(21) 2003. 5. 23 :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 시 조달청장의 사전검토 필수 절차화

(22) 2003. 12. 26 : 지수조정을 산출요령 개정(제3조)

- 각 비목군의 지수는 계약체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에서 발표되어 있는 지수적용 → 계약체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를 각각적용
- ※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발표되는 지수를 발표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최근의 지수가 미 반영되고, 조정기준일이 다르게 설정되는 문제점 해소 목적

(23) 2004. 4. 6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제64조)

- 계약 체결일로 부터 6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천재, 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

(24) 2005. 4. : “2005년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 물가변동(감리비)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 시 조달청장의 사전검토 의무화
- 2005년 주5일제 근무변경에 따른 물가변동(감리비) 산정 방식 조정 (회계제도과-1226, 2005.06.17, 기획8500-5391, 2005.06.21(한국건설감리협회, 회계제도과-1603, 2005.08.01)
 - 감리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 적용하는 감리비의 1일 노임단가는 2004년도 발표노임의 경우에는 실근무일수와 관계없이 25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2005년도 발표노임은 실질적 노임상승과 관계없이 조사방법 변경에 따른 부분이 추가 반영됨에 따라 물가변동을 또한 추가 상승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05년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등락을 산정방법 고시

(25) 2005. 9. 8 :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지수조정을 산출요령 개정

- 조정요건 완화 : 계약 체결후 60일이상 경과 → 90일이상 경과
- 조정을 산정 : 100분의 5이상 증감 →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감
- 등락을 산정 가격기준 : 계약체결 당시가격 → 입찰당시 가격
- 물가변동을 산정의 기준시점 : 계약체결일에서 입찰일로 조정

-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품목조정율로 조정
- (26) 2006. 3. 9 : 국가계약법 개정(2005.09.08)에 따른 환율 적용 방안
- 재정경제부의 질의회신(회계제도과-525(2006.03.09.))
 -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이 연도초 환율과 3%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을 곱하여 외산장비가격을 산출하였다면 직전조정일의 외산장비가격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 (27) 2006. 3. 23 : 실적공사비 지수 반영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회계예규 2200.04-159-1, '06.3.23)
 - 물가변동 시 실적공사비지수를 년도별, 반기별, 공종별로 산출하여 조달청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검토에 활용
- (28) 2006. 7. 14 : 경유세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2005.11.07)에 따른 경유세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2005.11.07)(2006.07.14)
- (29) 2006. 12. 19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정
- 국가재정법 시행령 총사업비 적정성에 대한 조달청검토 법제화
 -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시 조달청장의 사전검토 의무화
- (30) 2007. 6. 19 : 퇴직공제부금비 산정(유권해석)
- 퇴직공제부금을 공사공정예정표상보다 적게 공제한 경우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공제
 - 입찰공고일이 2007.01.01이후인 공사에 대한 지수산출시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 적용

(31) 2008. 5. 1, 12. 29 : 회계예규개정

- 2008.5.1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세부 지침 마련
 - 조정방법 : 품목조정
 - 총액 E/S와 단품 E/S의 관계
 - 적용시점 : 2006. 12.29공고분부터 (이후 개정에 의해 확대시행)

(32) 2008. 7. 23 : 국가재정법 및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 총사업비 관리대상 : 토목(500억원→300억원), 건축(200억→100억)
- 조정기준일이 5월30일 이후공사에 대한 생산자 물가지수 변경 (한국은행 발표)

(33) 2009. 5. 8 : 회계예규 개정

- 감액(D/S) 관련 세부지침 마련
 - 계약담당공무원이 감액조정요건 확인
 - 단품과 총액D/S 요건 동시 충족시 총액우선
 - 단품감액대상은 산출내역서상의 자재
 - 선급 비공제, 통보전 기성대가 공제
 - '06.12.29 이전 계약은 단품증액 조정된 증액 범위내에서 단품 감액조정

세계 최고의 공공부문 물적자원 조달·관리 전문기관

제 Ⅲ 편 FAQ



Public Procurement Service



Ⅲ. F A Q

1 공통

가. 일반사항

Q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총사업비관리지침” 변경에 따른 물가변동 조정업무 처리는?

A

- ① 2003년 4월 총사업비관리지침 변경 전에는 물가변동 조정 업무는 각 수요부에서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조정하였으나
- ② 2003년 4월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으로 시설공사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은 조달청장의 사전검토가 필요하게 되어 그동안 자체에서 물가변동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심의가 통과되지 않은 모든 물가변동 검토도 조달청에서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있음
- ③ 2005년 5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으로 감리비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은 조달청장의 사전검토가 필요하게 되어 그동안 자체에서 감리비의 물가변동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심의가 통과되지 않은 모든 물가변동 검토도 조달청에서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있음

✚ 관련 규정 :

- 2008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

Q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계약서 상에 명기하지 않은 경우 처리방법은?

A

- ① 동일한 계약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과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함
- ② 계약서에 구체적인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품목 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으로 조정 함

✚ 관련 규정 :

- 국가계약법 제64조 제2항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2항

Q

3) 1회 물가변동 조정을 한 후, 2회 이후 물가변동 조정시에 물가변동 조정을 산정방법(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의 변경이 가능한지?

A

- ① 물가변동 조정방법 변경은 조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고,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어 계약 이행 도중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 ② 물가변동 조정을 산정방법을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아, 만약에 1회 물가변동 조정시에 지수조정율을 적용하였다면, 2회 이후 물가변동도 같은 조건인 지수조정율을 적용하여야 함

❖ 관련 규정 :

- 회제 41301-663, '97. 03. 20
- 회계 45107-2328, '95. 11. 28

Q

- 4)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산정 방법은?(기간요건, 등락요건)
- 조정기준일을 임의적으로 조정 가능여부

A

-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 산정은 물가변동 조정요건인 기간요건 및 등락요건이 동시에 최초로 충족되는 최초의 날이며, 이를 임의로 설정할 수 없음
- ② 물가변동 조정요건(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기간요건 : 계약체결 후 90일경과
- 등락요건 :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등락율이 $\pm 3\%$ 이상

※ 조정기준일 이란

- 계약체결 후 또는 물가변동 조정 경과기간이 90일 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등락율이 $\pm 3\%$ 이상에 가장 근접한 날이며, 기간요건과 등락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최초의 날임

✚ 관련 규정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회제 41301-1884, '99. 06. 18

Q

5)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산정시 기간요건인 “90일이상 경과”의 의미는?

A

① “90일이상 경과”라는 의미는 적어도 90일은 지나야 하므로 91일째부터가 된다. 따라서 ‘계약체결일(직전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상 경과’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날은 결국 계약체결일(직전조정기준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부터를 의미함.

- 계약체결일(직전조정일)은 불산입 함(초일 불산입)

② 물가변동 경과기간 변천

- '89.12.28 이전 계약 : 90일

- '98. 2.23 이전 계약 : 120일

- '98. 2.24 이후 계약 : 60일

- '05. 9.08 이후 계약 : 90일

❖ 관련 규정 :

- 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 제2항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의 기간요건 산정 회계통첩 : 회제 41301-2543 '98. 08. 26
- 회제 41301-1438 '98. 06. 09
- 회제 41301-422 '98. 04.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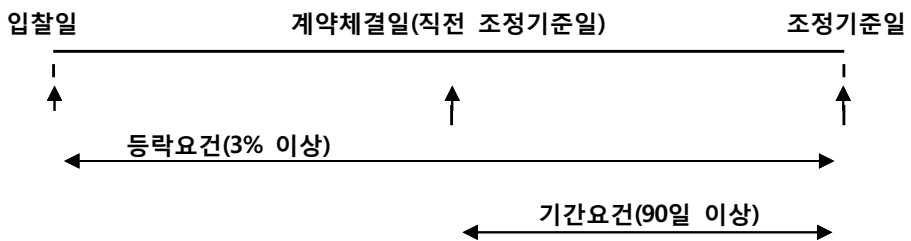
Q

6) 물가변동 기본요건 충족조건

A

- 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 2차이후의 계약금액조정은 직전 조정기준일을)을 기준일 하여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이 증감할 때 조정함
- ②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관련 경과조치
 - 증액조정의 경우 : 개정 전 규정과 개정된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물가변동 조정요건 및 조정 신청하여야 함
 - 감액 조정의 경우 : 발주기관은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조정요건을 산정
 - 개정된 규정을 선택하여 증액 조정 한 경우 : 개정된 규정에 따라 적용

<등락요건 및 기간요건>



※ 주의사항 : 기간요건인 90일 이상 판단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기산하며, 등락요건인 ±3% 이상의 등락율은 입찰일(2차이후는 직전 조정기준일) 기준시점으로 산정함

❖ 관련 규정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Q

7)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위하여, 조정신청서를 동시(1회, 2회)에 요청하는 경우 처리방법은?

A

- ① 물가변동 조정검토는 계약이 체결된 계약내역서 상의 공사 물량을 대상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출하여야 하므로,
- 1회 및 2회 물가변동 조정신청서를 동시에 접수는 할 수 있음.
- ② 이 경우에는 1회 신청분에 한하여 E/S 검토 후에 계약금액을 조정 한 후에, 순차적으로 2회분 계약금액 조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③ 단, 발주기관의 예산배정 지연 등으로 인하여, 1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내역을 당사자 간에 확정 한 경우에는 확정된 금액으로, 2회 E/S 조정시 1회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관련 규정 :

- 회제 41301-952, '03. 08. 22
- 회제 41301-782, '98. 04. 28

Q

8)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물가변동 신청일의 적용기준은?

A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받고자하는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 신청서에 동 요건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날(접수된 날)을 조정신청일로 인정함.

② 또한, 시공자가 물가변동 신청서류를 책임감리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감리자는 반드시 발주기관에 접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접수)하는 날을 조정신청일로 인정함.

※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책임감리를 수행중인 현장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책임감리원에게 물가변동 조정신청서 내용을 검토하게 할 수 있음.

✚ 관련 규정 :

- 회제 41301-2209, '99. 07. 16
- 회제 41301-2045, '96. 09. 05

Q

9) 당초에 물가변동 조정율을 3%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변경계약을 한 후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 사전검토를 신청하여 부적정(90일 경과, 3% 미만 등락)으로 통보받아 물가변동 요건을 보완하여 재신청한 경우에 재신청으로 보아야 하는지?

A

-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일”이라 함은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계약금액 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을 의미함.
- ②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기준일 등 동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잘못 적용하여 신청서류가 반려된 경우라면, 당초에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한 일자를 조정신청일로 인정할 수 없음.
- ③ 계약상대자의 조정신청 내용을 발주기관이 인정하여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수령하는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절차가 진행된 후에 발주기관이 이의 수정을 요구한 경우라면 계약자가 당초에 신청한 일자를 조정신청일로 인정함

<참고사항>

- ① 시공사의 물가변동 신청을 받아 수요기관에서 검토한 후 계약금액 조정절차인 승인, 계약 등을 하지 않고, 조달청에 검토를 신청하여 **부적정(90일 미경과 또는 3%미만 등락)**으로 통보받은 공사에 대하여 물가변동, 요건을 보완하여 신청할 경우 수요기관에 재 접수된 날을 조정신청일로 한다.

- ② 시공사의 물가변동 신청을 받아 수요기관에서 검토한 후 계약금액 조정절차인 **승인, 계약** 등을 하고, 조달청에 검토를 신청하여 부적정(90일 미경과 또는 3%미만 등락)으로 통보받은 공사에 대하여 물가변동 요건을 보완하여 신청할 경우 조정신청일은 당초의 신청일로 한다.

❖ 관련 규정 :

- 회제 41301-952, '03. 08. 22

Q

10) 물가변동 신청서 접수시 반려와 보완의 차이점

A

① **반려** : 물가변동 접수시 조정기준일 및 각종지수 적용대가 산정이 명백히 틀려 물가변동 서류를 접수할 수 없어 반려 조치한 경우를 의미함.

보완 : 물가변동 접수시 일부비목 및 일부 항목이 틀려 보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함.

<물가변동 신청일 산정>

- ▶ **반려할 경우** : 물가변동 신청일은 보완하여 재접수 하는 경우로 재접수일을 신청일로 인정함
- ▶ **보완할 경우** : 물가변동 신청일은 최초 접수한 날짜를 신청일로 인정함.

❖ **관련 규정 :**

- 회계제도과-681, '04. 05. 11
- 회계41301-639, '03. 05. 26

Q

11)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물가변동 조정을 구성원 별로 적용하는지 여부

A

- ①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은 기 계약된 계약내역서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 및 비목을 그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 ② 전체내역서를 각 구성원 별로 분할할 수 없으므로, 계약시 체결된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의 경우라도 구성원 별로 구분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 관련 규정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
- 회계 41301-686, '97. 03. 24

Q

12) 물가변동이 하락하여 D/S(De-Escalation)가 발생하였을 때의 처리방법은?

A

- ① 계약금액 조정시 감액조정은 발주기관이 준공대가 지급시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내역서 등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계약당사자에게 통보하여 감액 처리함
- ② 물가변동 자료의 작성 및 제출의 주체
 -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시 : 계약상대자(시공사)가 작성하여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에 접수
 -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감액시(D/S) :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③ 계약상대자에게 미리 선급을 받은 경우에는 선급은 공제하지 않음
 -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98년 하반기에 D/S가 발생하였으므로
 - '98년 하반기에 D/S를 하지 않고 E/S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D/S를 검토하여 조정하여야 함

❖ 관련 규정 :

- 회제 41301-1882, '99. 06. 18
- 회계 41310-2889, '98. 09. 18
- 회제 41301-3223, '98. 10. 16

나. 물가변동 적용대가

Q

1) 물가변동 조정에 따른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방법은?

A

- ①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은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다.
 - 계약금액에서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 물가변동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 된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 물가변동 신청일 이전에 기성대가를 지급 받은 경우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 ②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산정 하되, 실행공정율이 빠른 공종은 빠른 실행공정율을 적용한다.
 - ※ 공사공정예정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공정예정표를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함
- ③ 조정기준일 전에 선급을 지급한 경우 조정금액을 **공제**한다.
- ④ **PS 항목**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 ⑤ 경유세인상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 ⑥ 수요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항목은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 ⑦ 장기계속,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⑧ 전회에 **조달청에서 검토 통보한 조정금액이 변경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물가변동 검토 요청한 경우
 - 기 검토 통보한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물가변동조정금액에 **포함하여** 적용대가를 산출할 수 있다.

❖ 관련 규정 :

- 회제 41301-3133, '97. 12. 14
- 회제 41301-2098, '07. 28
- 회제 41301-743, '97. 03. 27

Q

2)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금액을 의미함은 물가변동금액 적용대가 산출시 조정기준일의 포함여부

A

①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착공시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를 기준으로 산출함.

※ 조정기준일이 '04. 09. 01이라면 공사공정예정표상 9. 01이후에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적용함을 의미함.

②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은 조정기준일(조정기준일 포함)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금액을 적용하되, 착공시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함. 단,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외함.

※ 이후 : 기준이 되는 때를 포함하여 그보다 뒤

▼ 관련 규정 :

- 지수조정을 산출요령 제4조(계약금액의 조정)

Q

3) 물가변동 조정 요청 시, 전회에(1회, 2회 등)조달청에서 검토하여 통보한 조정금액이 변경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전회 E/S 물가변동 금액을 포함하여 적용대가를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

A

① 계약금액 조정은 기간요건 및 조정율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마다 순차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② 계약상대자가 2회 이상 계약금액 조정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도 순차적으로 1차 계약금액 조정 후, 2차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③ 발주기관의 예산배정 지연 등으로 인하여 1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 내역을 당사자 상호간에 확정된 경우라면 동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2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에는 확정된 1차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

⇒ 반드시 조달청 물가변동 조정 요청시에 변경 계약된 내역으로 제출바람.

❖ 관련 규정 :

- 회제 41301-952, '03. 08. 22

Q

4) 공사공정예정표와 실행공정이 상이한 경우의 물가변동적용
대가 산출은?

A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금액을
의미하며

- 계약상대자가 착공시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내역서 상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함.

②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공사공정예정표와 달리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
사공정예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며,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수정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에 의하여 공정율을 산출하여야 함.

✚ 관련 규정 :

- 회제 41301-2098, '97. 07. 28
- 회제 41301-743, '97. 03. 27

Q

5) 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A

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관련 회계통칙(2005. 7. 22 회계제도과-1524) 및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관련 회계통칙(2006. 7. 14 회계제도과-2042)에 의거 계약금액조정을 한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경우 동 통칙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율은 경유세율 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과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대한 대가에서 당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소요되는 경유에 대해 경유세율 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하는 것 입니다.

② 회계통칙 “교통세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회계제도과-2042(2005.11.07) 및 회계제도과-1512(2006.07.14))”의 내용에 따라 경유세율 인상분은 물가변동 조정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

※ 금회 최종 물가변동 조정금액 = 우리청 물가변동 조정 검토금액 · 경유세율 인상분(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된 경유물량에 대한 인상분)

✚ 관련 규정 :

- 회계제도과-2042(2005.11.07) 및 회계제도과-1512(2006.07.14)

Q

6)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되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 변경내용이 반영된 공사공정예정표가 변경된 경우에 기존 공사공정예정표는?

A

- ①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은 공사 착공시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한 물량을 기준으로 산출함
- ②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조정기준일 이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았고, 단지 공사공정예정표의 변경 승인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일어난 경우라면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함

✚ 관련 규정 :

- 회제 41301-648, '03. 05. 26

Q

7)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실제공정과 공사공정예정표상의 공정이 상이한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기준은?

A

- ①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를 산정하며
- ②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전에 수행되어야 할 부분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공사공정 예정표상의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함.
- ③ 단, 지연된 내용이 정부책임이나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동 지연부분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을 포함하여 적용

※ 불가항력 사유 정의(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

- ▶ 태풍, 호우,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동 기타 계약상대자의 통제 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서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관련 규정 :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
- 회제 41301-946, '03. 08. 21

Q

8) 예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되어야 할 금액이나,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조정기준일 현재까지 예정공정표를 변경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비목군 분류 및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산출방법?
계약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와 이윤 산정시 포함되지 않은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 지수조정을 산정시 비목군 분류의 적용방법?

A

-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금액이며
- ② 공사이행이 발주기관의 예산배정 지연등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동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여야 함.
- ③ 지수조정율에 의한 경우 비목군 분류는 산출내역등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일반관리비, 이윤은 제외함

❖ 관련 규정 :

- 회제 41301-372, '03. 04. 03

Q

9)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총공사 공정예정표의 공정율과 각 차수별 공정예정표의 공정율을 합한 공정율이 서로 다를 경우에 어떤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A

- ①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공사착공시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현재의 산출내역서에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물량으로 산출.
- ②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 공정예정표의 공정율로 차수별 공사 공정예정표의 공정율을 합한 공정율이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공사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 차수별 공사공정표 작성은 총공사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각 차수공사별로 공사진행 현황, 예산배정 등을 감안하여 올바르게 작성하여야 함.

❖ 관련 규정 :

- 질의 및 회신-11636, '04. 11. 08

Q

10) 장기계속공사와 계속비 공사의 차이로 인한 물가변동 예정
공정을 적용시 차이점

A

①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공정예정표의 공정율과 차수별공사공정예정표의 공정율을 합한 공정율이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차수별공사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을 감안하여 공사진행 현황, 예산배정, 어느 공사공정예정표가 바른지 등을 검토하여 올바르게 바로 잡은 총공사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

② 적용방법

- 계속비공사는 전체공사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예정공정율을 산정
- 장기계속공사는 원칙적으로 전체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며, 차수별로 예정공정표가 분리된 경우에는 차수별 예정공정표를 참조하여 산출함.
 - 차수공정예정표 적용시 감독관 승인 필
 - 전체공정예정표와 차수공사공정예정표 확인 필요

※ 사유

- ▶ 현재 대단위사업들의 공정표 작성시 일부현장의 경우 차수공사 공정예정표를 수정하면서 전체공사 공정예정표를 수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관련 규정 :

- 회제 41301-766, '98. 04. 28
- 질의및회신-11636, '04. 11. 06(법무심사팀)

Q

11)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의 공제 기준은?

A

① 기성대가 공제여부

- 조정신청일 이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한다.
- 조정신청일 이후에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② 준공신청과 E/S관계

- 조정신청일 이전에 준공대가를 신청할 경우 : 물가변동 적용대상 공사가 아니다.
- 조정신청일 이후에 준공대가를 신청할 경우 : 준공대가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조정기준일과 공제여부

시 점	협 의 내 용		물가변동 적용여부
조정 신청일	기성대가	이전에 기성대가 지급	- 해당 기성대가 공제
		이후에 기성대가 지급	- 공제하지 않음
	준공대가	이전에 준공대가 신청	- 물가변동 적용 대상공사가 아님
		이후에 준공대가 신청	- 준공대가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액 조정

❖ 관련 규정 :

- 회제 41301-1045, '03. 09. 03

Q

12)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된 PS단가 적용 기준은?

A

① PS항목과 같이 시공당시에 설계내용이나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항목의 계약금액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단, PS항목에 대하여 설계내용 및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시공중에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확정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할 수 있음.

PS항목(잠정금액) : Provisional Sum

▶ 설계당시 설계내용 및 계약내용을 확정하지 못하여 1식 단가로 금액을 산정한 경우

② PS 대상 항목은 설계서 및 수요기관에 PS 여부를 확인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③ 계약당시의 PS금액이 제잡비 항목인지, 제잡비 제외항목인지를 파악하여 물가변동 조정시에 PS금액은 제잡비 적용여부를 파악하여 적용한다.

- 국토해양부 : PS금액 제잡비 적용하여 산출
- 도로공사 : PS금액 제잡비 제외항목으로 산출

※ 감사원 지적사항

▶ PS 항목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도록 지시

Q

13) 턴키 입찰공사에 포함된 설계비 항목은 물가변동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 여부

A

①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중 설계부분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전에 그 이행이 완료되는 것이므로, 설계비는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함

※ 공사시행 전 완료된 설계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설계는 이행완료된 것으로 보아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임.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의 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의 시급성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를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설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위 조항에 해당하는 공사일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전부 또는 일부의 설계비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 회계제도과-401, '05. 03. 02

다. 선급

Q

1) 계약금액 변경으로 인하여 선급공제시에 선급을 적용 방법은?

A

① 선급 공제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공제한다.

※ 공제금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 × 조정을 × 선급지급율

산식 : 선급지급율 = 선급 ÷ 당해년도 계약금액(년부액)

※ 당해년도 계약금액 정의

▶ 계속비공사 : 년부액 기준

▶ 장기계속공사 : 당해년도 차수계약금액 기준

②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해당차수 적용대와 선급율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예시) 선급 공제금액 산출

구 분	당 초	변 경(조정기준일)
계약금액	100억원	120억원
선급율	30%	25%
선급금액	30억원	30억원
※ 선급 공제금액 = (120억원에 대한 적용대가) × 25% × K(물가변동율)		

Q

2) 선급지급 후 조정기준일 전에 선급 전액이 정산된 경우
선급 공제여부는?

A

- 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계약금액 중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며,
- ② 조정기준일 이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선급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의 규정에 정한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금액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 ③ 조정기준일 이전에 선급 전액을 정산하여 조정기준일 현재 지급되어 있는 선급이 없는 경우에는 동 선급율을 공제할 필요 없음.

※ 선급정산확인서 등 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관련 규정 :

- 회계 41301-784, '97. 04. 01

Q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 이전 또는 이후에 선급을 지급받은 경우의 공제금액 산출 기준은?

A

- ① 조정기준일 이전에 선급을 지급한 경우에만 물가변동 조정 금액에서 선급을 공제한다.
- ② 조정기준일 이후에 선급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선급을 공제하지 않는다.
- ③ 조정기준일(= 선급수령일)에 선급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급을 공제하지 않음.

< 조정기준일과 선급관계 >

시 점	행위 내용	물가변동 적용여부
조정기준일	이전에 선급 수령시	○ 선급 공제함
	이후에 선급 수령시	○ 선급 공제하지 않음
	조정기준일에 선급 수령시	○ 선급 공제하지 않음

✚ 관련 규정 :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
- 회제 45107-2281, '95. 11. 22
- 회제 41301-2501, '97. 09. 08

Q

4) 장기계속공사의 선급 적용대가 산출시 PS금액 처리방법

A

① 선급은 해당차수계약금액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PS금액에 대한 선급에 대한 적용대가 산정시 해당차수계약금액 내에서만 공제함.

예시) 선급 적용대가 산출

총 계약금액 2,000억원 중 PS금액 30억원

- 조정기준일 현재의 물가변동 제외 금액(PS금액 제외) : 1,000억원
- 조정기준일 현재의 차수별 물가변동 제외금액(PS금액 제외) : 100억원일 경우
- 해당차수계약금액 200억원중 PS금액 10억원일 경우

☞ 선급 적용대가 산출시

$$= 200\text{억원} - 100\text{억원} - 10\text{억원} = 90\text{억원}$$

Q

- 5) 선급 적용대가 산출시 선시공부분에 대한 처리방법은?
- 설계변경에 따른 선시공 공정

A

- ① 선급은 해당차수계약금액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선시공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기준일 현재 계약변경이 있기 전까지는 선급 적용제외금액으로 포함할 수 없음.
- ② 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계약체결시 작성된 공사공정 예정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선시공 등)에는 당초 공사공정예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물가변동 적용 대가는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에 의하여 산출함.

✚ 관련 규정 :

- 회계제도과-731, 2004. 05. 15

Q

6) 계속비공사의 선급 공제금액 산정

A

- ① 계속비공사의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년부액을 대상으로 산출한 선급 적용대가를 산출하여야함.
- ② 총계약금액(조정기준일 현재)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당해연도(년부액) 이전까지의 년부액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선급 공제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ex) 총계약금액 : 2,500억원

1차년도 년부액 : 300억원, 2차년도 년부액 : 200억원

3차(당해연도)년부액 : 400억원 물가변동 제외금액 :700억원

선급 적용대가 : $400 - (700 - 300 - 200) = 200$ 억원

< 계속비공사와 장기계속공사의 구분 >

- ▶ 계속비공사란(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5항)
 - 계속비 예산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은 총공사 금액으로 하고, 년부액을 계약서상에 명시하는 공사
- ▶ 장기계속공사란(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로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 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

Q

7) 물가변동 조정신청에 있어 개산급에 의한 기성대가 공제 여부와 적용기준?

A

① 개산급에 대한 기성대가임을 증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만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산급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주의사항 : 계약담당공무원(수요기관) 책임하에 각종 증빙서류를 참조하여 개산급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조달청에 조정요청하여야 함.

<개산급에 의한 기성대가 증빙서류>

1. 개산급에 의한 기성대가임을 증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하고
2. 신청한 내용에 따라 개산급에 의한 기성(준공)검사를 실시한 내용
3. 개산급에 의한 지출명세서
4. 감사원에 보고한 자료
5. 사후정산 또는 설계변경 확정내용

③ 장기계속공사 계약에 있어서 차수별 준공대가는 개산급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④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 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신청 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시에는 공제하며, 동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 것임.

※ **개산급의 정의**(수입,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 ▶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된 경우 개략금액으로 채무이행이 도래이전에 지급하고 사업 실적에 의하여 채무액을 확정 정산함을 말함

✚ **관련 규정 :**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의2
- 회제 41301-1046, '03. 09. 30
- 회제 41301-127, '03. 02. 05
- 회제 41301-1886, '97. 07. 14

가. 지수조정율(k)

Q

1) 물가변동 조정시 비목군 조정계수의 소수점 처리기준은?

A

① 적용대가 계수

-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 산정함
- 계수처리
 - 기타경비 비목(Z)계수 = 1-(기타경비 비목을 제외한 비목군 계수의 합)
 - 소계를 우선 분배한 후 세부 비목에서 변동이 작은 비목으로 정리함
 - 각 비목군 계수의 합 = 1이 되어야 함

② 기준(비교)시점의 지수 :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③ 지수변동율(비교/기준) : 소수 다섯째 자리 이하는 절사하여 소수점 넷째자리 산정함

④ 지수 조정율(k) : 소수 다섯째 자리 이하는 절사, 소수점 넷째자리 산정함

▼ 관련 규정 :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Q

2) 물가변동 조정율(지수조정율) 산출표 상의 물가변동 적용
대가 비목계수 적용 기준은?

A

- ① 물가변동 적용대가 비목계수 산정은 소계를 우선 분배한 후
세부 비목에서 변동이 작은 비목으로 정리한다.
- ② 비목 소수점 처리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
째자리까지 산정한다.
- ③ 각 비목군 계수의 합은 최종 “1”이 되어야 한다.

- ▶ 계수 :
 -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의 금액이 동 내역서의 재료
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
- ▶ 계수처리 :
 - 기타경비 비목(Z) 계수
= 1 - (기타경비 비목을 제외한 비목군 계수의 합)

❖ 관련 규정 :

- 회계예규 2200.04-137-4, '03. 12. 16
- 회계통칙 회제 41301-956, '99. 04. 02

Q

3) 조정기준일 현재에 설계변경 등으로 신규비목이 있는 경우에 금액가중치 비율 산정은?

A

- ①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각 비목별 해당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합계금액으로 산출한다.
- ② 금액가중치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대한 각 비목별 비율로 산정하며 가중치 합계는 “1”이 되어야 한다.

예시) 지수조정을 산출표 작성

구 분	물가변동 적용대가	금액가중치(A)	지수조정율(K)	A×K
기존비목	10,265,965,000	0.8902	5.61%	4.990%
신규비목1	1,265,568,000	0.1098	4.84%	0.530%
신규비목2				
신규비목3				
합 계	11,531,533,000	1.0000		5.520%

※ 주의사항 : 수요기관에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순공사비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

Q

4) 설계변경으로 인한 신규품목에 따른 조정율 산출은?

A

①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신규비목이 추가된 경우에 신규비목에 대한 지수변동을 산정은 설계변경 당시와 조정기준일 당시의 지수를 비교하여 산출함

※ “설계변경당시”를 설계변경 기준일로 본다.

<“설계변경 당시”의 적용 기준>

- ▶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할 때
- ▶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을 경우 :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 한 때를 말함

② 물가변동 조정요청시 설계변경당시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설계변경 도면 확정 문서
- 계약당사자간 합의문서, 계약문서 등

③ 설계변경으로 2차, 3차, 4차에 신규품목 발생시에도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일로 하여 조정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④ 설계변경 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시에는 조정된 계약금액 기준으로 한다.
-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물량에 대한 등락율 산정시 기준시점은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한다.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신규품목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99. 04. 02

<조정기준일과 설계변경 관계>

시 점		실시내용	결 과
조정기준일	이전	설계변경	설계변경 내역으로 계약금액 조정
	이후		기준일이전 내역으로 계약금액 조정후 정산

예시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례

'99.1.1	'99.9.1	'00.3.1	'00.5.1	'01.6.1	'03.2.3	적용대가 : 1,000,000원		
					k1	기존	600,000원	k
					k2	신규	200,000원	
					k3	신규	50,000원	
					k4	신규	100,000원	
					k5	신규	50,000원	
기준시점	1차변경	2차변경	3차변경	4차변경	조정기준일		준공일	

예시2) 신규품목의 적정한 물가변동 조정사례

구 분	k1	k2	k3	k4	k5	합 계
적용대가	600,000원	200,000원	50,000원	100,000원	50,000원	1,000,000원
등락율(K)	5.77%	5.04%	4.40%	3.55%	3.05%	5.19%
등락금액	34,620원	10,080원	2,200원	3,550원	1,525원	51,975원
통합 K값	통합 K값 = (51,975원 ÷ 1,000,000원) = 5.19%					

예시3) 설계변경으로 인한 신규품목을 감안하지 않은 부적정 사례

구 분	K	비 고
적용대가	1,000,000원	기준시점 : '99.1.1
등락율(K)	5.77%(다소차이가 있음)	비교시점 : '03.2.3
등락금액	57,770원	

- 신규품목을 기존계약과 동일한 시점으로 등락율을 산출한 경우 과다하게 산출됨

❖ 관련 규정 :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2호
- 회제41601-1093, '02. 08. 09
- 회제45107-236, '97. 02. 04
- 회제45107-393, '95. 03. 23

Q

5) 물가변동 조정시에 사용한 각종 비목별 지수 및 제경비
요율 적용 기준은?

A

① 각종 비목별 지수 및 제경비 요율의 적용기준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비 목 구 분	지 수 검 토 기 준
1. 노무비(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직종별 평균노임 (www.cak.or.kr → 시중노임단가) ○ 제조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발표 직종별노임의 평균치 ○ 건설공사 감리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건설감리협회 기준 인건비
2. 기계경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평균치 - www.cak.or.kr → 건설정보 → 건설기계 경비 산정
3. 재료비(C, D, E, F) - 광산품, 공산품, 전력· 수도, 농림수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통계월보상 생산자 물가지수 (매월말지수) - www.bok.or.kr → 경제통계 → 통계 DB 검색
4. 실적공사비(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실적단가의 전체 평균치(국토해양부)
5. 산재보험료(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부 발표 연도별 산재보험 요율
6. 산업안전 보건관리비(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부 발표 연도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요율
7. 고용보험료(J)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 공사원가 제비율 적용
8. 건설 퇴직공제부금비(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 공사원가 제비율 적용
9. 국민건강보험료(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직전조정일'09.2.12이전) ○ 조달청 공사원가 제비율적용(직전조정일'09.2.12이후)
10. 국민연금보험료(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법(직전조정일'09.2.12이전) ○ 조달청 공사원가 제비율적용(직전조정일'09.2.12이후)
11. 기타비목(Z)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무비 및 재료비 지수 적용

❖ 관련 규정 :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4항
-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나. 비목군 분류

Q

1) 지수조정을 적용시 재료비 비목 중 광산품(C), 공산품(D),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E), 농림수산물(F) 등의 비목 분류 기준은?

A

①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한 생산자 물가지수 기본분류지수 및 수입 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비목군	소분류	적용 품목
광산품	석탄, 원유	- 무연탄, 원유, 천연가스, 연탄
	금속광업	- 주석, 니켈, 광석
	비금속 광물광업	- 토사석, 석회석, 점토, 석재, 쇠석, 모래, 자갈, 소금(천일염), 고령토, 규조토, 화강암
공산품	섬유제품	- 섬유사, 로프, 망, 유리섬유, 포대, 도포, 천막, 생사, 어망, 장갑, 모피, 부직포
	목재, 나무제품	- 제재목, 합판, 콜크제품, 침목, 각재(육송, 미송), 판재
	펄프, 종이, 출판	- 펄프, 종이, 판지, 신문, 서적
	코크스, 석유정제품	- 코크스, 타르, 윤활유, 플라스틱제품, 아세틸렌가스, 압축산소, 혼합가스, 안료, 화약, 접착제, 의약품, 벤젠, 목탄, 아스팔트
	화학제품	- 비료, 도료, 합성고무, 플라스틱제품, 아세틸렌가스, 압축산소, 혼합가스, 안료, 화약, 접착제, 의약품, 벤젠, 목탄, 페인트(수성, 유성)

비목군	소분류	적용 품목
공산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 타이어, 튜브, 고무, 비닐, 플라스틱 창문, 스티로폴
	비금속제품	- 유리, 유리제품, 석면, 압면, 유리섬유, 타일, 연마지, 아스콘, 기와, 레미콘, 콘크리트제품, 석제품, 인공골재, 도기시멘트
	제1차 금속산업	- 철광괴, 철강재, 주물, 합금철강, 귀금속재, 슬래그, 이형철근
	조립금속	- 탱크, 용기, 수공구, 보일러, 방열기, 철문, 철구조물, 못, 용접봉, 도금, 샤프트
	전기, 기계	- 전동기, 변압기, 전구, 조명기구, 전기기계, 배전반, 전기제어 장치
	영상, 음향	- 방송장치, 통신장비, 영상장비, 음향장비, 전자부품
	기타	- 금속가구, 목재가구, 플라스틱가구, 간판, 광고물, 장식장, 침대, 매트리스, 운동용구, 폐철강재, 비철금속재생재, 재생재, 고철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전기, 가스	- 전력, 연료용·난방용 도시가스, 증기, 온수, 충전료
	수도사업	-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림수산물	농업	- 묘목, 관상수, 정원수, 종자, 화훼작물
	임업	- 화목, 육송원목, 비계목, 잔디

▼ 관련 규정 :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4항
-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Q

2) 지수조정을 적용시 비목군 분류 중 실적공사비비목(G)의 비목군 분류 기준은?

A

① 국토해양부 발표 실적공사비의 분류

- '04. 3. 8일부터 발표한 국토부 실적공사비가 비목군 분류 작성을 위한 기준자료에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분류
- 단, 국토부 실적공사비와 동일한 품목에 조달청 시장시공가격이 적용된 경우에도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분류

② 조달청 시장시공가격

- 비목군 분류 기준자료에 조달청 시장시공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에 의한 “재료비·노무비·경비 중 2개 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 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의 단가로서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분류
- 단, 적용단가가 순수 재료비, 노무비로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비목으로 분류
예)· 보차도경계석 설치, 타일 붙이기 등과 같이 순수한 인건비(건설장비 불포함)로만 구성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노무비 비목(A)으로 분류
·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우레탄도막방수, 화강석 붙이기,

수성페인트칠 등과 같이 정부표준품셈에서 순수재료비와 노무비로 구성된 경우로서 조달청에서 별도 조사한 가격 → 재료비, 노무비 비목으로 분류

- 씨드스프레이, 녹생토 등 재료비에 공산품(D), 농림수산물(F)이 포함된 경우와 같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각 단가에 2가지 이상 비목 포함된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분류
- 도로표지판 설치, AL창호, 악세스후로와 등과 같이 하나의 견적에 재료비가 포함된 설치비 또는 제작비 등은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분류

③ 견적서 단가에 대한 분류

- 조달청 시장시공가격 분류와 동일하게 순수한 재료비, 인건비(건설장비 불포함)로 구성된 견적단가는 해당 비목으로 분류
- 하나의 견적에 재료비가 포함된 설치비 또는 제작비 등은 실적공사비비목으로 분류
- 1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해당 비목으로 분류하며, 세부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분류
 - * 세부내역에 해당비목으로 분류하기 곤란한 2가지이상 비목이 혼합된 단가는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분류
- 2개이상 비목 합계의 견적단가가 회계예규 68조 사항의 해당부분(G¹:토목부분, G²:건축부분, G³:기계부분)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분류하기 곤란한 기타공사의 견적단가는 주공사의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분류.

예) 건축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전기 또는 소방공사에 적용
된 견적가격은 건축공사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분류

○ 재료비 포함 상차도 또는 현장도착도 단가는 주재료비의
비목으로 분류

예) · 모래, 자갈, 쇠석, 기층재, 항만사석, 화강석 원석 → 광산품

· 견치돌 및 화강경계석 → 공산품(석제품)

· 가공 화강석(잔다듬, 물갈기, 버너 등 포함) → 공산품(석제품)

· 여러가지의 재료로 가공된 제품 → 공산품(레미콘, 아스콘 등)

- 원재료비가 포함되지 아니한 상차비 또는 운반비는 실적
공사비 비목으로 분류(구역화물 상하차비 및 운반비는 기
타비목 분류)

✚ 관련 규정 :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Q

3) 지수조정을 적용시 비목군 분류 중 기타비목(Z)으로 분류 하던 비목군의 재분류 기준은?

A

- ① 시설공사의 직접공사비는 재료비, 노무비, 산출경비로 구성되며, 재료비의 대부분은 공산품이 차지하므로 분류가 불분명한 재료비는 공산품(D)으로 분류한다.
- ② 장비는 국산 및 외산장비로 구분하며, 품셈에 없는 외산장비는 외산장비(B ")로 분류한다.
- ③ 잡재료비, 기구손료의 분류기준
 - 노무비, 경비등의 00%로 계상한 잡재료는 공산품(D)으로 분류
 - 노무비의 00%로 계상한 기구손료는 주재료비의 재료비 비목으로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재료가 없는 경우에는 공산품(D)으로 분류
- ④ 계측비는 분류 가능한 노무비, 재료비, 국산 및 외산장비 비목으로 분류한다.
- ⑤ 전력비와 천공시 노무비의 00%로 계상한 급수비는 전력, 수도, 도시가스 비목(E)으로 분류한다.
- ⑥ 실적공사비 단가가 아니거나 노무비·재료비가 혼재되어 비목구분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는 기타비목(Z)으로 분류

- 구역화물 상하차비 및 운반비, 보상비, 임대료, 사용료 등
- 시험 공인기관에서 발표한 수수료 성격의 시험비(함수량, 지내력시험, 견적가격의 재하시험, 견적가격의 철강재 비파괴 검사 등)
- 견적가격의 폐기물처리비, 한전불입금
- 잠정금액이 아닌 경우로서 일위대가·견적 등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1식의 전기공사, 1식의 상수도 이설공사 등)

❖ 관련 규정 :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 건설공사 표준품셈

Q

4) 순공사비중 비목군 분류가 곤란한 비목일 경우(제작설치비가 재료비에 있음)에 있어서 비목군 편성을 공산품(D)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비목(Z)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A

-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비목군 분류는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한국은행이 조사·공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 및 수입 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 ② 시설공사의 직접공사비는 재료비, 노무비, 산출경비로 구성되며, 재료비의 대부분은 공산품이 차지하므로, 분류가 불분명한 재료비는 공산품으로 분류함
 - 노무비, 경비등의 0%로 계상한 잡재료비는 공산품(D)으로 분류
 - 노무비의 0%로 계상한 기구손료는 주재료의 재료비 비목으로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재료가 없는 경우에는 공산품(D)으로 분류
- ③ 기타비목(Z)은 노무비, 재료비 등의 비목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함

❖ 관련 규정 :

- 회제 41301-927, '03. 08. 06

Q

5) 제경비성 비목(환경관리비, 기술사용료, 임대료, 정밀안전진단, 정기안전점검비)의 비목 적용 기준은?

A

① 재경부 유권해석과 같이 기타 비목군으로 분류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기타비목(Z)으로 분류한다.

▶ 제경비성 비목

- 환경보전비, 기술사용료, 임대료, 정밀안전진단비, 정기안전점검비

② 전회 E/S시 비목구분이 된 경우에는 금회 E/S시 비목구분은 전회 E/S와 같은 비목으로 분류한다.

- 비목군은 비목군 분류 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함
- 그러나, 전회 비목으로 분류한 항목이 P.S인 경우 등과 같이 명확한 오류로 적용대가 및 비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변경 가능함(계약서 등에서 PS항목 확인)

✚ 관련 규정 :

- 재경부 질의회신 '02. 12. 17

Q

6) 지수조정을 산출시 고용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국민 건강(연금)보험료 등 비목군 분류시 별도의 비목군 분류 가능여부

A

- ① 유권해석에 따라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비목군 분류시 고용, 건강, 연금보험료는 별도의 비목군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② 고용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 관련법령에 의거 발표된 평균요율 등을 지수화하여 적용하고, 당해 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이 없는 경우라면 공인된 기관에서 적용하는 원가계산시의 제비율 등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함.

<보험요율 적용기준>

- ▶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요율** : 조달청 발표 “원가계산 제비율표상의 요율” 적용
-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직전조정일 '09.2.12이전)
 - 조달청 공사원가 제비율적용(직전조정일 '09.2.12이후)
-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연금법(직전조정일 '09.2.12이전)
 - 조달청 공사원가 제비율적용(직전조정일 '09.2.12이후)

✚ 관련 규정 :

- 국책사업과-1187, '05. 05. 16, 회계제도과-1407, '04. 08. 24
- 회제 41301-877, '03. 07. 21, 회제 41301-101, '03. 02. 18

Q

7) 비목군분류시 기계경비로 분류하는 기준

A

- ① “비목군”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는 바,
- ② 계약체결시 계약담당공무원이 비목군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로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동 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비목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출내역서로 비목군을 편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하여 비목군을 편성할 수 있음.
- ③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비목군을 분류할 때에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등의 규정을 고려하여 분류하여야 할 것이나, 비목군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 공사원가의 구성비목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경비에 해당하는 전력비는 기타(Z)비목군이 아니고 전력 수도 및 도시가스(E) 비목군에 해당)
- ④ 당해 계약목적물인 경우로서 재료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의 품류에 따라 비목군을 분류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계약목적물이 아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라면 기계경비의 비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Q

8) 공사계약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불가능한지 여부

A

① 물가변동 조정시 비목군 분류는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인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를 기초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산출내역서에 대한 비목군 분류하여 작성하여야 함.

② 계약체결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대하여 비목군 분류 및 계수를 산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 1차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지수조정을 산출요령” 제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금액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비목군을 분류하여 물가변동 자료를 작성하되, 노무비에 대하여는 노무비의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물가변동 자료를 작성하여야 함.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2조,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6조에 의거 필요한 비목군 분류 및 계수 산출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이 가능

㉡ 조달청에 물가변동 조정요청시 첨부하는 물가변동 자료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송부한 것으로 간추하고 업무처리를 함

❖ 관련 규정 :

○ 회제 41301-556, '03. 05. 07

Q

9) 1회 물가변동을 자체검토하고 2회 물가변동을 검토시 관련 법규상에는 1회 물가변동시 확정된 비목은 고칠 수 없게 되어있으나, 조달청 검토시 비목수정에 관한 문의

A

① 조달청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을 위한 사전 검토과정에서 수요기관에서 분류한 비목을 조정하는 것은 최초에 분류 할 때의 착오사항을 바로 잡는 것으로서 계약 이행기간 중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품목이 발생되거나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한다는 규정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임.

❖ 관련 규정 :

- 출처 : 정부공사 원가계산 및 물가변동 조정 실무

다. 비목별 지수

Q

1)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 노무비(A)지수 산정 기준은?

A

① 노무비 지수는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공사의 경우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노임 단가의 평균치를 지수화 한 것을 사용한다.

- 공사의 경우에는 각 부문별 공사 (일반공사, 광·전자, 문화재 및 원자력 공사 등) 별로 당해공사 직종 전체의 노임 단가를 평균한다.

② 노무비 지수의 적용 시기는 대한건설협회가 시중노임을 조사·공표한 날을 기준으로 사용한다.

- 상·하반기 노임은 발표된 시점부터 적용(계약체결일 및 조정 기준일 동일함)

ex) 2002. 12. 17일 계약 체결한 공사일 경우

→ 노무비 지수적용 : 2002. 12. 17일 노임을 적용함

✚ 관련 규정 :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Q

2) 회계예규 개정(2007.04.10)에 따른 기계경비 지수 산정 기준

A

① 국산장비 적용지수

- 가.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당시 품셈상 국산 건설기계 가격의 평균치
- 나.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 국산 건설기계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상의 국산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만의 평균가격

② 외산장비 적용지수

- 가.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기계경비의 지수는 당시 품셈상의 외산 건설기계 가격의 평균치
- 나.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 외산 건설기계 합계액(신설된 품목은 제외)에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외산 건설기계에서 조정기준일 당시 국산 건설기계로 전환된 건설기계의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의 외화표시 가격에 조정기준일 당시 연도초 환율(다만,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이 연도초 환율과 3%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는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합계액을 더한 후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상의 기종수로 나누어 산정된 평균가격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의 물가변동 개정내용('07.4.10)

- ① 개정 전 규정 (조정기준일이 '06.12.31 이전인 경우)
 - 국산 및 외산장비로 구분하여, 입찰일 시점과 물가변동 시점의 품셈상 건설기계 가격의 평균치 로 산정
- ② 개정 규정
 - 입찰일이 '07. 01. 01 이후인 경우
 - "건설기계 가격의 평균치" 대신에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를 적용하여 기계경비 지수를 산정
 - 입찰일이 '06. 12. 31 이전으로 예정 조정기준일이 '07. 01. 01 이후인 경우
 - 국산장비 적용지수는 입찰일과 동일(변동 없음)
 - 외산장비 적용지수는 입찰일의 외산장비가격 평균치에 입찰일과 조정기준일의 환율 변동분을 감안하여 산정
- ③ 개정규정 단서조항
 - '07년 표준품셈으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물가변동을 신청하고 개정된 규정으로 검토결과 조정율이 3%미만으로 반송되어 재신청 할 경우에는 '07.1.1 부터 반송일 사이의 기성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지 않음

✚ 관련 규정 :

-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Q

3) 외산 기계경비에 사용한 환율 적용기준이 2000년 1월부터 전신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A

- ① 기계경비에 사용한 환율적용은 기준시점일 또는 비교시점일이 속하는 연도초 최초로 은행이 고시하는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한다.
 - 단, 연도중 환율의 등락율이 $\pm 3\%$ 이상인 경우는 기준시점 또는 비교시점일의 환율을 적용함

② 적용 연도에 따른 조정기준일의 적용 환율(최초계약일 기준)

구 분	적 용 환 율
○ 1999년 12월 31일 이전	○ 외환은행 “전신환매도율” 적용
○ 2000년 1월 2일 부터	○ 금융결제원 “기준환율” 적용

③ 적용 시점이 공휴일로 환율이 없는 날의 경우

- 익일(다음날)의 환율을 적용(회제 41301-3324, '98.10.26)
- ex) 2004. 01. 10이 일요일인 경우 → 2004. 01. 11(월요일) 환율 적용

<신규품목 발생시 환율 적용 기준>

- ▶ 최초 계약시 적용한 환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 최초 계약이 1999년 이전 → 전신환 매도율 적용
- 최초 계약이 2000년 이후 → 기준환율 적용

❖ 관련 규정 :

- 원가계산 작성준칙 제36조
-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건설기계경비 산정”
- 회계통칙 “회제 41301-165, '00. 01. 22”
- 회계통칙 “회제 41301-177, '98. 01. 23”

Q

4) 조정기준일의 도래시점에 따른 외산 기계경비의 환율 산정 방법

A

① 외산 기계경비에 사용한 환율적용은 기준(비교) 시점에 속하는 연도초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함.(단, 연도중에 환율이 $\pm 3\%$ (5%)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일의 환율 적용)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에 정한 지수조정을 방식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경우에 비교시점과 기준시점의 가격지수는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인 바,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0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이 연도초 환율과 3%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을 곱하여 외산장비가격을 산출하였다면 직전조정일의 외산장비가격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정기준일 도래시점 시점	2005년 12월 31일 이전	2006년 1월 1일 이후	비고
입찰일 (직전조정기준일)	5%	3%	
조정기준일	5%	3%	

❖ 관련 규정 :

- 회계제도과-525, '06.3.9

Q

5) 조정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 환율 적용은?

- 익일 또는 직전일

A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다음날) 환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예시)

2005년 5월 1일이 공휴일(일요일)인 경우
⇒ 환율적용은 익일(월요일) 5월 2일의 환율 적용함

❖ 관련 규정 :

- 회계제도과-39, 2004. 01. 09
- 회계 41301-3324, '98. 10. 26

Q

6) 지수조정을 산출시 재료비인 생산자 물가지수(광산품, 공산품, 전력수도 및 가스, 농림수산물)의 산정방법은?

A

①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한 “월간물가” 생산자 물가 기본분류 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광산품(C), 공산품(D),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E), 농림수산물(F)의 지수를 사용한다.

② 조정기준일이 2003년 12월 26 이후의 경우

- 발표 시점과 관계없이 “월중인 경우에는 전월지수를,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월 지수”를 적용한다.

ex) 직전일 2002. 08. 14, 비교일 2003. 12. 30인 경우 →

생산자 물가지수 : 2002년 7월 지수와 2003년 11월 지수 적용

③ 조정기준일이 2003년 12월 26 이전의 경우

- 생산자 물가 지수 적용은 “발표일 기준”으로 적용함

ex) 직전일 2002. 8. 14, 비교일 2003. 11. 31인 경우

→ 생산자 물가지수 : 2002년 7월('02. 08. 06 발표) 지수와 2003년 11월('03. 11. 06 발표) 지수 적용

✚ 관련 규정 :

-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 회계제도과-386, '04. 03. 19
- 회계제도과-289, '04. 03. 05

Q

7) 지수조정을 산출시 실적공사비 지수의 산정방법은?

A

- ① '04. 3. 8일부터 발표한 국토부 실적공사비가 비목군 분류 작성을 위한 기준자료에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분류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 G^2 , G^3)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1.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실적공사비지수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2. 물가변동시점의 실적공사비지수는 조정기준일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에 해당하는 실적공사비단가만의 전체 평균치

❖ 관련 규정 :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Q

8) 회계예규 개정(2007.10.12)으로 인한 실적공사비 지수 산정 방법

A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 G^2 , G^3)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1.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실적공사비지수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2. 물가변동시점의 실적공사비지수는 조정기준일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에 해당하는 실적공사비단가만의 전체 평균치

② 단, 건축부문 실적공사비(G^2)의 전체평균치 산정시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표한 실적공사비 공종 중 타워크레인 운반비(8ton, 10ton, 12ton)와 타워크레인 임대료(8ton, 10ton, 12ton)는 발표된 실적단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단위를 보정하여 산정한 단가를 반영

1. 타워크레인 운반비는 대당 단가를 규격별 권상(卷上)능력으로 나누어 톤당 단가로 반영
2. 타워크레인 임대료는 월당 단가를 25일로 나누어 일당 단가로 반영

✚ 관련 규정 :

-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Q

9) 물가변동 조정에 있어 2회 물가변동 기준시점의 지수적용 방법은?

A

- ① 장기계속공사일 경우 2회 물가변동 적용시점의 지수 적용은 1회 물가변동 조정시에 적용한 조정기준일 지수를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② 다만, 1회분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지수가 명확히 틀린 경우에는 수정하여 적용한다.

✚ 관련 규정 :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회계제도과-386, '04. 03. 19

Q

10) 각 비목군 지수 산정시에 적용하는 산재보험료(H), 산업 안전보건관리비(I), 고용보험료(J), 퇴직공제부금비(K) 적용요율 기준은?

A

- ① 각 비목군 지수는 발표된 요율 등을 지수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② 당해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이 없는 경우라면 공인된 기관에서 적용하는 원가계산시 제비율을 적용함이 가능함

<요율 적용기준>

구 분	적용요율 기준
산재보험요율(H)	○ 노동부 발표요율 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I)	○ 노동부 발표요율 적용
고용보험요율(J) 건설퇴직공제부금비(K)	○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 요율 : 별첨 참조

▼ 관련 규정 :

- 회제 41301-877, '03. 07. 21

Q

11) 산재보험료(H) 지수 산정 기준은?

A

① 건설공사의 산재보험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총공사 금액중 노무비(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모두 포함)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재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지수산식

- $H_0 = A_0 \times$ 입찰일 당시의 산재보험요율

- $H_1 = A_1 \times$ 조정기준일 당시의 산재보험요율

* H_0 : 입찰일 당시의 산재보험료지수

* H_1 : 조정기준일 당시의 산재보험료지수

* A_0 : 입찰일 당시의 노무비지수

* A_1 : 조정기준일 당시의 노무비지수

- 산재보험료지수 변동율 = $\frac{H_1}{H_0}$

- 조정기준일 당시의 산재보험료계수 = $h \times \frac{H_1}{H_0}$

* h : 입찰일 당시의 산재보험료계수(지수산출요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h 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순공사비에서 산재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

❖ 관련 규정 :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Q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I) 지수 산정 기준은?

A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노동부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광산품, 공산품, 전력·수도·및도시가스, 농림수산물)의 합계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지수산식 :

○ 기준시점(계약체결일 당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수(I0)
= 계약체결일 당시의 직접노무비, 재료비, 실적공사비 계수의 합계 × 계약체결일 당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a' + c + d + e + f + g¹ + g² + g³) × 계약체결일 당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a', c, d, e, f, g¹, g², g³ : 계약체결일 당시의 직접노무비, 재료비, 실적공사비 비목에 대한 계수

○ 비교시점(조정기준일 당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수(I1)
= 조정기준일 당시의 직접노무비, 재료비, 실적공사비 계수의 합계 × 조정기준일 당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a'×A)÷A0} + (c'×C1÷C0) + (d'×D1÷D0) + (e'×E1÷E0)
+ (f'×F1÷F0) + (g¹×G¹1÷G¹0) + (g²×G²1÷G²0) + (g³×G³1÷G³0)
× 조정기준일 당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 비율

* a', c', d', e', f', g¹', g²', g³' : 계약체결일 당시의 직접노무비, 재료비, 실적공사비 비목에 대한 계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수 변동율 = $\frac{I}{O}$

- 조정기준일 당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수 = $i \times \frac{I}{O}$

❖ 관련 규정 :

-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Q

13) 고용보험료 지수(J) 산정 기준은?

A

① 고용보험료는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원가계산시 적용하는 “년도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제잡비율)”중 고용보험요율에 노무비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지수산식

○ 기준시점의 고용보험료 지수(J0) = 기준시점 당시의 노무비 지수(A0) × 기준시점 당시의 고용보험료율

○ 비교시점의 고용보험료 지수(J1) = 비교시점 당시의 노무비 지수(A1) × 비교시점 당시의 고용보험료율

* J₀ : 입찰일 당시의 고용보험료지수

* J₁ : 조정기준일 당시의 고용보험료지수

* A₀ : 입찰일 당시의 노무비지수

* A₁ : 조정기준일 당시의 노무비지수

- 고용보험료지수 변동율 = $\frac{A}{J_0}$

- 조정기준일 당시의 고용보험료계수 = $j \times \frac{A}{J_0}$

* j : 입찰일 당시의 고용보험료계수

✚ 관련 규정 :

○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Q

14) 퇴직공제부금비(K) 지수 산정 기준은?

A

① 퇴직공제부금비요율은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원가계산시 적용하는 “년도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제잡비율)”중 퇴직공제부금비요율에 노무비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지수산식

○ 기준시점의 퇴직공제부금비 지수(K0) = 기준시점 당시의 직접노무비 지수 (A0) × 기준시점 당시의 퇴직공제부금비요율

○ 비교시점의 퇴직공제부금비 지수(K1) = 비교시점 당시의 직접노무비 지수 (A1) × 비교시점 당시의 퇴직공제부금비요율

* K₀ : 입찰일 당시의 퇴직공제부금비지수

* K₁ : 조정기준일 당시의 퇴직공제부금비지수

* A₀ : 입찰일 당시의 노무비지수

* A₁ : 조정기준일 당시의 노무비지수

- 퇴직공제부금비지수 변동율 = K_1/K_0

- 조정기준일 당시의 퇴직공제부금비계수 = $k \times K_1/K_0$

* k : 입찰일 당시의 퇴직공제부금비계수

▼ 관련 규정 :

○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Q

15) 국민건강보험료(L) 지수 산정 기준은?

A

① 총 공사금액 중 직접노무비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동요율이 없는 경우라면 공인된 기관에서 적용하는 원
가계산시의 체비율)을 곱하여 산정

② 지수산식

○ 기준시점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수(L0) = 기준시점 당시의
직접노무비 지수 (A0) × 기준시점 당시의 국민건강보험요율

○ 비교시점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수(L1) = 비교시점 당시의
직접노무비 지수 (A1) × 비교시점 당시의 국민건강보험요율

* L₀ : 입찰일 당시의 국민건강보험료지수

* L₁ : 조정기준일 당시의 국민건강보험료지수

* A₀ : 입찰일 당시의 노무비지수

* A₁ : 조정기준일 당시의 노무비지수

- 국민건강보험료 변동율 = L₁/L₀

- 조정기준일 당시의 국민건강보험료 계수 = 1×L₁/L₀

* 1 : 입찰일 당시의 국민건강보험료 계수

✚ 관련 규정 :

○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Q

16) 국민연금보험료(M) 지수 산정 기준은?

A

① 총 공사금액 중 직접노무비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동요율이 없는 경우라면 공인된 기관에서 적용하는 원
가계산시의 체비율)을 곱하여 산정

② 지수산식

○ 기준시점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수(M0) = 기준시점 당시의
직접노무비 지수 (A0) × 기준시점 당시의 국민연금보험요율

○ 비교시점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수(M1) = 비교시점 당시의
직접노무비 지수 (A1) × 비교시점 당시의 국민연금보험요율

* M₀ : 입찰일 당시의 국민연금보험지수

* M₁ : 조정기준일 당시의 국민연금보험지수

* A₀ : 입찰일 당시의 노무비지수

* A₁ : 조정기준일 당시의 노무비지수

- 국민연금보험료 변동율 = M1/M0

- 조정기준일 당시의 국민연금보험료 계수 = m×M1/M0

* m : 입찰일 당시의 국민연금보험계수

❖ 관련 규정 :

○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Q

17) 물가변동 조정검토에 있어 지수조정을 산출시에 공사손해보험료의 적용 여부는?

A

- ① 물가변동 지수조정율(k) 산출시 적용비목군은 순공사비(재료비+노무+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공사손해보험료의 적용은 제외해야 한다.
- ②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에는 공사손해보험료는 포함하여야 한다.

✚ 관련 규정 :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Q

18) 기타비목군(Z) 계상시 비목군수의 산정기준은?

A

① 기타비목군수는 노무비(A), 광산품(C), 공산품(D),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E), 농림수산물(F), 실적공사비(G1, G2, G3) 비목군으로 구성된다.

② 비목군수의 산정은 물가변동 조정을 산출표상에서 비목군의 계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목군 개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 관련 규정 :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Q

1) 품목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 조정계산 방법?

A

① 조정계산 방법

- 물가변동적용대가를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별 가격의 “등락율”을 산출
- 등락율을 계약단가에 곱하여 “등락폭”을 산출
- 등락폭에 수량을 곱한 총액을 물가변동 적용대가로 나누어 “품목조정율”을 산출
-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약시 적용율로 반영, 집계
- 집계한 품목조정율이 3% 이상이면 그 등락폭을 “계약금액 증감액”으로 산정
- 예정가격에 대한 계약금액내용의 낙찰율을 반영
- 선급이 있으면 선급 지급율로 차감 지급

② 조정산식

- 등락율 = (물가변동 당시 조사가격 - 입찰일 당시 조사가격) ÷ 입찰일 당시 조사가격

-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율)
- 품목조정율 = $\frac{\text{각품목또는비목별수량} \times \text{등락폭의합계액}}{\text{총계약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
- 계약금액 증감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 × (품목조정율)

※ 계산편의를 위한 산식

- ▶ 변동율 = 물가변동시 산정가격 ÷ 입찰일당시 산정가격
- ▶ 조정단가 = 계약단가 × 변동율

③ 용어의 정의

- 계약단가 :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상의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
- 물가변동당시 가격 : 물가변동시에 조사하여 산정한 가격
(조사가격)
- 입찰일 당시 가격 : 입찰일 당시에 조사하여 산정한 가격
(조사가격)

▼ 관련 규정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4조

Q

2) 계약금액 조정 방법이 품목조정율인 경우 입찰일 당시 가격을 견적가격으로 산정한 경우에 있어 물가변동 당시의 가격 산정 방법은?

A

- ① 각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한 물가변동 당시의 가격과 입찰일 당시의 가격을 비교하여 산정함
- ② 물가변동 당시의 가격 산정은 입찰일 당시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
 - 입찰일 당시의 견적가격에 의해 결정된 경우에 물가변동 가격도 견적에 의하여 산정
- ③ 입찰일 당시 견적서 제출 업체가 폐업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당초 견적업체가 당해공사를 시공하여 견적 가격을 신뢰할 수 없을 경우는 그와 유사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가격의 적정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적용함

✚ 관련 규정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 법무심사팀-452, '04. 09. 24

Q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을 품목조정율로 하면서 입찰일 당시 가격을 견적가격으로 산정한 경우, 물가변동의 등락을 산정은 당초 견적서를 제출한 동일업체의 견적가격으로 비교, 산정하여야 하는지

A

- ① 등락을 산정은 각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한 물가변동당시의 가격과 입찰일 당시의 가격을 산정한 때의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함
- ② 입찰일 당시의 가격이 견적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에 물가변동당시 가격도 견적에 의하여 산정함
- ③ 만약, 동업체가 폐업 등의 사유로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당초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당해 공사를 시공하여 견적가격을 신뢰할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을 것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를 하여 고가로 견적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Q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을 품목조정율로 할 경우 시중노임단가 적용 기준은?

A

① 통계법 제3조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시중 노임단가 적용

- 건설공사 노임 : 대한건설협회
- 제조부문 노임 :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 기술용역 노임 : 해당 주무관서에서 고시 또는 지정단체에서 발표

② 시중노임 적용 기준

-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유사직종의 시중노임단가 준용.
- 조사공표한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년도(시기)에는 전후년도(시기)의 당해직종 시중노임단가에 그간의 전체 평균 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
- 노임적용시점 : 조사기관이 조사, 공표(발표)한 날
- '94년 이전에 적용한 정부노임단가에 대한 등락율

적용산식: $\frac{\text{물가변동후시중노임}}{\text{정부노임적용시시중노임}} \times \text{정부노임 적용시 계약단가}$

특 레 : (변동후 시중노임) < (계약시 시중노임 또는 직전 조정시 시중노임)인 경우 등락율은 "1"로 함.

✚ 관련 규정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 회계45101-45, '95. 01. 13

Q

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을 품목조정율로 할 경우 등락폭 산정 기준은?

A

① 등락폭 산정

- 물가변동 당시 조사가격 > 계약단가 > 입찰일 당시 조사가격
- 등락폭 = (물가변동 당시 조사가격) - (계약단가)
- 계약단가 > 물가변동 당시 조사가격 > 입찰일 당시 조사가격
- 등락폭 = 0으로 한다.
- 계약단가 ≤ 입찰일 당시 조사가격 < 물가변동 당시 조사가격
-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 (계약단가 + 등락폭) ≤ 물가변동당시 조사가격
※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조사가격-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조사가격

② 승율비용의 등락폭

-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이른바 승율비용의 등락폭은 당해 비목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다만,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는 적용 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등락폭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품목조정을 산정예제

구분	입찰단시 조사가격	계약단가	물가변동 당시조사가격	등락율	등락폭	조정 단가
예)A..	2,000원	1,800원	2,200원	10.0%	180원	1,980원
예)B..	3,000원	3,300원	3,400원	-	100원	3,400원
예)C..	2,000원	2,500원	2,300원	-	-	2,500원
예)D..	500원	400원	450원	-10.0%	-40원	360원
예)E..	1,000원	1,100원	900원	-10.0%	-110원	990원
예)F..	4,100	4,100	4,900	-	800원	4,900원
예)G..	4,040	4,040	3,690	-	-350원	3,690원

✚ 관련 규정 :

- 회제 45107-518, '96. 03. 19, 회제 125-1823, '91. 07. 24

Q

1) 2005년도 발표된 용역노임의 2004년도 발표된 노임에 대한 물가변동에 따른 등락율 산정

A

- ① 감리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 적용하는 감리원의 1일 노임단가는 2004년도 발표노임의 경우에는 실근무일수와 관계없이 25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2005년도 발표노임은 실근무일수를 감안하여 1일 노임단가를 산정하여 관련협회에서 발표.
- ② 2005년도 발표된 노임에는 실질적이 노임상승과 관계없이 조사방법 변경에 따른 부분이 추가 반영됨에 따라 물가변동을 또한 추가 상승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05년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등락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③ '04년과 '05년 1개월 노임단가
- '04년 1개월 노임단가 =
발표된 '04년 1일 노임단가 × (25일 + '05년 평균근무일수) ÷ 2
 - '05년 1개월 노임단가 =
발표된 '05년 1일 노임단가 × '05년 평균근무일수
- ※ '05년 평균근무일수는 해당용역별로 노임단가를 발표한 조사기관의 자료를 활용

④ 등락율(A) 산정

$$\text{- 등락율(A)} = \frac{\text{'05년1개월노임단가} - \text{'04년1개월노임단가}}{\text{'04년1개월노임단가}} \times 100$$

⑤ 감리원의 2005년도 평균 근무일수 = 23.45일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의 2005년도 평균근무일수 = 23.78일

⑥ 계약체결당시가격과 물가변동당시가격 산식

○ 계약체결당시가격 = { 발표된 '05년 1일 노임단가 / (A+1) } × 계약단가의 1개월 일수

○ 물가변동당시가격 = 발표된 '05년 1일 노임단가 × 계약단가의 1개월 일수

* 계약체결당시와 물가변동당시의 1개월 일수는 동일해야 함.

⑦ 계약체결당시가격과 물가변동당시가격은 동일한 기준, 방법 등에 따라 비교하여야 함

❖ 관련 규정 :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3항
- 회계제도과-1226, 2005. 06. 17
- 기획8500-5391, 2005. 06. 21(한국건설감리협회)
- 회계제도과-1603, 2005. 08. 01

Q

2) 2006년 기준 감리원 노임단가 산정 기준

A

① '06년도에 적용할 감리용역의 1일 노임 단가가 '05년도에 발표한 동용역의 1일 노임단가와 동일한 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되었다면, 동 1일 노임단가에 의하여 등락을 산정

② 1개월 노임단가 = 1일 노임단가 × 근무일수(22일, 25일)

- 기준시점(2005년) : 177,385원 × 22일 = 3,902,470원

- 비교시점(2006년) : 188,754원 × 22일 = 4,152,588원

③ 등락을 산정

$$= (4,152,588 - 3,902,470) / 3,902,470 = 6.4\%$$

❖ 관련 규정 :

○ 회계제도과-659, 2006. 03. 24

Q

1) 특정규격 자재의 범위는?

A

① 특정규격자재란?

-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규격이 있는** 모든 자재를 말함.
- 산출내역서 만으로 재료비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의 기초자료(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등)를 계약체결시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단가로 함.

② 예를 들어,

- ‘이형철근’의 경우 D 10, D 13, D 16 등 규격이 있는 자재별로 각각 단품슬라이딩을 할 수 있음. 이형철근을 모두 묶어 단품슬라이딩을 하는 것은 아님.

✚ 관련 규정 :

- 단품슬라이딩제도 운영기준 관련자료(Q&A), 회계제도과 '08.04

Q

2) 단품슬라이딩 제도의 취지는?

A

① 특정 자재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였으나, 아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하 “총액ES*”)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 ES : Escalation

② 특정자재를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하도급자들(계약상대자가 당해 자재를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이 기존 계약금액으로 계약이행을 하기가 곤란하여 총액ES 전에 특정자재에 대해서만 가격상승분을 보정해주는 제도

✚ 관련 규정 :

○ 단품슬라이딩제도 운영기준 관련자료(Q&A), 회계제도과 '08.04

Q

3) 단품슬라이딩도 90일 조건이 충족되는 날이 조정기준일이 되는 것인지 여부

A

□ 단품슬라이딩도 총액ES와 마찬가지로 ① 계약일 이후 90일 경과하고 ② 특정규격자재 가격이 입찰일(직전 조정기준일) 대비 15% 이상 변동하는 두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날이 조정기준일이 됨.

- 따라서, 조정기준일은 임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음.
- 시행령 제64조제1항에서 총액ES는 계약일 후 90일 경과(기간요건), 입찰일 기준 3%이상 변동시(조정률요건) 조정하도록 규정
 - 시행령 제64조제6항에서 “제1항 각호에도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 각호”는 조정률요건을 의미하므로, 기간요건은 동일하게 적용

✚ 관련 규정 :

- 단품슬라이딩제도 운영기준 관련자료(Q&A), 회계제도와 '08.04

Q

4) 단품슬라이딩 후 총액슬라이딩시 90일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

A

단품슬라이딩 후 총액슬라이딩까지에 대해서는 90일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조정이 가능함.

✚ 관련 규정 :

- 단품슬라이딩제도 운영기준 관련자료(Q&A), 회계제도과 '08.04

Q

5) 감액 단품슬라이딩이 된 경우의 처리방법은?

A

□ 단품슬라이딩으로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하게 되면, 총액ES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에 단품가격상승률이나 단품지수를 합산하여 3%이상이 되는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함.

❖ 관련 규정 :

○ 단품슬라이딩제도 운영기준 관련자료(Q&A), 회계제도과 '08.04

Q

6) 단품슬라이딩의 방법은?

A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 중 품목조정률 조정방법에 해당하는 조항의 내용을 준용하여 처리함.

-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방법, 선급공제, 계약상대자의 청구 후 30일 이내 계약금액조정 등도 모두 준용됨.

✚ 관련 규정 :

- 단품슬라이딩제도 운영기준 관련자료(Q&A), 회계제도과 '08.04

Q

7) 단품 ES시 90일 이내 조정가능 여부.

- 공 사 명 : ○○○조성사업
- 공사기간 : 5개월
- 총액입찰

상기 공사의 사급자재인 강관파일이 공사비 기준 2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재가격이 설계시점 대비 2배정도 상승되어 이로 인한 업체의 손실이 큼니다. 단품슬라이딩 운영기준에 의하면 총액ES와 마찬가지로 계약일 이후 90일경과, 특정자재의 가격이 입찰일 대비 15%이상 변동하는 두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바, 당 현장의 실정으로는 90일 이후에는 해당자재의 반입 및 시공이 이루어져야 공기내에 목적물을 완성 시킬수 있어 단품 ES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74조 5항의 “제1항의 규정을 ~생략~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생략~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를 적용시킬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일을)을 기준일로 하여 산출된 물가변동 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조 제 5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동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 관련 규정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 1호

Q

8) 단품 슬라이딩시 선급공제 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 의한 단품슬라이딩 조정시 선급공제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3에 의하면 단품슬라이딩은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에 따르면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급이 있는 경우 공제액 산출식에 따라 선급 지급분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는 단품슬라이딩의 경우에도 일반 물가변동 조정시와 동일하게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급이 있는 경우 선급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며, 이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

국가가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이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보다 100분의 15이상 증감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품슬라이딩의 경우에도 일반 물가변동 조정시와 동일하게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급이 있는 경우 선급공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련 규정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

Q

9) 단품ES와 총액ES 동시 발생시 처리방법 문의

당 현장의 최종 총액ES 조정기준일은 '08년 5월 1일이며, '08년 7월 31일(91일 경과)을 기준으로 총액ES(약4.03%)와 일부 자재(철근 등)의 단품ES 충족요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단품의 가격상승율을 공제한 총액ES 또한 상승률 3.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단품ES와 총액ES의 조정기준일이 같을 경우 단품ES와 단품의 가격상승률을 공제한 총액ES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요?

A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이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보다 100분의 15이상 증감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단품슬라이딩은 총액ES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며, 하도급계약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총액ES를 우선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관련 규정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

Q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감액(D/S)조정 시 조정기준일 이후에 지급받은 기성대가 공제를 해야 하는지?

A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감액(D/S) 조정 시 당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한다.

② 물가변동으로 인한 감액(D/S) 조정 시 물가변동 조정 통보일에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를 지급한 경우에는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 관련 규정 :

-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Q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감액(D/S)조정 시 선급 공제 여부?

A

물가변동으로 인한 감액(D/S) 조정 시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 받은 선급이 있다하더라도 공제하지 않음.

❖ 관련 규정 :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

Q

3) 특정자재에 대한 물가변동 증·감액 조정 방법

A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이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보다 100분의 15이상 증감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자재라함은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규격이 있는 자재를 말합니다.

✚ 관련 규정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

Q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감액조정시 발주처 담당 계약
공무원은 관련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여야하는지?

A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 또는 제6항 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되,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의 감액조정 금액이 원가계산기관 위탁수수료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 관련 규정 :

- 회계예규 2200.04-159-10, 2009.5.8 제70조 제5항

Q

5) 총액감액조정과 단품감액조정이 동시발생?

A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총액감액조정과 단품감액조정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액감액조정을 우선 적용한다.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직전 계약금액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을 한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단품감액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함으로써 총액증액조정의 등락요건이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조기에 충족되어 추가적인 계약금액조정이 예상되는 경우 동 단품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직전 계약금액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요건과 총액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하여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관련 규정 :

- 회계예규 2200.04-159-10, 2009.5.8 제70조 제5항

Q

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증액과 감액을 비교하면?

A

구분	물가변동 증액(E/S)	물가변동 감액(D/S)
관련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74조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 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좌동 단,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3항은 해당없음
신청주체	계약상대자	발주자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기준일 (기성대가 공제)	신청일 (계약상대자 → 발주기관)	통보일 (발주기관 → 계약상대자)
선급 공제	조정기준일 이전 지급받은 선급 공제	선급공제 없음

✚ 관련 규정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등

세계 최고의 공공부문 물적자원 조달·관리 전문기관

제Ⅳ편 인터넷 질의회신



Public Procurement Service



IV. 질의응답

1 일반사항

제 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에 대하여		
문서번호	법무 41301-55485	회신일자	2004. 06. 09
질의내용	계약금액 조정기산일이 조정기준일부터인지 조정신청일부터인지 여부		
회신내용	<p>정부투자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령 및 발주기관의 자체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p> <p>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60일) 이상 경과(동 조 제5항의 경우는 60일 이내도 가능) 하고, 품목조정을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5)이상 증감된 때(조정기준일)가능한 것으로 이때 물가변동 적용대상은 조정신청일이 아닌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될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p>		
관련법규 및 법무질의회신	법무 41301-55485		

제 목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방법이 서로 다르게 명기되어 있는 경우의 해석		
문서번호	법무 41301-55310	회신일자	2004. 04. 16
질의내용	<p>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이 설계설명서에는 “지수조정을”로 공사계약특수조건에는 “품목조정을”로 서로 다르게 명기되어 있는 경우 계약문서 해석의 우선순위는</p>		
회신내용	<p>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하는 품목조정을 또는 지수조정을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인 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에서 정한 시방서,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문서는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설계설명서가 동일반조건 제3조에서 정한 시방서에 해당된다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이 계약문서간 서로 상충되므로 계약당사자가간 다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p>		
관련법규 및 법무질의회신	법무41301-55310		

제 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문서번호	법무심사탐-613	회신일자	2004. 10. 13
질의내용	<p>발주처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법적 사항이나 이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사항이므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다고 하는 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는지 - 발주처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의 조정의무가 있는지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결정이 발주처의 예산 유·무와 관련이 있는지 		
회신내용	<p>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 하는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6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물가변동조정율(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5) 이상 증감이 있는 때에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바, 동 규정은 조정요건이 충족되어 계약상대자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동법 시행규칙 동조제 9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나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p>		

제 목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질의		
문서번호	법무 41301-55347	회신일자	2004. 04. 27
질의내용	<p>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설계변경분에 대하여 기준지수 적용일자를 당초계약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변경일로 해야 하는지</p>		
회신내용	<p>국가기관이 아닌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p> <p>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에서 규정하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지수조정율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대하여 입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을 기준시점으로, 조정기준일을 비교시점으로 하여 지수를 비교·산출하여야 하나,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신규비목이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추가된 경우 동 신규비목에 대한 지수조정율의 산출은 설계변경당시와 조정기준일 당시의 지수를 비교·산출하여 합산하는 것입니다.</p>		
관련법규 및 법무질의회신	<p>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및 동시행규칙 제 74조 법무 41301-55347</p>		

제 목	경유세율과 물가변동의 계약조정 우선순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문서번호	법무 41097	회신일자	2007.10.24
질의내용	<p>경유세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후 물가변동 산출시 경유세율에 대한 증액분을 반영하는 의견하고, 물가변동을 실시하고 추후에 경유세율을 반영해도 무방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우선순위가 없이 계약조정이 가능하다면 2007년에 발생한 물가변동(경유세율 미공제)은 계약조정후 준공한 뒤, 2008년에 경유세율을 반영할 경우 2007년도 준공분에 대해서는 미공제한 경유세율만큼 물가변동액으로 선수령하게됩니다.</p>		
회신내용	<p>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물가변동적용 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 된 공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p> <p>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교통세법 시행령 시행(대통령령 제18941호, 대통령령 제19581호)에 따른 건설기계의 경유세율 인상분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은 ‘시행일(2005년 7월 8일 또는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분’ 중, ‘동시행령 시행 이후(시행일을 포함한다)에 이행될 부분’(공사공정예정표 등에 의해 산출)에 투입되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소요되는 경유량에 ‘인상된 경유세율에 해당하는 금액(57.21원/ℓ 또는 47.7원/ℓ)을 각각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증액금액(당초 경유대금 제외)은 산출내역서상 이윤다음(부가가치세 전) 비목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p> <p>이 경우에도 준공대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p>		

제 목	물가변동시 계약 기준일에 관한 질의		
문서번호	법무 41301-55507	회신일자	2004. 06. 15
질의내용	<p>일괄입찰방법에 따라 Fast-Track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Fast-Track부분에 대한 최초 계약체결일과 전체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확정하여 전체공사의 산출내역서를 대체하는 수정 계약체결일 중 어느 계약체결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야 하는지</p>		
회신내용	<p>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일괄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에서 공사의 시급성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7조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된 실시설계서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고 총공사의 산출내역서와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동법 시행령 제8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60일)이상 경과(제64조 제5항의 경우에는 90일(60일)이내에도 가능)하고 품목조정을 또는 지수조정이 100분의 3(5)이상 증감되는 두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날을 조정기준일로 하여 동법 시행령 제8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된 총공사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p>		
관련법규 및 법무질의회신	<p>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제87조 법무41301-55507</p>		

제 목	미설계부분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여부		
문서번호	회계제도과-2405	회신일자	2006.10.27
질의내용	<p>당사가 국가기관과 계약하여 시공중인 00발주(발주방법 : 설계기공일괄입찰, 계약금액 : 100억원 이상, 공사기간 : 1년이상(장기계속공사)) “000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미설계부분에 대한 물가변동의 신청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1) 입찰일 : 2004.9.7</p> <p>2) fast track 계약일 : 2005.5.19(7,219,000,000원) 총공사부기금액 : 151,975,000,000원</p> <p>3) 실시설계 1차분 제출일 : 2005.8.24(74,333,270,000원) 산출내역서 제출 총계약금액 : 81,552,270,000원</p> <p>4) 2차년도 계약일 : 2005.11.9(24,583,000,000원)</p> <p>5) 실시설계 2차분 설계중지통보일 : 2005.11.9 중단된 실시설계 잔액 : 70,422,730,000원</p> <p>질의 1. 이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1항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1차 계약 체결시 부기한 총공사금액으로 조정하게 한 바, 당 현장의 경우 발주자의 지시로 중단된 잔여분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방법은?</p> <p>질의 2. 설계시공일괄입찰에서 fast track으로 계약한 경우 실시설계 중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관계법규에 의거 물가변동 조정의 구비요건이 충족되어 조정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물가변동에 대한 조정방법은?</p>		

<p style="text-align: center;">회신내용</p>	<p>국가기관이 실시설계-시공병행방식(fast-track)에 의한 일괄입찰공사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6항 및 제7항에 정한 바와 같이 낙찰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총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와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우선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모두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총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 적격통지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총공사의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도록 하여야 하는 바, 동 실시설계-시공병행방식에 의한 일괄입찰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동시행령 제87조제7항에 따라 대체되어 최종 확정된 총공사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총공사에 대한 최종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총공사의 산출내역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p> <p>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최종 실시설계서가 완료되지 않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없고, 또한 계약상대자가 귀책없이 조정신청을 못함으로 인해 차수준공대가를 수령한 부분에 대하여 개산금 지급이 불가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가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하여 동 준공대가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별도의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p>
<p>관련법규 및 법무질의회신</p>	<p>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 법무41301-55520</p>

제 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일부 비목을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문서번호	법무 41301-55449	회신일자	2004. 05. 28
질의내용	<p><질의 1> 터키공사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설계비, 공사손해보험료 및 미술장식품 등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p> <p><질의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후 발주기관의 예산 미확보로 계약금액 조정이 어려울 경우 향후 예산 확보 후 추가 조정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후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p> <p><질의 3> 1차 물가변동 조정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합의서에 1차 증감액을 명시한 후 2차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p>		
회신내용	<p><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계약금액 조정시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을 제외하지 않는 것이며,</p>		

<p>회신내용</p>	<p><귀 질의 2에 대하여></p> <p>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후 예산이 확보 되지 않았거나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량 등을 조정하거나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합의서가 조정기한을 연장하는 합의서인 경우에는 동 합의서 내용대로 동 예산이 확보된 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귀 질의 3에 대하여></p> <p>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은 1, 2차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나, 계약금액 조정은 1차 계약이 체결된 후 2차 조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므로 1차 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작성한 후 2차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p>
<p>관련법규 및 법무질의회신</p>	<p>법무 41301-55449</p>

제 목	준공후 물가변동제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문서번호	법무 41301-55550	회신일자	2004. 06. 17
질의내용	<p>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서류를 접수하고(1차 및 2차분을 동시에 접수), 이를 공사감독관(시공관리를 담당하는 외부감리원)에게 검토의뢰 하였던 바, 공사감독관은 1, 2차분을 동시에 계약금액 조정함이 곤란하고 물가변동 조정방법이 명시되지 않았음을 사유로 들어 “1차 계약금액조정 후에 2차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보완”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송하였음.</p> <p>그 후 계약상대자가 1차 물가변동분에 대하여는 보완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을 완료하였으나, 준공전까지 계약상대자로부터 2차 물가변동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정신청 서류를 접수한 바 없었음.</p> <p>그러나, 준공후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계약상대자가 2차 물가변동분의 조정보고서를 첨부하여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하여 왔는 바, 이 경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p>		
회신내용	<p>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준공대가 지급신청 전까지</p>		

<p>회신내용</p>	<p>한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요건(기간, 조정율)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첨부된 서류의 일부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나, 조정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한 신청으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공사계약체결시 계약금액 조정방법(품목 조정율, 지수조정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조정방법을 선택하여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유효한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당초 1차분 조정신청과 동시에 제출한 2차분 조정신청은 그 효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 지급신청 전까지 유효한 2차분 조정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준공대가 지급 이후에는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p>
<p>관련법규 및 법무질의회신</p>	<p>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4조 법무 41301-55550</p>

제 목	준공후 물가변동 적용에 대하여		
문서번호	법무심사팀-78	회신일자	2004. 08. 20
질의내용	<p>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준공일 이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발주기관에 1, 2차 동시에 신청하였으나, 조정신청 당시 공사감독관이 계약금액 조정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점과, 1차와 2차를 동시에 조정함이 곤란하다는 사유를 들어 1차 계약금액조정 후 2차 계약금액을 조정하라고 통보하였음.</p> <p>그 후 조정방법을 지수조정율로 하여 1차 조정신청분에 대하여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되었으나, 2차 조정신청분은 계약금액조정을 하지 않은 채 준공되었음.</p> <p>이 경우 당초 1, 2차 동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고,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조정신청에 대해 충족요건 불충분의 사유로 신청서류를 반려한 적이 없으며, 1차분에 대하여 지수조정율에 의해 계약금액 조정을 한 바 있으므로 2차 조정신청분에 대하여도 지수조정율로 하여 유효하게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는지?</p>		

<p>회신내용</p>	<p>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요건(기간, 조정율)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제반서류를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p> <p>첨부된 서류가 단순히 일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나, 조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한 신청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1차 및 2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동시에 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우선적으로 1차 신청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2차 계약금액 조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1차 신청과 동시에 한 2차분 물가변동 조정신청이 유효하게 제출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증빙자료가 준공대가 지급신청 전까지 첨부되었는지 여부와 조정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p>
<p>관련법규 및 법무질의회신</p>	<p>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4조 법무심사팀-78</p>

제 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		
문서번호	법무심사탐-574	회신일자	2004. 10. 08
질의내용	<p>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후에 기성대가를 지급받았으나 조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당초 신청서류는 반려되고, 기 지급받은 기성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하고 재신청하라는 조치가 절차적으로 타당한 것인지</p>		
회신내용	<p>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일”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기준일 등 동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잘못 적용하여 신청서류가 반려된 경우에는 조정신청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고, 반려된 당초 조정신청일 이후에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후 새로운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라면 동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지만, 기성대가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2의 규정에 따라 개산급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계약금액 조정신청일의 인정이나 조정절차 등의 사실관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p>		
관련법규 및 법무질의회신	법무심사탐-574		

제 목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재조정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법무 41301-55299	회신일자	2004. 04. 13
질의내용	<p>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지수조정율을 잘못 산출, 적용한 것을 변경계약 이후에 발견한 경우 올바른 지수조정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재산정 할 수 있는지의 여부</p>		
회신내용	<p>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면서 회계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지수조정율을 잘못 산출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올바른 지수조정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p>		
관련법규 및 법무질의회신	<p>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4조 법무41301-55299</p>		

제 목	물가변동 기,미성내역 산정시 설계비 누락		
문서번호	법무-40943	회신일자	2007. 10. 18
질의내용	<p>본공사는 대안입찰공사(아파트건설공사)로 발주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물가변동(E/S) 기,미성 내역 산정 시 설계비 항목이 누락이 되어 내역서 상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본공사 계약시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이 되어 발주자는 설계자와 시공자 양자와 계약을 맺은 상황이므로 실제 설계비는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됨. 이 경우 총액입찰인 대안입찰공사에서 내역서 상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설계비를 0원으로 처리하여 물가변동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지 또는 설계비를 계상하여 공사금액 조정 후 설계비를 기성량으로 산정하여 처리해야 하는지</p>		
회신내용	<p>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 지방공기업등)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대안입찰이 채택되어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동 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있어서는 설계와 시공을 계약상대자가 책임지는 것이며,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작성, 제출한 동 부분에 대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계서의 변경없이 설계도면상의 수량보다 산출내역서의 수량이 과다 또는 과소하게 계상되었거나 일부 비목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여야 합니다.]</p> <p>만약, 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대한 설계비를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시킨 경우에는 동 설계비에 대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한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내역서(산출내역서)에 있는 각 비목 및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동 계약내역서에 없는 비목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p>		

2

물가변동 적용대가

제 목	퇴직공제부금을 공사공정예정표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관련 질의		
문서번호	회계제도과-1158	회신일자	2007.6.19
질의내용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에 있어, 퇴직공제부금을 공사공정예정표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적용대가 산정방법		
회신내용	<p>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총공사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을 의미하므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p> <p>귀 질의의 경우과 같이 퇴직공제부금이 공사공정예정표상 보다 적게 납부된 경우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총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p>		
관련법규 및 법무질의회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제 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이 되는 공사공정예정표		
문서번호	법무 41301-55624	회신일자	2004. 07. 27
질의내용	<p>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 변경된 경우 계약 금액 조정기준은 당초 계약시의 공사공정예정표인지 아니면 설계변경계약 당시에 첨부된 수정공사공정예정표인지?</p>		
회신내용	<p>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상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이나, 공사이행 중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이 있었고 동 설계변경에 따른 수정공사공정예정표가 작성 제출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되었다면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동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p>		
관련법규 및 법무질의회신	법무 41301-55624		

제 목	경유세 조정후 물가변동시 기성공제 관련		
문서번호	회계제도과-1744	회신일자	2006.8.11
질의내용	<p>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경유물량에 대한 인상분 공제방법</p>		
회신내용	<p>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후 재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분과 중복계상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종 조정금액 산출시 적용되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된 경유물량에 대한 인상분을 공제토록 하고 있는 바,</p> <p>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최종 조정금액 산출시 동 기성대가 지급부분을 제외하여야 하므로, 상기 경유물량에 대한 인상분 공제시에도 동 기성대가 지급부분을 제외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된 인상분을 공제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p>		
관련법규 및 법무질의회신	법무심사팀-574		

제 목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기준		
문서번호	법무심사탐-585	회신일자	2004. 10. 11
질의내용	<p>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출함에 있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전체공사와 차수별 공사중 어느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지 2. 공사공정예정표상의 공정율과 실행율이 다를 경우 적용 공정은 3. 조정신청서 접수후 신청서를 반려한 경우 조정신청 일자는 		
회신내용	<p>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계약상(공사공정예정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로서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1차계약 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공사공정예정표의 공정율과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p>		

<p>회신내용</p>	<p>또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일”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계약금액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인 바,</p> <p>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기준일 등 동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잘못 적용하여 신청서류가 반려된 경우에는 조정신청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고, 반려된 당초 조정신청일 이후에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후 새로운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라면 동 기성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지만, 기성대가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개산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계약금액 조정신청일의 인정이나 조정절차 등의 사실관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 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p>
<p>관련법규 및 법무질의회신</p>	<p>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4조 법무심사탐-585</p>

제 목	연부액 배정에 따른 물가변동 적용기준		
문서번호	법무심사팀-1007	회신일자	2004. 11. 16
질의내용	<p>계속비예산으로 총공사와 년차별 공사에 대한 연부액을 명시하고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연부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연부액을 초과하여 기성대가를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와 변경된 연부액에 따라 공사공정예정표를 수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받은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p>		
회신내용	<p>국가기관이 계속비예산으로 총공사와 연부액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서에 명기된 연부액을 변경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연부액에 따라 공사 착공시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수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고 당해연도의 연부액 범위내에서 계약을 이행하고 기성대가를 지급받아야 할 것이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6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물가변동조정율이 3%(5%)이상 증감된 날을 조정기준일로 하여 수정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해당되는 대가로 산출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p>		
관련법규 및 법무질의회신	<p>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69조 제5항 법무심사팀-1007</p>		

제 목	물가변동 적용대가 질의		
문서번호	법무심사팀-1306	회신일자	2004. 12. 10
질의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관과 체결한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3차년도까지 예산배정누계액은 전체계약금액 대비 36.17%에 해당되나, 공사공정예정표상 3차년도까지 공정율은 전체공정율 대비 65.07%로 되어 있는 바, 배정된 예산에 맞추어 전체 공사공정예정표를 수정할 수 있는지? 2.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현재의 공사공정예정표상 공정율이 조정기준일 당시까지 배정된 예산배정누계액을 초과하고 있는 바, 총공사금액에 대한 공정율에 맞추어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3. 공사공정예정표를 조정기준일 이후에 수정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p>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중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계약상대자가 공사공정예정표를 작성·제출함에 있어서나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공사공정예정표를 승인함에 있어서는 배정예산, 계약금액 및 각 차수별로 이행하여야 할 시공부분 등을 고려하여 이에 부합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p>		

<p>회신내용</p>	<p>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에 대한 공정예정표를 말함)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p> <p>다만, 공사이행 중 조정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의 공사공정예정표가 변경된 경우에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을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 및 당초 공사공정예정표의 제출·승인사항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p>
<p>관련법규 및 법무질의회신</p>	<p>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 법무심사탐-1306</p>

제 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문서번호	법무 41301-1372	회신일자	2004. 12. 15
질의내용	<p>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산출내역서 및 공사공정예정표가 승인된 경우 (계약방법 : 협상 + 턴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체결 : '01.6.30, - 사업착수통보 : '02.3.29, - 산출내역서 및 공정표 승인 : '04.5.24 / 5.27 <p>(특수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2,845억원중 공사설치비 407억원만을 대상으로 ES 조정 - 물가변동 기준일은 “사업착수통고일”로 함 <p>○ 이 경우, 계약체결 시점이 아닌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지수조정율을 산출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p>		
회신내용	<p>귀 질의가 민간투자사업인 경우라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등 관련법령 및 당사자간의 협약내용에 따라 처리될 사항입니다.</p> <p>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6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물가변동조정율(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입찰일로부터 100분의 3(5) 이상 증감이 있는 때 (이를 “조정기준일”이라 함)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이 가능하며,</p>		

<p>회신내용</p>	<p>이때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이나, 계약상대자가 당초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의 공정율과 다르게 시공하고자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내용, 계약조건,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p>
<p>관련법규 및 법무질의회신</p>	<p>법무41301-13726</p>

제 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문서번호	법무심사팀-1463	회신일자	2004. 12. 22
질의내용	<p>일괄입찰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공정(진입도로)이 발주처의 사유로 용지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착수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이 경우 지연된 공정이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완료되어어야 할 부분인 경우 공정표의 수정여부와 관계없이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p>* 1차('03.9) 및 2차 공기연장('04.4)으로 공사공정예정표 수정</p> <p>* 조정기준일('04.9.30)</p>		
회신내용	<p>국가기관이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에 대한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공사이행중 조정기준일 이전에 공사기간 연장등으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공사공정예정표를 수정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p>		

<p>회신내용</p>	<p>이때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나,</p> <p>다만,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발주처의 용지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일부 공정이 지연된 경우 반드시 조정기준일전에 발주처의 공사공정예정표의 변경승인이 있어야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로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p>
<p>관련법규 및 법무질의회신</p>	<p>법무심사탐-1463</p>

제 목	동절기 공사중지시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문서번호	법무 41301-55093	회신일자	2004. 02. 04
질의내용	<p>설계변경 및 동절기공사중지등의 내용은 조정기준일전에 문서로 이루어지고 공사기간의 변경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변경계약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의 기준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설 : 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 및 공사중지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도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은 계약금액조정 신청 전에 제출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을설 :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이행지체의 사유가 계약상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여 산정하거나 공사공정예정표를 수정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임 		
회신내용	<p>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바,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물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내용이 반영되어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p>		

<p>회신내용</p>	<p>2. 그리고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p>
<p>관련법규 및 법무질의회신</p>	<p>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 법무 41301-55093</p>

제 목	일괄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에서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문서번호	법무 41301-55403	회신일자	2004. 05. 14
질의내용	<p>일괄입찰방법에 따라 Fast-Track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Fast-Track부분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Fast-Track부분을 제외한 잔여공사는 설계 및 설계심의 등으로 약 1년후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수정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Fast-Track부분에 대한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60일)이상 경과하고 물가변동조정율이 3%(5%)이상 증감하는 날을 물가변동 조정기준일로 하여 전체공사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하는지, 아니면 Fast-Track부분에 대한 계약과 Fast-Track부분을 제외한 잔여공사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상 경과하고 물가변동조정율이 5%이상 증감하는 날을 물가변동 조정기준일로 하여 각각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금액을 산출하는지</p>		
회신내용	<p>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일괄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에서 공사의 시급성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7조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된 실시설계서를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고 총공사 및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p>		

<p>회신내용</p>	<p>동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동법 시행령 제8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60일)이상 경과(제64조 제5항의 경우에는 90일(60일)이내에도 가능)하고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5)이상 증감되는 두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날을 조정기준일로 하여 동법 시행령 제8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된 총공사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p>
<p>관련법규 및 법무질의회신</p>	<p>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제87조 법무 41301-55403</p>

제 목	조정신청일 지급받은 기성대가의 물가변동적용대가 포함관련 질의		
문서번호	회계제도과-2831	회신일자	2006.12.19
질의내용	<p>조정신청일 지급받은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되어야하는지</p>		
회신내용	<p>국가기관에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대가는 조정금액 산출 시 제외되는 것이나,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계약금액조정 신청일에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동 대가를 조정금액 산출시 제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봅니다.</p>		
관련법규 및 법무질의회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4조		

제 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변경시 차수 준공대가 공제에 대한 질의		
문서번호	법무 41301-55531	회신일자	2004. 06. 23
질의내용	<p>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준공기한이 경과한 후에 하였고, 물가변동 조정신청일 이후에 3차 공사의 준공대가가 입금된 경우, 3차공사의 준공대가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의 여부</p>		
회신내용	<p>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p> <p>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청은 조정요건을 증명하는 조정내역등을 첨부하여 준공대가지급 신청 전까지 하여야 하며, 동 일자 전에 계약금액조정요청이 있었다면 준공이후에도 조정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60일)이상 경과(동조 제5항의 경우에는 90일(60일)이내에도 가능)하고 동시에 물가변동 조정율이 3%(5%)이상 증감된 날을 조정기준일로 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해당되는 대가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p>		

<p>회신내용</p>	<p>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동 대가는 조정금액산출시 제외(품목 또는 지수조정을 산출 시에는 포함)되는 것이나,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 지급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p>
<p>관련법규 및 법무질의회신</p>	<p>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법무 41301-55531</p>

제 목	PS단가 금액의 ESC 적용 여부
질의내용	<p>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국도우회도로건설과 관련입니다. 상기공사의 ESC 적용에 따른 공사금액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문의 사항이 있어 질의 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질문 1 -</p> <p>ESC 적용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중 P.S 단가로된 공종은 ESC 상승률(K값) 산출시 제외하여 산출하고, 조정금액 산출시에도 제외하여야 하는지 K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p> $K = (a \frac{A}{A_0} + b \frac{B}{B_0} + c \frac{C}{C_0} + d \frac{D}{D_0} + e \frac{E}{E_0} + f \frac{F}{F_0} + g \frac{G}{G_0} + h \frac{H}{H_0} + i \frac{I}{I_0} + j \frac{J}{J_0} + \dots + z \frac{Z}{Z_0}) - 1$ <p>단, $z = 1 - (a+b+c+d+e+f+g+h \dots)$</p> <p>상기 산출식의 적용에 있어서 p.s 단가로 된 공종을 포함하는지 여부</p> <p>“갑”설 : P.S 단가 공사는 ESC 조정금액 산출시 제외됨으로 K산출시 P.S 단가로된 공종의 공사금액은 조정기준일 이후 시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하고 K값을 산출하여야 된다. 즉 상기식 $z = 1 - (a+b+c+d+e+f+g+h \dots)$ 중에서 비목군 비중의 합인 1값은 P.S 단가로된 공종은 제외되는 것임.</p> <p>“을”설 : P.S 단가 공사는 ESC 조정금액 산출시 제외되지만, K값 산출시에는 P.S 단가로된 공종이라도 조정기준일 이후 시행될 부분이라면 물가 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여 K값을 산출한다. 즉 상기식 $z = 1 - (a+b+c+d+e+f+g+h \dots)$ 중에서 비목군 비중의 합인 1값은 P.S 단가로된 공종이 포함되는 것임</p>

<p>질의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2 - 1식 단가로 발주된 공종을 시공중에 P.S 단가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예. 사후환경영향관리비, 안전점검, 기술료등) - 질문 3 - 상기 “질문2”의 1식 단가공종을 P.S 단가로 변경할 수 없을 경우 물가연동에 대하여 1식단가로 구성된 공종(사후환경영향관리비, 안전점검, 기술료등)을 ESC적용대상에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질문4 - 공사보험료는 입찰당시 투찰 단가로 도급액이 확정되어 있으나 투찰금액과 실보험가입 금액과의 차이가 있을 경우 실투입된 보험금액으로 정산해야 되는지 여부
<p>회신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계약체결시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중 일부 비목에 대하여는 당해 비목의 특성상 대가지급시를 기준으로 하여 실비를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계약당사자간에 특약을 정하여 운용하였다면 동 비목에 대하여는 대가지급 당시의 가격으로 지급을 받는 것이므로 물가변동적용대가 및 조정금액등의 산정시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2. 질의 2, 3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은 동법시행령 제 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며 발주기관 임의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3. 질의 4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집행요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정산을 요구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제 목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시 퇴직공제부금비 관련		
문서번호	법무 41216	회신일자	2007.10.29
질의내용	<p>당공사는 대안입찰공사로서 000와 2005년 12월 26일 계약하였으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지수조정율입니다. 물가변동과 관련하여 감리단과 이견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p> <p>[갑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퇴직공제부금비, 안전점검비 등 정산항목은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시(물가변동 조정을 산출로 이해하고 있음)에는 제외할 수 없으나, 물가변동 조정금액 산출시에는 정산항목을 공제한 후 조정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p> <p>예) 물가변동금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 - 정산항목) X K치 정산항목금액은 조정기준일 이후 금액 포함</p> <p>[을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물가변동 적용대가 뿐만 아니라 물가변동 조정금액 산출시에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점검비 등 정산항목을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한다.</p> <p>예) 물가변동금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 X K치</p>		
회신내용	<p>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p> <p>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대가 산출은 산출내역서 전체비목을 대상으로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퇴직공제부금비 등에 대한 금액을 조정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p>		

제 목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기준에 대한 질의		
문서번호	법무 41301-55438	회신일자	2004. 05. 25
질의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전에 기성금을 개산급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기성대가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지? 2.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조정기준일 당시 실행공정율이 예정공정율보다 높은 경우에 실행공정율과 예정공정율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회신내용	<p><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함에 있어 계약금액조정 신청 전에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동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이나,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기성대가는 제외하지 않는 것입니다.</p> <p><귀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할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며, 계약상대자가 공사공정예정표의 공정율과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p>		
관련법규 및 법무질의회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제64조 법무 41301-55438		

3

개산급

제 목	개산급에 관한 질의		
문서번호	법무심사팀-927	회신일자	2005. 03. 22
질의내용	<p>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조정기준일과 물가변동조정 신청일 사이에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할 경우 개산급에 의한 기성대가임을 들어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고자 할 때 필요한 첨부자료</p>		
회신내용	<p>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시행 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 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가 동 규정에 의하여 개산급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3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 하여 첨부 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 신청서에 개산급신청사유와 구체적 요건을 명시하여 계약 담당공무원이 동 신청이 개산급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p>		

<p>회신내용</p>	<p>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 (기간 및 조정율 등)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제반증빙 서류가 첨부된 기성대가신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개산급 신청사유와 지급요건을 검토하여 충족된 경우에는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이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기성대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개산급에 의한 기성대가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개산급 신청의 인정 및 지급 여부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관계규정, 제출된 개산급신청사유,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요건 해당자료 등 제반 제출자료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개산급 신청사유 및 입증자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서식이나 형식은 별도로 규정된 바 없으므로 개산급신청사유 및 지급요건이 충족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으면 족하다 할 것입니다.</p>
<p>관련법규 및 법무질의회신</p>	<p>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 2 법무심사팀-927</p>

제 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개산급 인정범위 및 비목군 분류)		
문서번호	회계제도과-1407	회신일자	2004. 08. 24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개산급 인정범위 및 비목군 분류)관련 질의자료		
회신내용	<p>1. 귀 질의 기술계획처-2639(2004.7.14)와 관련입니다.</p> <p>2.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금액조정신청 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확정급으로 기성대가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부분을 예상하지 않고 당초의 계약내용대로 이행을 완료하였기 때문에(즉,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부분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 기성대가는 조정금액 산출시 제외되는 것이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부분을 예상하여(즉, 포기하지 않고)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은 경우 동 기성대가는 조정금액 산출시 포함되는 것입니다.</p>		

<p>회신내용</p>	<p>참고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 금액보다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란 당초 산출내역서외의 추가물량 및 신규비목은 개산금으로 지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p> <p>3. 질의 “2”에 대하여</p> <p>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로서 회계예규 “지수조정율산출요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목군 분류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노무비의 변동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동 요율이 없는 경우라면 공인된 기관에서 적용하는 원가계산시의 제비율)에 의하여 자체적으로도 변동이 가능한 비목이므로 별도의 비목군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p>
<p>관련법규 및 법무질의회신</p>	<p>회계제도과-1407</p>

제 목	“개산급” 문의
질의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란 산출 내역서상의 총계약금액을 말하는지요? 2. 발주처 승인 완료사항으로, 기 계약단가에 수량만 증가할 경우, 산출 내역서상의 총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개산급이 가능한지요? 3. 제39조1항5조의 경우, 기성대가의 지급 시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로 지급이 가능한 걸로 규정되어 있는데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총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발주처의 승인이 있다면 개산급이 가능한지요? 4.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라 함은 설계변경전의 기성대가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발주처 지시 및 승인으로 인한 수량증가 및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 전 총계약금액 한도내에서 개산급이 가능한지요? 5. 주공 및 타 현장에서는 위 요건들에 대하여 개산급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p>회신내용</p>	<p>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 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의 변경이 예상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신청한 개산급 신청 사유서의 내용, 실제 공사 진행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원활한 공사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 변경계약 전에 기성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개산급입니다. 개산급은 당초 계약내용대로 공사가 수행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이므로 향후 예상되는 설계변경 등에 의한 신규비목 또는 수량 증가분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당초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로 기성금액을 산출하여 지급하고 사후 변경계약 후에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며, 단지 막연히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이 예상된다고 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하거나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p>
<p>관련법규 및 법무질의회신</p>	

4

지수조정율

제 목	실적공사비 발표 이원화에 따른 물가변동 적용 관련		
문서번호	법무 40490	회신일자	2007.10.2
질의내용	<p>조달청 홈페이지 정보장터/ 업무별 자료/ 시설공사 게시판 310번 게시물에 따르면, "2007.08.13지수"는 조정기준일 도래 시점이 2007.08.13~2007.08.19인 건에 한하여 적용되고, 조정기준일 도래 시점이 2007년 8월 20일 이후인 건들은 "2007.08.20지수"적용 으로 되어있습니다.</p> <p>2007.8.13 지수는 국토해양부 발표 "2007년 하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에 의해 결정되었고, 2007.8.20 지수는 국토해양부 발표 "2007년 하반기 항만 및 어항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 발표 "2007년 하반기 항만 및 어항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에 따르면 "이 단가는 항만 및 어항공사에 적용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정보장터의 업무별 자료 시설공사 게시판 310번 게시물에 의하면, 2007.8.20 이후에 조정기준일이 도래하는 모든 건설공사는 항만 및 어항공사가 아니더라도 물가변동 시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2007.8.20 지수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이 맞는지요?</p>		

<p style="text-align: center;">회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 8. 13일 기준으로 하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와 상반기 항만공사 실적공사비가 양존하므로 항만공사 실적공사비를 포함하여 “2007.8.13 지수”를 산정하고, ('07.8.13일 현재 지수산정은 '07.8.13일 현재 하반기 항만실적공사비는 발표되어 있지 않음으로 상반기 항만실적공사비 60품목의 단가를 그대로 적용. 즉, 신설 품목을 제외한 470개 품목에 대한 평균값으로 지수를 산정) ○ '07. 8. 20일 기준으로 하반기 건설공사 및 항만공사 실적공사비가 모두 발표되어 있으므로 “2007.8.20 지수”를 다시 산정 (현행 규정으로서 신설품목을 제외한 470개 품목에 대한 평균값으로 지수를 산정) ○ 기존의 상,하반기로 관리하였던 실적공사비 지수를 “2007.2.13 지수”, “2007.8.13 지수”, “2007.8.20 지수”로 발표일자 별로 산정 하므로 즉, 공사종류에 관계 없이 조정기준일이 2007.08.13~2007.08.19에 도래하는 건은 “2007.08.13 지수”적용하고, 조정기준일이 2007.08.20 이후인 건은 “2007.08.20지수”를 적용
<p>관련법규 및 법무질의회신</p>	<p>회계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p>

제 목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시 제경비 요율 적용 방법		
문서번호	법무심사탐-782	회신일자	2004. 10. 27
질의내용	<p>지수조정율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시점인 조정기준일은 조정요건이 최초로 성립된 날을 말하는지 아니면 발주처에 계약금액 조정요청 공문이 접수된 날인지 - 제경비(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지수(요율) 적용방법은 		
회신내용	<p>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기준일’이라 함은 최초 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6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5)이상 증감되는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신청일이 아닌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될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 제경비(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등)의 지수는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계약 체결시점(또는 직전 조정기준일)과 조정기준일시점의 지수를 각각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p>		
관련법규 및 법무질의회신	법무심사탐-782		

제 목	물가변동(5% 적용현장) 산출시 환율적용		
문서번호	법무심사팀-39044	회신일자	2007.8.7
질의내용	<p>물가연동시 환율 적용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기준시점 : 2004년6월29일 환율-1150.7(2004년 연초: 1194.3) 환율 변동율 : 3.65%</p> <p>위와 같을 경우 기준시점의 적용환율은 갑설 : 물가변동 5%적용현장이며 환율변동율이 5%가 안 되므로 연도초환율인 1194.3원을 적용해야함. 을설 : 환율을 물가변동과 달리 변동율이 3% 이상일경 우 해당시점의 환율인 1150.7원 을 적용해야함.</p>		
회신내용	<p>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 가격의 평균치는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2007.4.10 개정 부칙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합니다. (외산장비 적용지수)</p> <p>③(건설기계에 대한 등락율 및 지수변동을 산정관련 특례)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이하 “입찰일”이라 함)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으로서 예정조정기준일이 2007년 1월 1일 이후인 공사계약에 있어 건설기계에 대한 등락율 및 지수변동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p> <p>1. 품목조정을 나. 외산장비 : 물가변동시점의 외산장비가격은 입찰일시점의 품셈상 외산장비가격에 입찰일과 예정조정기준일 사이의 환율 변동분을 곱하여 산정</p> <p>2. 지수조정율에 의한 경우 나. 외산장비 : 물가변동시점의 외산장비지수는 입찰일시점의 전체 외산장비가격의 평균치에 입찰일시점의 환율과 예정조정기준일시점의 연도초 환율(다만,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이 연도초 환율과 3%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의 변동분을 곱하여 산정</p>		
관련법규 및 법무질의회신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문서번호	법무심사팀-1057	회신일자	2004. 11. 20
질의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목군 분류시 고용보험료 및 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기타비목군(Z) 으로 분류하여 지수산출을 하는 것인지 2. 기계경비 지수산정에 있어 표준품셈상의 기계경비(국산/외산) 평균 지수를 적용하는지, 설계시 계상(실제 투입)된 기계경비(국산/외산)의 평균가격을 적용하는지 3. 직전조정기준일 이후 비교시점일 사이에 설계변경(3회)을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시점의 도급내역을 기준으로 하는지 - 신규비목에 대한 등락을 산정의 기준시점은 		
회신내용	<p>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 비목군 분류 및 지수 산출은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제4항 및 회계예규 “지수조정을 산출요령”의 규정에 의하는 바,</p> <p><귀 질의 1)에 대하여></p> <p>동 예규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목군 분류시 고용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노무비의 변동뿐만 아니라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동 요율이 없는 경우라면 공인된 기관에서 적용하는 원가계산시의 제비율)에 의하여 자체적으로도 변동이 가능한 품목이므로 별도의 비목군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p>		

<p>회신내용</p>	<p><귀 질의 2)에 대하여></p> <p>기계경비의 지수는 동 예규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표준품셈(이하 “품셈”이라 함)상의 전체 건설기계장비의 평균가격(당해 공사에 투입된 건설기계경비의 가격에 대한 평균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바, 계약체결시 또는 직전조정기준일당시(이하 “계약체결시”라 함) 기계경비지수는 계약체결시 품셈상의 기계경비의 평균가격을, 물가변동시의 기계경비지수는 조정기준일당시 품셈상의 기계경비의 평균가격을 적용하는 것이며, 계약체결시 품셈에 없던(있던) 국·외산 기계장비가 조정기준일당시 품셈에 신설(삭제)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의 기중수(조정기준일당시의 기중수)를 기준으로 국·외산 기계장비의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계약체결시와 조정기준일당시는 동일한 기중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98.2.20전에 입찰공고를 하여 체결된 계약(국·외산 기계장비의 구분없이 기계장비의 평균가격을 산정)의 경우에도 상기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출합니다.</p> <p><귀 질의 3)에 대하여></p> <p>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였다면 조정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규비목등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단가를 산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등락율을 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p>
<p>관련법규 및 법무질의회신</p>	<p>법무심사탐-1057</p>

제 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질의		
문서번호	법무심사탐-173	회신일자	2004. 09. 01
질의내용	<p>용역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을 품목조정으로 하면서 계약체결당시가격을 견적가격으로 산정한 경우, 등락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초 견적서를 제출한 동일업체의 견적가격으로 비교, 산정하여야 하는지?</p>		
회신내용	<p>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품목조정에 의한 경우 등락율 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한 물가변동당시의 가격(단가)과 계약체결당시의 가격(단가)을 비교하여 산정하되,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이 견적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물가변동당시가격도 견적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체결당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로부터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비교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동 업체가 폐업 등의 사유로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p> <p>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견적가격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 고가로 견적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p>		
관련법규 및 법무질의회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 법무심사탐-452		

제 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단가결정방법 질의		
문서번호	법무심사팀-40863	회신일자	2007.10.16
질의내용	<p>당 현장은 턴키발주 공사 현장으로서 품목조정방법으로 esc를 하게 계약되어 있습니다.</p> <p>단가 결정방법에 있어 시공사와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리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p> <p>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계약체결시 산정가격과 물가변동시 산정가격은 같은 기준과 방법으로 하게 되어있는바, 당 현장은 계약시 물가정보지 4개중 최저가격인 정보지의 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 단가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예) 가격정보(100원), 물가정보(105원), 물가자료(108원), 거래가격(115원) 중 ---->가격정보(100원) 적용</p> <p>갑설) 조정기준일 당시 단가 산정 : 계약체결당시 적용한 기준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 4개 정보지중 최저가인 단가가 기재된 정보지의 가격 적용 예) 가격정보(103원), 물가정보(102원), 물가자료(110원), 거래가격(113원) 중 ---->물가정보(102원) 적용</p> <p>을설) 조정기준일 당시 단가 산정 : 계약체결당시 가격을 산정한 정보지의 가격을 적용 예) 가격정보(103원), 물가정보(102원), 물가자료(110원), 거래가격(113원) 중 ----> 당초 가격정보의 단가를 적용했으므로 최저가가 아니더라도 가격정보(103원) 적용</p>		

<p>회신내용</p>	<p>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 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p> <p>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품목조정율에 의한 방법으로 조정할 경우 각 품목에 대한 등락율<(물가변동 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물가변동 당시가격은 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바,</p> <p>만약, '4개의 물가지 가격을 조사한 후에 그중에서 가장 낮은 최저가격을 적용'한 것이 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한 기준과 방법이라면 물가변동당시가격의 경우도 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 적용한 기준과 방법과 같이 4개의 물가지(단, 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할 때와 동일한 물가지)의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조사한 후에 그중에서 가장 낮은 최저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p> <p>구체적인 계약의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의 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 적용한 그 기준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p>
<p>관련법규 및 법무질의회신</p>	<p>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p>

제 목	전면책임감리용역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질의
질의내용	<p>전면책임감리용역의 계약당시 물가변동금액조정방법(품목조정을 또는 지수조정을)을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하고자 할때</p> <p>갑설) 품목조정을이나 지수조정을 중 한가지만 조건이 충족되어도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다.</p> <p>을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품목조정을 및 지수조정을 2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가능하다.</p> <p>* 갑설과 을설 중 어느것이 타당한가요?</p>
회신내용	<p>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방법(품목조정을, 지수조정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품목조정을 또는 지수조정을 방법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한 바, 계약체결시에 동 방법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위와 같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p>

제 목	책임감리용역비의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조정시 지수조정을 적용 유·무
질의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00년 8월 계약된 책임감리용역비 대비 2002년 1월 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발표한 감리원 임금을 품목조정으로 계산시 3%(5%)이상 증가되어 계약금액 조정 여건이 충족됨 2. 질의내용 : 책임감리용역비가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성되어있어 이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품목조정과 지수조정을 중 어느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p>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조정요건에 적합한 물가변동요인이 있을 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동 물가변동조정방법은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계약체결시에 구체적인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조정방법을 합의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p>

제 목	감리용역 물가변동 조정을 산출방법 관련
질의내용	<p>◎ 개요</p> <p>○○○항만공사 책임감리용역과 관련하여 감리용역의 통상적인 물가변동적용은 품목조정을 취하고 있으나, 본 용역의 계약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회계예규(2200.04-104-7, '98. 8. 10) 제22조 ②항에 의거 물가변동조정 방법을 지수조정으로 명시하여 계약된 현황임.</p> <p>▷ 질의 : 상기 계약내용과 관련한 감리용역의 물가변동 적용방법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수조정을 품목조정으로 변경계약한 후 물가변동 적용 2) 계약서에 명시한 지수조정율로 적용함.(노무비 지수는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한 일반공사직종 또는 전체직종의 평균노임을 참고함) 3) 계약서에 명시한 지수조정율로 적용함.(노무비 지수는 감리협회에서 공표한 감리노임을 참고함) 4) 관련법상 적용방법이 곤란하므로 물가변동 조정이 안됨. 상기 질의사항에 대하여 회신바랍니다. 바쁘신 업무에 번거롭게하여 죄송합니다.
회신내용	<p>국가기관이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체결시 정한 계약금액조정 방식(품목조정을 또는 지수조정을)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p>

제 목	감리용역 물가변동 조정 계약금액 문의
질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용역 물가변동 조정 내역서 작성 중 물가변동 조정 계약금액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계약내용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약방법 : 장기계속공사 2. 계약금액 : 1,795,000,000원 3. 기준공금액 : 1차분(328,000,000)+2차분(80,000,000)+3차분(200,000,000)+4차분(131,000,000) = 739,000,000원 4. 잔여금액 : 1,056,000,000원 - 문의내용 : 물가변동 제외 계약금액은 물가변동 조정 기준일 이전에 계약이행을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인 바, 계약금액 산출시 단수조정을 위한 기술료 부분의 감액된 금액은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물가변동 제외 계약금액에 반영(1안)하여야 하는 지, 실준공금액만 물가변동 제외 계약금액으로 산정(2안)하여야 하는 지 첨부파일을 검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p>귀 질의에서 “계약금액 산출시 단수조정을 위한 기술료 부분의 감액된 금액”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가 불분명합니다.</p> <p>만약, 동 감액된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액)에서 제외된(계약내역서인 산출내역서에 없는) 금액이라면 당연히 동 금액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p> <p>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의 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총공사부기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인 바, 이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공정예정표(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등으로 수정된 경우에는 승인된 수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며, 이때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지연된 경우 동 지연된 부분은 제외하여야 하나,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그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동 지연된 부분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며, -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중에서 기 시공하여 물가변동조정신청전에 이미 지급받은 기성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준공되어 이미 지급된 차수계약의 준공대가를 포함)는 그 조정대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다만, 동 기성대가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개산급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포함되는 것입니다.
------	---

<p>제 목</p>	<p>감리용역비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p>
<p>질의내용</p>	<p>감리용역비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기술용역계약 제15조의 적용에는 시행령64조 및 시행규칙74조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감리용역비에 대한 조문이 없어 질의합니다. 감리용역비의 산출은 직접인건비와 상관해서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가 산출되므로 직접인건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74조의 계약금액조정요건에 충족되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경우에 제경비 및 기술료도 조정금액대상에 포함하여 등락을 적용이 가능한지?</p>
<p>회신내용</p>	<p>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4조의 규정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전체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한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5)이상 증감된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p>

제 목	감리용역 e/s(환산비)적용
질의내용	<p>1. 감리용역 계약체결 시 감리원수 산정은 임금에 대한 비율로써(환산비)을 적용하여 감리원수 산정 갑설) 당초 계약시 고급감리원 단가를 기준으로 했으므로 환산비는 기준시점 환산비만 적용하고 고급감리원 단가는 비교시점 단가를 적용함(고급감리원 변경 단가만 적용) 을설) 각 등급별 투입감리원을 환산한 배치기준(건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 국토부 고시,2001-263호)에 의거 계약금액이 산출되었으므로 계약된 고급감리원 인원수에 의거 등급별 감리원 투입계획이 승인되었으므로, 비교시점 당시의 환산비를 적용하여 감리원수를 산정함.</p> <p>2) 감리용역 계약 시 감리원수 산출시 환산비를 적용하여 감리원수를 산출하고 고급감리원 단가를 기준으로 감리비를 산출하는바,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각각에 대한 노임적용을 하면 복잡하므로 환산비를 적용하여 고급감리원 단가로 적용하는 경우와 환산비를 적용하지 않고 각각에 대한 노임을 적용하는 것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나 갑측에서는 환산비라는 항목은 없고 고급감리원 단가 적용이라는 항목때문에 환산비는 변동이 없다고 하는데 계약시에도 환산비를 적용하여 감리원수를 산출하였는데 e/s적용시에는 적용이 안되는지 회신 바랍니다.</p>
회신내용	<p>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품목조정율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는 바, 물가변동 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p>

제 목	<p align="center">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신청 이후 지급된 감리기성대가의 공제여부</p>
<p align="center">질의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구지하철 2호선 6감리단 전면책임감리용역 수행중 2002. 12. 31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이 발생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2003. 3. 21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하였음. 3. 이후 발주처로부터 검토 및 보완요구등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지연되어, 감리대가 기성신청(2003. 4/16, 6/9, 8/7)을 하여 기성대가를 지급받았음. 4. 현재 발주처에서 검토가 완료되어 물가변동 조정코자 하나, 물가 변동 조정신청이후 지급받은 기성대가의 공제여부에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 설 : 기성대가지급 신청 전에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한 경우이므로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 을 설 : 기성대가지급 지급신청전에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한 경우라도 감리용역비는 적용이 않되므로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 하여야 함.
<p align="center">회신내용</p>	<p>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원칙적으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되나, 먼저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한 이후에는 동 조정신청금액에 포함된 기성대가를 신청하여 수령하였다면 동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되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p>

제 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사항		
문서번호	법무 41301-55058	회신일자	2004. 01. 20
질의내용	<p>전면책임감리 용역에 있어서,</p> <p>① 신규 제정된 수입·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개산급 범위지정 근거가 없는 바, 동 예규 시행일 이후에도 개산급으로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및 지급할 수 있다면 그 범위는</p> <p>② 위 예규 시행일 이전에 개산급으로 기성금을 지급 받았다면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p> <p>③ 설계변경계약 이전에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한 경우 설계변경시 동 계약금액 조정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는지</p>		
회신내용	<p>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기술용역 계약은 지방재정법령 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와 같이 개산급 지급 조항이 없으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등을 참고하여 지급여부 및 지급할 경우의 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개산급으로 지급 받았다면 기술용역의 경우에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여야할 것입니다. 또한, 설계변경 이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동 변경계약 내용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p>		

제 목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질의		
문서번호	법무심사팀-23	회신일자	2004. 08. 05
질의내용	<p>건설사업관리용역(전면책임감리용역 포함)의 대가산정을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1-220호에 의한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여 용역비를 산정한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p>		
회신내용	<p>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p> <p>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60일)이상 경과(동조 제5항의 경우에는 90일(60일)이내에도 가능)하고 동시에 품목조정을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5)이상 증감되는 경우 가능하나, 당해 용역계약의 특성상 대가지급시를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여 용역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와 대가지급시의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용역대가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계약인 경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용역계약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용역계약의 계약조건,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p>		
관련법규 및 법무질의회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4조 법무심사팀-23		

제 목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질의		
문서번호	규제개혁법무-47710	회신일자	2008. 06. 04
질의내용	<p>단품ES 및 총액ES 동시충족시 당사는 2007-12-20일 계약된 현장으로써, 2008년 3월31일 기준으로 단품 및 총액ES가충족되는 것 같습니다. 내역상에 원자재급등에 의한 단품들이 많이 포함되어있어, 단품ES로 진행시 단품마다 15%상승분을 받는 금액이, 총액ES 3%로 받는 금액보다 크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질의1) ES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한것으로 아는데,발주처에 총액ES를 접수하지 않고, 단품ES만 접수시킬수 있는지요? 질의2) 단품ES접수, 승인 후 총액ES를 다시 접수시킬수 있는지요?</p>		
회신내용	<p>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이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보다 100분의 15이상 증감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단품슬라이딩은 총액ES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며, 하도급계약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총액ES를 우선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단품 후 총액까지에 대해서는 90일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여기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단품슬라이딩의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중 품목조정률 조정방법에 해당하는 조항의 내용을 준용하며, 중복 계상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p>		
관련법규 및 법무질의회신	규제개혁법무-47710		

제 목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질의		
문서번호	규제개혁법무-47699	회신일자	2008. 06. 04
질의내용	<p>단품슬라이딩 제도의 범위 단품슬라이딩제도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6항'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신설 2006.12.29>'는 규정에서 특정규격 자재의 범위는? 예)산출내역서상 재료비로 규정된 모든 규격의 비목을 범위에 포함하는지ss400철판 20t,30t,40t....</p>		
회신내용	<p>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이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보다 100분의 15이상 증감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3에 따라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후 동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동 집행기준 제70조의3의 2항에 의거 산출하여야 합니다.</p> <p>귀 질의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은 예를 들어 “철근의 규격별 가격”을 의미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p>		
관련법규 및 법무질의회신	규제개혁법무-47699		

제 목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질의		
문서번호	규제개혁법무-47536	회신일자	2008. 05. 29
질의내용	<p>총액ES와 단품슬라이딩 관련</p> <p>당 현장은 2008년 2월 29일 계약을 하여 금월말 이면 계약후 90일이 초과 됩니다.</p> <p>같은 날짜에 단품슬라이딩과 총액ES가 동시에 발생하면 어떤 것 을 해야 합니까?</p> <p>아직 하도급계약이 되지 않아 하도급 업체와의 관계는 없는 상태입니다.</p> <p>만약 단품슬라이딩을 하고 나중에 3%인상시점에 총액ES를 해도 되는지요?</p>		
회신내용	<p>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이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보다 100분의 15이상 증감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p> <p>귀 질의의 경우 단품슬라이딩은 총액ES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로서 총액ES와 단품슬라이딩이 동시에 충족될 때에는 총액ES를 우선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p>		
관련법규 및 법무질의회신	규제개혁법무-47536		

제 목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질의		
문서번호	규제개혁법무-49505	회신일자	2008. 07. 17
질의내용	<p>단품ES적용시 특정자재의 단가결정방법에 대하여 단품ES산출시 특정자재의 단가조사시 반드시 물가지(가격정보, 물가지료 등)에 의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거래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또한 실거래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인정받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질의합니다.</p>		
회신내용	<p>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이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보다 100분의 15이상 증감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 6항에 따라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자재에 대한 물가변동당시가격은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제74조제7항)</p> <p>즉,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한 가격(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등 당초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p> <p>참고로, 거래실례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한국물가정보센터,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이러한 가격자료에 대하여는 적용의 우선순위가 없는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이행기간, 수급상황 및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중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p>		
관련법규 및 법무질의회신	규제개혁법무-49505		

제 목	단품 D/S관련 질의사항입니다.		
문서번호	규제개혁-61604	회신일자	2009. 08. 14
질의내용	<p>1. '08년10월 수의계약으로 계약체결하여 공사 진행중이며, 발주처에서 철근 항목에 대해서 최근에 단품 D/S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철근 항목에 대한 도급기성이 70% 이상 완료된 상태에서 소급하여 단품 D/S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p> <p>2. 단품 D/S를 하게되면 어떤기준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물가정보나 물가자료등 조사단가를 기준으로 단품에 대한 변동율을 계산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p>		
회신내용	<p>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이 입찰일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보다 100분의 15이상 증감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p> <p>참고로, 특정자재에 대한 물가변동당시가격은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제74조제7항) 즉,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한 가격(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등 당초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p> <p>2. 이 경우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여야 합니다.</p>		
관련법규 및 법무질의회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및 동시행규칙 제 74조 규제개혁-61604		

제 목	단품감액조정 질의		
문서번호	규제개혁-61364	회신일자	2009. 08. 06
질의내용	단품감액 재료비 거래실례가격 결정 방법		
회신내용	<p>특정자재에 대한 물가변동당시가격은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제74조제7항) 즉,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한 가격(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 가격 또는 견적가격)등 당초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거래실례가격에 의한 경우 같은 자료집에 의한 가격으로 증감비율을 산출)</p>		
관련법규 및 법무질의회신	<p>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 74조 규제개혁-61364</p>		

제 목	단품 D/S 성립 요건 질의		
문서번호	규제개혁-60031	회신일자	2009. 06. 18
질의내용	<p>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관련입니다.</p> <p>제1항-계약체결일로 부터 90일 경과 제6항-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이 입찰일 대비 15% (증)감 단품D/S의 요건으로 제1항 및 제6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지 아니면, 제1항에서 정한 기간(90일)과 상관없이 제6항의 요건만을 충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p>		
회신내용	<p>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자재에 대한 단품 "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당해 자재에 대하여 감액조정을 할 수 있는 바, 이때, 반드시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액 감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p> <p>단품 "감액"조정요건은 계약체결일(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하여야 하고 동시에 입찰일(직전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율이 100분의 15 이상 감(-15%이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p>		
관련법규 및 법무질의회신	<p>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 74조 규제개혁-60031</p>		

제 목	공사중 발생하는 작업설부산물(고재) 품목의 단가조정 변경계약가능 여부?		
문서번호	규제개혁-61652	회신일자	2009. 08. 17
질의내용	<p>당공사는 '08년 8월 입찰로 수주하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공사중 발생하는 작업설부산물(고철)품목이 확정분 항목에 들어있으나, 당시 중국올림픽 특수로 고철 단가가 520원/kg로(물가자료 2008년6월 적용) 높게 산정되어 있으며, 계약금액은 총공사 금액에서 작업설부산물(고철) 금액을 감(-)하여 계약되어 있습니다. 다른 작업 공정(신설 등)은 진행중이나 고철이 발생하는 철거 작업은 현장 여건에 의해 아직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년말 수행 할 예정입니다. 다른 작업공정은 완료되어 설 변경계약을 추진 하여야 하나, 고철 단가가 현재 270원/kg 정도로(물가자료 2009년8월) 계약대비 현저히 낮아 변경계약시 작업설부산물(고철) 가격을 단품D/S를 적용하여 현재가격에 맞게 조정하여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p>		
회신내용	<p>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자재에 대한 단품 "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당해 자재에 대하여 감액조정을 할 수 있는 바, 이때 "감액"조정요건은 계약체결일(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상이 경과하여야 하고 동시에 입찰일(직전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율이 100분의 15 이상 감(-15%이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p> <p>이 경우 특정자재라함은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규격이 있는 자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철거공사등에서 부산물이나 작업설로 발생하는 고철 등을 산출내역서상 자재비로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부산물이나 작업설은 자재가 아니므로, 단품ES, DS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p>		
관련법규 및 법무질의회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64조 제6항 규제개혁-61652		

세계 최고의 공공부문 물적자원 조달·관리 전문기관

제 V 편 물가변동 관련 유권해석



Public Procurement Service



V. 물가변동 관련 유권해석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개요

계약체결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배제 특약의 가능여부
(회제41301-622, '03.5.21, 회제 45101-475, '93.5.31)

-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의무사항임. 따라서 계약당사자 간에 동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 등을 규정하는 것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2항)

- ☞ 동일한 계약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과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구체적인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으로 조정 함

물가변동 조정을 산정방법의 변경가능 여부(회제 41301-663, '97.3.20)

- ☞ 계약서에 명시된 조정을 산출방식은 계약이행도중에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으며, 물가변동 조정을 산출방식을 계약서 상에 명시하지 아니하였지만 1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율에 따라 하였다면 동 계약건의 물가변동 조정을 산출방식은 지수조정율이며 이를 변경할 수 없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시한(회계 2210-724, '92.10.30)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에 해당되어 준공대가 지급 신청 전에 계약금액조정 신청이 있었다면 준공대가 지급여부와는 무관하게 조정된 계약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회계 45107-1627, '95.9.1)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준공대가 지급신청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조정신청은 계약금액조정 요건 성립 여부등에 대한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제출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개산급시 준공이후 물가연동제 적용가능 여부(회계 45107-80, '95.1.20)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받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준공급 지급 신청 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함. 계약이행 중에 기성금을 개산급으로 지급받았다고 하여 준공급 지급 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일(회계 45107-51, '95.1.13)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일”이라 함은 계약금액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금액조정을 신청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인 바, 단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개산금으로 신청한 행위자체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물가변동 조정 신청서 접수시기(회계 45107-234, '95.2.28)

- ☞ 신청시점은 물가변동 신청서류를 처음으로 접수하는 기관에 제출된 때로 보아야 할 것임.

1차, 2차 물가변동 조정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계 41301-782, '98.4.28)

- ☞ 1차 및 2차 물가변동 조정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1차 신청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2차 계약금액조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물가변동 관련 계약금액조정 신청 여부
(회계제도과-681, '04.5.11, 회계41301-639, '03.5.26)

- ☞ 조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반려한 경우에는 유효한 신청으로 볼 수 없음.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을 구성원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회계 41301-686, '97.3.24)

- ☞ 공동도급계약(분담 이행방식)의 경우라 하여 구성원별로 구분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음.

책임감리 현장의 물가변동 신청서류 접수절차(회계 45107-2045, '96.9.5)

- ☞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 신청서에 동 요건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 바,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책임감리를 수행중인 현장의 경우에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서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우선적으로 접수하여야 할 것임.

(회계 45107-181, '97. 1. 20)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서류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책임감리현장의 경우에도 발주기관에 접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신청서를 감리지침 등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책임감리원에게 검토하게 할 수 있는 것임.

감리를 통해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한 경우 물가변동 신청일
(회계 41301-2209, '99.7.16)

-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한

계약금액조정신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한 계약금액조정신청서를 책임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책임감리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발주기관에 문서로 통보한 후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여 책임감리자로 하여금 조정내역서를 검토하도록 한 경우라면 책임감리자의 통보문서가 발주기관에 접수된 날을 물가변동 신청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연대보증 시공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회계 41301-3078, '97.11.8) (회계 41310-257, '98.2.5)

- ☞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시 기준시점은 계약체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임.

별건 계약시 물가변동의 기산점(회계 45107-2045, '95.10.27)

- ☞ 최초 계약자의 부도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 별건으로 체결된 때에는 계약 체결시 별도 조정한 특약이 없는 한 별건 계약체결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등락율을 산출 하여야 할 것임.

기간요건 산정 관련 회계통첩(회계 41301-2543, '98.8.26)

-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종전 60일) 이상 경과한 날의 의미
: 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종전 61일)이 되는 날부터를 의미함.

- 2) 직전 조정기준일 부터 90일(종전 60일) 이상 경과한 날의 의미
: 직전 조정기준일을 불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종전 61일)이 되는 날부터를 의미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정산
(회계제도과-39, '03.10.10)

- ☞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사유발생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해야 하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이후에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기 변경된 산출내역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내역을 반영.

전회 물가변동 금액에 대하여 변경계약이 안 된 경우 금회 물가변동 적용대
가에 전회 물가변동 금액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회제 41301-952, '03.08.22)

- ☞ 1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도 조정내역을 당사자 상호간에 합의한 경우라면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2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에 반영.

2개 공사현장을 1건 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물가변동
(회제 41301-526, '03.4.29)

- ☞ 2개 현장에서 시공되는 공사의 경우라도 1건의 공사로 계약체결된 경우라면 전체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것임.

물가하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대가

(회계 41301-3235, '98.10.19)

- ☞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산출하는 것인 바, 동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은 계약금액의 증액조정 및 감액조정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회계 41301-116, 1999.1.12)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감액 조정시 감액요건의 증명 및 조정내역서의 작성책임은 해당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있음.

2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기준(회계 41301-2098, '97.7.28)

- ☞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 및 산출내역서에 의거 산출함.

산출내역서, 공사공정예정표의 기준(회계 45107-2319, '95.11.8)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과 물가변동적용 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산출내역서 및 공사공정예정표가 조정기준일 이전에 발생된 공기연장,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것을 기준으로 조정율과 적용 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공사공정예정표와 실시행공정이 상이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방법
(회계 41301-237, '02.2.2, 회계 41301-743, '97.3.27)

-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금액을 의미하며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체결시 작성된 공사공정예정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사공정예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함.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지연된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
(회계 41301-986, '03.8.21)

- ☞ 공사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전에 수행되어야 할 부분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공정이 아닌 공사공정예정표에 의거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

발주처 책임으로 지연된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회계 41301-372, '03.4.3)

- ☞ 공사이행이 발주기관의 예산배정지연 등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 동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

장기계속공사의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회계 41301-766, '98.4.28)

- ☞ 장기계속공사의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총공사부기금액을 대상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조정금액 산정방법 관련 회계통첩(회계 45101-883, '93.8.20)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금액 산정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1조(현행 시행령 제64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현행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대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에 대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특히 일부 품목 또는 비목(예 : 노임)만 한정하여 산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선시공분의 물가변동 적용대가 포함 여부(회계제도과-731, '04.5.15)

- ☞ 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계약체결시 작성된 공사공정예정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선시공 등) 당초 공사공정예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며,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함.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 물가변동시 공제여부(회계 41301-127, '03.2.5)

- ☞ 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

(회계 41301-664, '97. 3. 21)

- ☞ 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한 사유 등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동 기성금 공제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차수별 준공대가는 개산급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계약서 상 규정되지 않은 개산급의 지급 가능 여부(회계 45107-2032, '96.9.4)

- ☞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인 바, 계약 체결시 개산급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야만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님.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관련 선급 공제기준

선급 공제 방법(회계 45107-2697, '96.11.18)

- ☞ 선급의 공제는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급에 대하여 적용 가능함.

장기계속공사 등의 선급 공제 대상이 되는 물가변동적용대가
(회계 41301-3581, '97.12.26)

- ☞ 장기계속공사계약 또는 계속비 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최종 계약금액조정금액 산출시 적용되는 총 물가변동적용대가 중 선급이 지급된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에 있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을 의미함.

조정기준일에 선급을 지급할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선급을 공제가능 여부(법무 41301-55441, '04.5.27)

- ☞ 조정기준일에 선급을 지급하였다면 선급공제의 취지를 감안하여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물가변동시 선급 공제의 취지(회계 41301-1511, '97.6.9)

- ☞ 발주기관이 지급한 선급을 사용하여 미리 구매해 놓은 자재 등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상대자의 이득을 공제하기 위한 것임.

4

비목군 분류 및 지수적용

물가변동요건 산출시 일부품목 또는 비목을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41301-705, '98.4.22)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동 계약금액 조정시 수입자재 등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을 제외할 수 없음.

물가변동시 일부품목 제외 가능여부 및 수입자재의 등락율 산정시 적용 환율(회계 41301-3587, '97.12.26)

- ☞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제외한다는 특약을 할 수는 없으며, 수입물품의 환율변동에 따라 등락율은 계약체결시점의 환율과 통관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함.

일부 비목이 과다 계상 되었다는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등락폭의 합계액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회계 45107-326, '94.3.22)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설계변경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일부의 품목 또는 비목을 품목조정을 산출시 제외할 수 없는 것임.

계약체결시 비목군 및 계수를 분류하지 않은 경우
(회계 41301-556, '03.5.7)

- ☞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비목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임.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 지수변동율(계약체결시점의 지수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및 지수조정율을 산출함에 있어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산정함.

입찰일(계약체결일)당시의 가격 의미(회계 41301-2661, '97.9.26)

- ☞ 입찰일(계약체결일)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일(계약체결일)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며, 설계가격 또는 예정가격단가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임.

입찰일(계약체결일)당시 또는 물가변동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 의미
(회계 45107-2724, '96.11.19)

- ☞ 입찰일(계약체결)당시가격 및 물가변동당시가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며, 거래실례가격 등 객관적으로 조사, 발표 또는 결정된 가격을 의미하는 것임.

입찰일(계약체결)당시 가격이 견적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 등락을 산정시 동일 업체의 견적가격으로 비교 산정하는지 여부(법무심사팀 452, '04.9.24)

- ☞ 입찰일(계약체결)당시 가격이 견적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 물가변동 당시의 가격도 견적에 의하여 산정하며, 입찰(계약체결)당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로부터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비교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동 업체가 폐업 등의 사유로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을 것임.

다수직종이 포함된 공사의 경우 노무비지수 산출방식
(회계 45101-755, '96.4.12)

- ☞ 1건의 공사에 여러 직종군이 복합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때에는 각 직종군의 조정기준일 당시 발표된 평균노임을 계약체결시 발표된 평균노임으로 나눈 값에 각 직종군이 전체 노무비 금액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곱하여 산출된 수치를 합계하여 노무비 비목군의 지수변동율을 산출할 수 있는 것임.

발표되지 않은 노무비 항목의 등락을 산정방법
(회계 41301-1879, '97.7.14)

- ☞ 1차 계약금액 조정시 해당노임이 발표되지 않아 유사 직종노임을 비교하여 등락을 산출하였다면 2차 계약금액 조정시에도 1차 계약금액 조정시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등락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

산출내역서 상의 요율이 법정요율을 상회하는 경우 물가변동시 적용방법
(회계 41301-1226, '97.5.15)

- ☞ 산출내역서 상의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법정요율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함.

설계변경 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회계 45107-236, '97.2.4)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였다면 조정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물량에 대한 등락률 산정시 기준시점은 최초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다만, 신규비목 등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단가를 산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계 41301-253, '98.2.5)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물량 및 공사공정예정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물량 및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성립요건 및 적용대가 등을 산정하여야 함.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공사물량중 신규비목에 대한 등락율 산정은 설계변경 당시와 조정기준일 당시의 가격을 비교하여 산정하여야 함.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후 적용단가
(회계 45107-894, '93.8.23)

- ☞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었다면 조정 후에 체결되는 2차 계약시의 단가는 조정된 단가가 적용되어야 함.

물가변동을 위한 1차, 2차 조정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41301-82, '98.4.28)

- ☞ 1차 및 2차 물가변동 조정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는 1차 신청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2차 계약금액 조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을 한 경우 계약단가
(회계 41301-3133, '97.11.14)

- ☞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계약단가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조정된 단가를 적용함.

연대보증 시공시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금액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권리 범위(회계 41301-1678, '97.6.27)

- ☞ 연대보증인은 조정금액 중 직접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갖는 것임.

환율, 관세율의 변동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대상이 되는지 여부(회제 41301-658, '98.4.18, 회제 45101-1243, '93.11.10)

-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등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는 바, 가격 등의 등락에는 환율도 포함되며, 수입물품의 원가계산에는 관세도 포함되므로 관세율의 변경에 따라 수입품의 단가가 변동이 있다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이 됨.

품목조정을 적용시 환율 적용 방법(회제 41301-799, '98.4.28)

- ☞ 조정기준일 이후에 통관되어야 할 물품의 경우에는 조정기준일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등락율을 산정함.

조달청 질의내용 요약(토목 12711-55778, 2003.8.14)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조정기준일 현재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 및 물가변동 조정율을 산출하고 있으나 전회의 물가변동 조정금액에 대하여 예산협의 지연등으로 변경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다시 물가변동을 하여야 하는 경우 금회의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변경계약이 안된 전회의 물가변동금액을 포함하여 적용대가를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
- ☞ 당초에 물가변동 조정율을 3%(5%)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변경계약을 한 후 계약이행중인 공사를 다시 검토한 결과 물가변동 조정율이 3%(5%)미만에 해당하여 부적정으로 통보한 공사에 대하여 시공업체가 다시 물가변동자료(조정기준일 변경, 물가변동

조정을 재산정)를 침부하여 물가변동을 신청하였을 때의 행위를 물가변동을 다시 신청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보완자료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만약, 재신청으로 보는 경우 당초 검토에서 3%(5%)미만으로 조기에 통보하여야 하는 감독청의 귀책사유와 이에 따른 계약자가 재신청을 빨리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지 못한 업체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물가변동 조정신청일을 당초에 3%(5%)이상으로 판단하여 변경 계약한 날로 보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불가하다면 신청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재경부 회신내용 요약(회제 41301-952, 2003.8.22)

-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요건 및 조정을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마다 순차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계약상대자가 2회 이상의 계약금액 조정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도 순차적으로 1차 계약금액 조정후 2차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바,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발주기관의 예산배정 지연등으로 인하여 1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내역을 당사자 상호간에 확정된 경우라면 동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2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에는 확정된 1차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일”이라 함은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계약금액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

하여 금액조정을 신청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기준일 등 동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잘못 적용하여 신청서류가 반려된 경우라면 조정신청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나, 귀질의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조정신청내용을 발주기관이 인정하여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수령하는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절차가 진행된 후에 발주기관이 이의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계약상대자가 당초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한 일자를 조정신청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정기준일이 일요일인 경우 환율의 적용
(회계제도과-39, 2004.1.9, 회제 41301-3324, '98.10.26)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수입물자 등의 환율을 적요함에 있어서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의 환율을 적용함.

건설기계경비의 가격산정을 위한 환율의 적용(회제 41301-379, 2003.4.07)

-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규정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등락을 산정시 외화 표시가격 및 환율적용방법 등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표준품셈상 계약체결시 기계경비의 가격산정을 위하여 적용하는 환율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기계경비의 환율을 당초 설계에서는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하고, 설계변경으로 추가되는 신규품목의 환율은 매매기준율을 적용

한 경우 물가변동에 적용하는 환율은 당초 비목은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고, 신규 품목은 매매기준율의 환율을 적용한다.

지수조정율(K) 산출시 조정기준일에 적용할 생산자 물가지수 적용
(회계제도과-289, '04.3.5 및 법무41301-55401. 2004.5.14)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지수조정율방식에 의할 경우 각 비목군의 지수는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2200.04-137-4, '03.12.26)”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시점과 조정기준일시점의 지수를 각각 적용하는 바, 조정기준일이 월중인 경우에는 전월지수를,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월 지수를 각각 적용하는 것임.

'05년 발표된 용역노임의 '04년 발표된 노임에 대한 물가변동에 따른 등락을 산정(회계제도과-1226, 2005. 06. 18)

☞ ① '04년과 '05년 1개월 노임단가

- '04년 1개월 노임단가 = 발표된 '04년 1일 노임단가 × (25일 + '05년 평균근무일수) ÷ 2

- '05년 1개월 노임단가 = 발표된 '05년 1일 노임단가 × '05년 평균근무일수

※ '05년 평균근무일수는 해당용역별로 노임단가를 발표한 조사기관의 자료를 활용

④ 등락을 산정

○ 등락율 = $\frac{'05년1개월노임단가 - '04년1개월노임단가}{'04년1개월노임단가} \times 100$

5

감액(D/S)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감액조정 신청은 계약상대자중 어느측에서 해야 하는 지의 여부(회계 41301-116, '99.1.12)

-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감액조정 시 감액요건의 증명 및 조정내역서의 작성책임은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있는 것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 및 감액조정시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완료되어야 할 부분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지연된 부분의 물가변동적용대가포함여부(회계 41301-296,99.1.29)

-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증액 및 감액조정시 공사공정예정표(조정기준일전에 설계 변경등이 있는 경우에는 동내용이 반영되어 변경된 공사공정예정 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지연된 부분은 동시행규칙 제 7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임